

研究報告
1987. 12 153

主要國의 農林水產物
輸出入制度 및 戰略에 관한 研究

李 輽 玉 (首席研究員)
金 東 玖 (研 究 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研究報告 153

主要國의 農林水產物 輸出入制度 및 戰略에 관한 研究

要 約

① 우리나라 바야흐로 農業의 國際化를 맞이함에 따라 農家所得創出을 위한 수출증대의 必要性과 貿易收支黑字의 시현 및 世界 農產物過剩으로 인한 輸入開放壓力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農林水產物 輸出增大를 위해서는 제 1의 輸出市場인 日本市場을 철저히 분석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와 유사한 台灣의 輸出現況 및 輸出支援政策을 分析할 필요가 있다. 한편 農產物의 效率的인 輸入管理와 輸入開放壓力에 협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 1의 輸入先인 美國農業의 問題點과 政策變化를 검토하여 輸入開放壓力의 배경을 파악함과 아울러 유사한 조건 하에서開放壓力을 받고 있는 日本의 輸入政策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農林水產物 輸出增大와 農產物의 效率的 輸入管理 및 開放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主要國의 輸出制度 및 政策을 분석함으로써 教訓과 示唆點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②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需要에 대한 價格變數의 說明力 檢證과 非價格變數의 확인을 위하여 貿易理論에 기초한 統計的 技法을 使用하였다. 아밍頓模型을 이용한 日本의 總 輸入需要式에서 價格變數의 有意性은 매우 낫았으며 日本의 한국으로부터의 輸入需要式에서는 韓國의 輸出價格과 日本의 平均 輸入價格의 相對價格差가一般的으로 統計的 有意性을 가진 반

면 相對價格變數의 預測계수가 ∞ 에 가깝지 않으므로 商品은 原產地에 따라 異質的임을 알 수 있었다.

③ 레스너과 트루만의 模型을 이용하여 日本의 農林水產物輸入을 段階적으로 설명하고 각 段階에 있어서 輸入需要式을 推定하였다. 日本의 特定國으로부터의 農林水產物 輸入需要式의 自體價格과 代替價格變數에 대한 預測부호는 理論과 反對인 경우가 많았으며, 有意性도 缺如하였다. 많은 品目의 경우 GLS R^2 가 낮음으로 미루어 보아 日本의 農林水產物輸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非價格要因 즉 品質의 差異, 貿易障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코넌드레스와 허타도모형을 이용하여 品目別로 우리나라의 輸出競爭國들과 우리나라의 主要 輸出市場國들 상호간의 貿易選好度를 測定하였다. 예측된 貿易選好度는 기대하였던 바와 같이 1이 아니었으며, 品目別로 相對國마다 相異하였으므로 貿易選好 내지 貿易障壁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統計資料의入手가 가능한 게, 참치, 生絲, 밤, 차, 조제버섯 등 6個品目的 國別 對日輸出增加要因을 ① 貿易量增大效果, ② 競爭力改善效果, ③ 輸入市場效果, ④ 貿易選好度의 變化效果로 區分하여 說明하였다.

⑤ 台灣은 國土가 좁고 人口가 많아 經濟開發初期에는 勞動集約의이고, 天然的으로 比較優位가 있는 品目이 輸出되었으나 人件費가 비싸짐에 따라 加工技術의 開發·研究 및 產業組織의 強化를 통해 통조림류 수출에 주력하였으며 현재 後發開途國의 격심한 수출경쟁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台灣政府는 高賃金, 品質管理에 대한 인식부족, 輸出業體의 零細性으로 인한 非效率性, 輸出市場의 偏重化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勞動節約의인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適地栽培 輸出商社의 大規模화와 經營合理化, 品質改善과 研究開發, 新市場의 開拓, 計劃生產에 힘쓰고 있다.

⑥ 미국의 過剩生產은 農產物支持價格이 대부분의 경우 市場均衡價格보

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기 때문이며, 1980년을 前後한 輸出競爭國의 등장, 對蘇穀物禁輸措置, 開途國의 自給達成 등으로 輸出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農家經濟는 不振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미국정부는 食糧安全保障法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를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輸出促進을 위해 貸付率을 점차 引下하고 한편으로는 시장대부율제도 (Marketing Loan Rate System), 穀物輸入國에 대한 財政支援, 輸出振興에 대한 金融支援, 外國援助의 擴大, 多者間貿易協商(Uruguay Round)에 참여하여 농산물무역장벽해소 등에 힘쓰고 있다.

⑦ 對美貿易黑字幅의 擴大, 美國의 農業不況과 輸出不振에 따른 美國의 對韓國 輸入開放壓力은 既存 輸入農產物 輸入擴大는 물론 餘他品目의 追加開放 등 앞으로 더욱 加重될 展望이다.

⑧ 日本은 所得增加, 食品消費의 高級化, 多樣化로 農產物輸入이 급증했으며 自給率은 一部品目을 제외하고 낮아졌다.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輸入制度를 정교화, 다양화시킴과 동시에 國內農業政策과 輸入政策을 진밀하게 연관시켜 왔다. 日本의 貿易自由化는 1960年「日本의 貿易換自由化大綱」에 따라 自由化가 실시되었지만 農林漁業部門은 상당기간 자유화가 곤란한 部門으로 간주되었다. 農產物輸入自由化는 정부의 조심스러운 접근과 배려에 의해 영향이 작은 品目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영향이 큰 品目은豫告期間을 설정하여 자유화에 대한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補完對策을樹立하면서 행해짐으로써豫想되었던 不作用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만 하다.

⑨ 日本의 막대한 貿易收支黑字, 國內外價格差擴大등 國內外의 農業問題에 직면한 日本은 1980년이후 財界를 중심으로 農業비판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國際化時代를 맞이하여 經濟構造調整이라는 名目下에 행해지고 있지만 농정비판과 제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日本의 農業構造改革은 國際化時代를 맞이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農業의 擔當者인 農民이 소외된 상태에서는 수행될 수 없는 문제

로 보인다.

⑩ 우리나라은 점차 勞動力은 不足하고 資本과 技術은 상대적으로 풍부해 지는 經濟與件를 감안하여 勞動節約的이고 資本集約의인 高品質加工品의 生產과 輸出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輸出競爭國이 經濟開發初期段階에 있으며, 輸出對象國은 所得水準이 높은 先進國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⑪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增大를 위하여 短期的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는 ① 國內生產의 變動에 관계없이 輸出이 일관성있게 되어 輸入先으로부터의 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② 新鮮度維持, 包裝開發 등으로品質을 提高하고 ③ 輸出市場을 多邊化하고 ④ 과당경쟁, 덤핑으로 인한 이미지손상이나 손해를 방지해야 하며 ⑤ 經營效率의 極大化, 市場多邊화 등에 대한 政府의 적극적인役割과 支援이 必要하다.

⑫ 거세어지는 農產物 輸入開放에 대한 國內農業保護問題와 增大되는 農產物輸入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農產物輸入管理制度가 必要하다. 먼저 關稅制度등 現行制度를 品目의 특성에 따라 정교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國內生產과 연계된 輸入管理制度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國民衛生과 健康을 위해 檢疫 등과 같은 非關稅障壁을 강화하고 우리 與件에 맞는合理的인 價格 및 輸入制度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安定의이고 效率의인 수입을 위해 購買方式의改善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⑬ 對外的으로 우리나라은 對美, 對EC 등의 貿易收支黑字의 擴大와 世界穀物의 過剩生產에 의한 世界農業不況에 따라 國內農產物市場開放壓力이加重되고 있어 그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開放壓力의原因是 무엇이며 農產物輸出國의 입장과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세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貿易協商에 있어 相對國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確保와 우리나라 農業의特殊性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通商外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머리말

이제 韓國의 農業도 世界의 生產, 需要, 그리고 經濟與件과 密接하고 有機的인 關聯을 맺게 되는 時點에 와 있다.

한편으로는 國內의 限定된 農林水產物 需要와 農家所得 增大의 限界性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海外需要의 創出과 農林水產物 輸出促進의 必要性 이 論議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莫大한 貿易收支黑字의 示顯과 세계의 全般的인 農產物의 過剩生產으로 인하여 農產物 輸入開放 壓力이 加重되고 있는 現實이다.

本報告書는 위에서와 같은 狀況의 認識하에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 增大事業에 政策資料를 提供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第1의 農林水產物 輸出市場인 日本市場을 檢討 分析하였으며 韓國과 類似한 資源賦存 與件하에서 많은 量의 農林水產物을 輸出하는 臺灣의 輸出趨勢, 輸出環境 그리고 輸出支援政策 등을 살펴보고 示唆點과 教訓을 얻고자 努力하였다. 아울러 效率的인 農產物 輸入管理와 輸入開放壓力에 對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農產物 輸入上 第1의 輸入先인 美國의 農業事情, 農業 및 貿易政策을 檢討하였으며, 우리와 비슷한 立場에서 輸入開放壓力을 받고 있는 日本의 農產物 輸入現況, 輸入制度, 그리고 輸入開放에 대한 對處方案 등을 알아보았다.

本研究 過程中의 未洽한 점은 앞으로 좀더 새롭고 合理的인 理論의 開發과 統計資料의 補強으로 修正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아무쪼록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增大와 效率的인 農產物 輸入政策의 樹立에 一助가 되길 바란다.

1987.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榮鎮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背景 및 必要性.....	1
2. 研究의 內容.....	2

第 2 章 우리 나라 農林水產物 輸出增大와 관련된 主要國의 輸出入政策

1.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 및 輸入政策	5
2. 臺灣의 農林水產物 輸出 및 輸出支援政策.....	55

第 3 章 우리 나라의 農產物輸入과 關聯된 主要國의 輸出入政策

1. 美國의 農業 및 農產物輸出政策.....	72
2. 日本의 農產物輸入政策.....	91

第 4 章 우리 나라 農林水產物 輸出入 및 그 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1. 輸出	111
2. 輸入	121

第 5 章 要約 및 結論..... 130

表 目 次

第 2 章

表 2- 1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趨勢, 1976 ~ 85	6
表 2- 2	日本의 農產物 輸入趨勢, 1976 ~ 85	8
表 2- 3	日本의 林產物 및 水產物 輸入趨勢, 1976 ~ 85	9
表 2- 4	日本의 選定된 品目의 輸入趨勢	11
表 2- 5	日本의 農林水產物 國別 輸入, 1980 ~ 85	13
表 2- 6	대구의 칸 輸入先別 輸入	14
表 2- 7	삼치 輸入先別 輸入	14
表 2- 8	계 輸入先別 輸入	15
表 2- 9	오징어 輸入先別 輸入	16
表 2-10	문어 輸入先別 輸入	17
表 2-11	표고버섯 輸入先別 輸入	17
表 2-12	밤 輸入先別 輸入	18
表 2-13	생사 輸入先別 輸入	18
表 2-14	녹차 輸入先別 輸入	19
表 2-15	백삼 輸入先別 輸入	19
表 2-16	미역 輸入先別 輸入	20
表 2-17	참치 輸入先別 輸入	20
表 2-18	연어 · 송어 輸入先別 輸入	21
表 2-19	豚肉 輸入先別 輸入	22
表 2-20	뱔장어 輸入先別 輸入	22
表 2-21	日本의 品目別 總輸入需要 및 韓國商品에 대한 輸入 需要式 推定結果	28

表 2-22	日本의 대구의 관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2
表 2-23	日本의 삼치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2
表 2-24	日本의 계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3
表 2-25	日本의 오징어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3
表 2-26	日本의 문어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4
表 2-27	日本의 표고버섯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4
表 2-28	日本의 밤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5
表 2-29	日本의 생사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5
表 2-30	日本의 돈육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6
表 2-31	日本의 연어·송어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6
表 2-32	日本의 참치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7
表 2-33	日本의 미역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7
表 2-34	日本의 녹차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8
表 2-35	日本의 백삼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8
表 2-36	日本의 뱀장어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39
表 2-37	계의 輸出市場占有率 및 輸出對象國, 1980 ~ 86	43
表 2-38	참치의 輸出市場占有率 및 輸出對象國, 1980 ~ 86	43
表 2-39	생사의 輸出市場占有率 및 輸出對象國, 1980 ~ 86	44
表 2-40	밤의 輸出市場占有率 및 輸出對象國, 1980 ~ 86	44
表 2-41	차의 輸出市場占有率 및 輸出對象國, 1980 ~ 86	45
表 2-42	조제버섯의 輸出市場占有率 및 輸出對象國, 1980 ~ 86 ...	45
表 2-43	日本 및 美國의 아시아 4 個國으로부터의 계의 輸入 比重과 輸入對象國, 1980 ~ 86	46
表 2-44	日本 및 美國의 아시아 4 個國으로부터의 참치의 輸入比重과 輸入對象國, 1980 ~ 86	46
表 2-45	日本 및 美國의 아시아 4 個國으로부터의 생사의 輸入比重과 輸入對象國, 1980 ~ 86	47
表 2-46	日本 및 美國의 아시아 4 個國으로부터의 밤의 輸入 比重과 輸入對象國, 1980 ~ 86	47

表 2-47 日本 및 美國의 아시아 4 個國으로부터의 차의 輸入 比重과 輸入對象國, 1980 ~ 86	47
表 2-48 日本 및 美國의 아시아 4 個國으로부터의 조제버섯의 輸入比重과 輸入對象國, 1980 ~ 86	48
表 2-49 계의 貿易選好度의 變化, 1980 ~ 86	49
表 2-50 참치의 貿易選好度의 變化, 1980 ~ 86	49
表 2-51 생사의 貿易選好度의 變化, 1980 ~ 86	50
表 2-52 밤의 貿易選好度의 變化, 1980 ~ 86	50
表 2-53 차의 貿易選好度의 變化, 1980 ~ 86	51
表 2-54 조제버섯의 貿易選好度의 變化, 1980 ~ 86	51
表 2-55 期間別 輸出競爭 4 個國의 계輸出增大 또는 減少要因 ...	53
表 2-56 期間別 輸出競爭 4 個國의 참치輸出增大 또는 減少 要因.....	53
表 2-57 期間別 輸出競爭 4 個國의 생사輸出增大 또는 減少 要因.....	53
表 2-58 期間別 輸出競爭 4 個國의 밤輸出增大 또는 減少要因 ...	54
表 2-59 期間別 輸出競爭 4 個國의 차輸出增大 또는 減少要因 ...	54
表 2-60 期間別 輸出競爭 4 個國의 조제버섯 輸出增大 또는 減少要因.....	54
表 2-61 選定된 品目의 關稅率 및 輸入制度	56
表 2-62 臺灣의 農林水產物 輸出趨勢.....	57
表 2-63 臺灣의 主要 輸出農林水產物.....	59
表 2-64 臺灣의 輸出 農林水產物의 構成	60
表 2-65 臺灣의 農林水產物 國家別 輸出	61
表 2-66 臺灣의 對日本 輸出 農林水產物의 商品構成	62
表 2-67 臺灣의 對美國 輸出 農林水產物 商品構成	63
表 2-68 臺灣의 對EC 輸出 農林水產物 商品構成	64
表 2-69 臺灣의 20大 主要輸出 農林水產物과 輸出對象國, 1984	65
表 2-70 臺灣 輸出農產品의 生產 및 流通制度.....	68

第 3 章

表 3- 1 主要 品目別 政策	76
表 3- 2 年度別 農家所得 및 支出, 1980 ~ 85	79
表 3- 3 農家의 負債比率	80
表 3- 4 專業農의 營農實態	81
表 3- 5 美國 農產物 輸出推移	82
表 3- 6 世界의 穀物在庫動向	82
表 3- 7 最低目標價格 및 貸付率(市場價格), 作物年度, 1986 ~ 90	83
表 3- 8 農林水產物 國別 輸入, 1983 ~ 85	86
表 3- 9 小麥의 輸入先別 輸入	86
表 3-10 옥수수 輸入先別 輸入	87
表 3-11 수수 輸入先別 輸入	87
表 3-12 쇠고기 輸入先別 輸入(精肉基準)	88
表 3-13 大豆 輸入先別 輸入	88
表 3-14 日本의 主要 農產物 輸入趨勢	92
表 3-15 日本의 主要 畜產物 및 水產物 輸入趨勢	93
表 3-16 日本의 食糧自給率	94
表 3-17 日本의 計劃割當方式	97
表 3-18 特殊한 形態의 關稅, 1986	98
表 3-19 關稅適用(季節關稅, 슬라이드關稅, 差額關稅)	99
表 3-20 關稅割當制度	101
表 3-21 韓國, 日本, 臺灣의 穀物輸入制度 比較	102
表 3-22 日本의 農林水產物 自由化 推移(關稅分類番號 4 單位 基準)	105

第 4 章

表 4- 1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推移	112
表 4- 2 年度別, 品目別 輸出實績	115
表 4- 3 品目別 生產者 補助金 相當額 國別 順位, 1982 ~ 84	128

圖 目 次

第 2 章

圖 2-1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 29

第 3 章

圖 3-1 目標價格과 缺損支拂制度의 經濟的 效果 77

圖 3-2 農家販賣價格과 購入價格指數, 1970 ~ 85 80

빈

면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背景 및 必要性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農業의 國際化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國內의 한정된 農林水產物需要와 農家所得問題의 해결을 위한 海外需要의 창출과 農林水產物 輸出增大的 必要性이 거론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막대한 貿易收支黑字의 示顯과 세계의 전반적인 農產物過剩으로 인한 農林水產物 輸入開放壓力을 받고 있는 時點이다.

우리나라의 農林水產物 輸出增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比較優位를 가질 수 있으며 國際競爭力を 갖춘 商品의 開發과 아울러 현재 까지의 輸出推移, 輸出支援體制에 대한 分析과 검토를 통한 自己診斷이 필요하겠지만, 輸入國에서의 輸入需要와 그 動向, 輸入政策 등을 철저히 分析,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類以한 입장에 있으며 우리나라가 輸出市場에서 輸出競爭關係에 있는 農林水產物 輸出國家의 輸出與件과 輸出政策을 살펴 봄으로서 그들로부터 많은 교훈과 示唆點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農林水產物 輸入開放壓力에 效率的 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事前的으로 農業構造 조정과 產業調整을 통하여 輸入開放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長期計劃도 필요하지만 輸入開放壓力의 根源的인 要因은 무엇이고 農產物 輸出國家의 農業現實은 어떠한 가에 대한 철저한 分析을 통하여 나를 알고 남의 사정을 인식한다면 貿易協商이나 輸入開放壓力에 좀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產業化와 工產品輸出을 통한 經濟成長過程 그리고 賦存資源 賦存與件이 매우 유사한 近接 農產物 輸入國家의 農產物輸入과 自給度推移, 輸入政策, 開放壓力에 대한 與論 등은 우리나라의 農產物輸入과 관련하여 많은 政策的 意味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2. 研究의 内容

위에서와 같은 農林水產物 輸出入國家의 貿易政策에 대한 分析의 必要性에 따라 本研究에서는 많은 輸出入國家中 몇개국을 選定하여 重點的으로 다루었다. 우선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第1의 農林水產物 輸出市場인 日本의 輸入趨勢와 現況을 分析하고 日本市場에서의 輸出競爭國과의 輸出競爭, 日本의 輸入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에 대한 實證的 檢討, 非價格競爭, 貿易障壁, 貿易選好度 등에 관한 심층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賦存與件에서 많은 量의 農林水產物을 輸出하는 臺灣의 輸出現況과 趨勢, 輸出과 經濟與件, 輸出支援政策을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農產物輸入과 輸入開放壓力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第1의 輸入先인 美國의 農業事情, 輸出現況 및 趨勢, 輸出入政策을 分析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서 輸入開放pressure를 받고 있는 日本의 農產物 輸入現況과 추세, 農業 및 貿易政策, 貿易障壁 등에 관해서 檢討하였다.

이상과 같은 研究內容으로 序章에 이어 2章에서는 우리나라 農林水產

物 輸出増大와 관련된 主要國의 輸出入政策, 3 章에서는 우리나라 農產物
輸入과 관련된 主要國의 輸出入政策, 4 章에서는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
出入 및 그 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마지막으로 5 章에서는 要約 및 結
論등 總 5 章으로 報告書를 구성하였다.

第 2 章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增大와 관련된 主要國의 輸出入政策

우리나라 農林水產物의 主要 輸出市場은 극도로 偏重되어 있는데 輸出市場 構成을 보면 1975 년의 경우¹⁾ 일본 47%, 미국 21%, 유럽 및 其他 32%이었으며, 1986 년의 경우²⁾에도 일본 43%, 미국 12%, 유럽 및 기타 45%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혁신적인 技術이나 輸出商品의 開發이 없는 한 또는 위에서의 農林水產物 輸入國家와의 貿易選好度(trade preference) 또는 流通施設, 通信, 사용언어, 文化, 商慣習, 制度, 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무역상의 경제환경과 심리적친근도(economic horizon and psychic distance)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輸出市場의 구성은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第 1 의 農林水產物 輸出市場으로서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需要에 영향을 주는 要因과 더불어 輸入趨勢, 貿易障壁, 輸出競爭國의 動

1) 資料는 李栢薰의 「農林水產物 貿易基本統計(1973 ~ 8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 12를 참조한 것임.

2) 貿易統計年報 CCCN 分類 24 類中에서 輸出比重이 큰 10 個類中 23 個品目을 合算한 것임 (2 類 - 면양, 산양고기, 3 類 - 참치, 명태, 삼치, 장어, 7 類 - 표고버섯, 8 類 - 깐밥, 사과, 배, 12 類 - 인삼(제조한 것), 16 類 - 통조림(깻, 고등어, 연어, 홍합, 반지락), 17 類 - 경제당, 껌, 20 類 - 양송이 통조림, 21 類 - 간장, 된장, 라면, 24 類 - 염연초).

態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農林水產物의 輸出增大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主要 輸出市場에서의 輸出競爭國이며 또한 經濟發展段階와 賦存資源, 賦存與件의 측면에서 우리와 유사하고 輸出商品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臺灣의 農林水產物 輸出政策 및 農業計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第2章에서는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增大와 關聯해서 第1의 輸出市場인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趨勢와 輸入政策을 우선 分析하고, 다음으로는 日本의 輸入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的 및 非經濟的 要因을 經濟理論과 計量模型을 원용하여 철저히 검토하고 日本의 輸入政策을 制度的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分析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臺灣의 輸出現況 및 그 추세와 輸出與件, 政策,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輸出擴大上의 問題點, 對應政策을 살펴 봄으로서 海外需要와 輸出增大를 통하여 農家所得을 提高시키려는 최근의 農政方向에 一助가 되고자 한다.

1.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 및 輸入政策

가. 輸入現況 및 趨勢分析

① 產品別 輸入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額은 1985년에 262 억불로 總輸入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10년간(1976 ~ 85) 149%가 증가하였다. 1976년에 176 억불에서 1980년 291 억불로 農林水產物의 輸入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후 약간씩 감소하고 있으며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人口增加 및 所得向上에 따라 農林水產物의 需要是 增加하고 있으나 農林水產物의 國內生產이 氣候 등과 같은 自然條件에 의해 불규칙하게 변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產品別로 보면 <表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 農產物이 168 억불(64%), 林產物이 45 억불(17%), 水產物이 49 억불(19%)을

表 2-1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趨勢, 1976 ~ 85

單位: 백만 \$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	*	*	*	*	*	*	*	*	*	*	*	*	*	*	*	*	*	*	*
농립수산물(1)	17,595	12.5	19,283	9.6	21,402	11.0	28,927	35.2	29,055	0.4	27,826	△4.2	25,779	△7.4	25,522	△1.0	27,781	8.9	26,222	△5.6
농산물A(2)	11,602	3.5	12,434	7.2	13,371	7.5	16,540	23.7	17,616	6.5	18,478	4.8	16,254	△12.0	16,672	2.6	18,635	11.8	16,763	△10.0
농산물B(3)	9,780	1.1	10,434	6.7	11,352	8.8	14,055	23.8	14,911	6.1	15,822	6.1	13,902	△12.1	14,456	4.0	16,066	11.1	14,600	△9.1
임산물(4)	4,092	30.7	4,396	7.4	4,763	8.3	8,129	70.7	8,065	△0.8	5,373	△33.4	5,339	△0.6	4,631	△13.3	4,721	1.9	4,518	△4.3
수산물(5)	1,901	46.5	2,453	29.0	3,268	33.2	4,257	30.3	3,374	△20.8	3,975	17.8	4,186	5.3	4,219	0.8	4,425	4.9	4,941	11.6
(2)/(1)	65.9		64.5		62.5		57.2		60.6		66.4		63.1		65.3		67.1		63.9	
(3)/(1)	55.6		54.1		53.0		48.6		51.3		56.9		53.9		56.6		57.8		55.7	
(4)/(1)	23.3		22.8		22.3		28.1		27.8		19.3		20.7		18.1		17.0		17.2	
(5)/(1)	10.8		12.7		15.3		14.7		11.6		14.3		16.2		16.5		15.9		18.8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농산물B는 농산물A에서 변화, 천연고무, 양모를 제외한 것임.

資料 : JETRO, 「農林水產物 の 貿易」, 各年度.

각각 차지함으로써 農產物이 農林水產物輸入의 主導的 役割을 하고 있다. 水產物輸入은 꾸준히 증가하여 과거 10년간(1976~85) 26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表 2-2> <表 2-3>과 같다. <表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產物 輸入內譯은 1985년 農產品이 111억불(75%) 畜產品이 34억불(24%) 잡사가 0.9억불(0.6%)을 차지하고 있다. 農產品은 小麥과 飼料用 穀物을 주로 하는 穀物類와 大豆, 油菜를 주로 하는 植物性油脂原料가 農產品 輸入額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農產物需要增大에 따른 飼料穀物 輸入增加와 所得向上에 따른 植物性油脂類의 需要增大를反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林產物 및 水產物 輸入內譯은 <表 2-3>에서와 같아 1985년의 경우 林產物은 木材가 34억불(75%), 加工材가 9억불(20%), 其他林產物이 2억불(5%)로써 木材가 林產物輸入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水產物은 新鮮冷凍水產物이 40억불(82%), 염장수산물이 4억불(11%), 기타수산물이 5억불(12%)을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신선냉동수산물이 水產物輸入의 80% 이상을 점유해 오고 있다. 또한 염장수산물의 1976/77兩年對比 1984/85增加率이 155%인데 비해 신선냉동수산물의 증가율은 225%를 차지하고 있어 日本人의 水產物選好가 염장수산물에서 신선냉동수산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品目別 輸入

農林水產物은 수백 가지의 品目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品目을 다룰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의해 15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선정된 品目的 輸入構造를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日本으로 輸出하는 品目中 日本의 絶對輸入額이 큰것
둘째, 우리나라의 輸出比重이 높은 品目
세째, 한국과 日本市場에서 競爭關係에 있는 中共, 臺灣, 北韓도 輸出

表 2-2 日本의 農產物 輸入趨勢, 1976 ~ 85

單位: 백만 \$, %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合 計 (1)	11,602	12,434(7.2)	13,371(7.5)	16,540(23.7)	17,616(6.5)	18,478(4.8)	16,254(△12.0)	16,672(2.6)	18,635(11.8)	16,763(△10.0)
農 產 品 (2)	7,878	8,424(6.9)	8,663(2.8)	10,637(22.8)	11,977(12.6)	12,347(3.1)	10,715(△13.2)	11,262(20.5)	12,511(11.1)	11,123(△11.1)
穀 物	3,133	2,799(△10.7)	3,038(8.6)	3,689(21.4)	4,401(19.3)	4,963(12.8)	3,938(△20.7)	4,171(5.9)	4,720(13.2)	3,926(△16.8)
果 實 , 菜 蔬	835	980(17.4)	1,211(23.6)	1,398(15.4)	1,420(1.6)	1,746(23.0)	1,650(△5.5)	1,668(0.6)	1,898(13.8)	1,882(△0.8)
雪 糖	1,045	814(△22.0)	691(△15.2)	844(22.0)	1,385(64.2)	873(△37.0)	583(△33.3)	494(△15.2)	404(△18.3)	309(△23.6)
커피, 코코아, 차	545	1,008(85.0)	639(△36.7)	983(53.9)	1,001(1.9)	797(△20.4)	858(7.7)	882(2.8)	1,042(18.1)	1,044(0.2)
其 他 食 料	265	334(26.3)	434(29.9)	561(29.1)	594(6.0)	559(△6.0)	572(2.4)	570(△0.6)	565(△0.9)	560(△0.9)
植物油脂原料	1,343	1,727(27.3)	1,769(2.4)	2,094(18.4)	2,102(0.4)	2,239(6.5)	1,906(△14.9)	2,169(13.8)	2,464(13.6)	2,094(△15.0)
煙 草	338	321(△5.1)	405(26.4)	413(1.9)	364(△11.8)	498(36.6)	521(4.6)	533(2.4)	536(0.5)	465(△13.4)
其 他 農 產 品	375	441(17.4)	475(7.9)	656(37.9)	709(8.2)	673(△5.1)	689(2.4)	775(12.5)	882(13.8)	843(△4.3)
畜 產 品 (3)	1,788	1,848(3.4)	2,407(30.3)	3,177(32.0)	2,777(△12.6)	3,404(22.6)	3,058(△10.3)	3,060(18.8)	3,450(12.7)	3,384(△1.9)
肉 類	921	908(△1.5)	1,231(35.6)	1,645(33.7)	1,463(△11.1)	1,877(28.3)	1,664(△11.3)	1,717(3.2)	1,846(7.5)	1,878(1.7)
酪農品, 계란	200	204(1.6)	255(25.4)	301(18.0)	343(13.9)	374(9.2)	399(6.6)	329(△17.6)	302(△8.2)	320(6.1)
其 他 畜 產 品	666	941(41.2)	921(△2.1)	1,230(33.6)	971(△21.1)	1,153(18.7)	995(△14.1)	1,014(59.5)	1,303(28.4)	1,186(△9.0)
蠶 線 (4)	111	160(44.2)	272(70.0)	241(△11.3)	157(△35.0)	65(△58.3)	129(96.9)	134(3.7)	105(△21.5)	94(△10.6)
천연고무, 면, 양모 (5)	1,825	2,002(9.7)	2,029(1.4)	2,485(22.5)	2,706(8.9)	2,661(△1.7)	2,353(△11.4)	2,217(△5.8)	2,569(15.9)	2,163(△15.8)
(2) / (1)	67.9	67.7	64.8	64.3	68.0	66.8	65.9	67.6	67.1	66.4
(3) / (1)	15.4	14.9	18.0	19.2	15.8	18.4	18.8	18.4	18.5	20.2
(4) / (1)	1.0	1.3	2.0	1.5	0.9	0.4	0.8	0.8	0.6	0.6
(5) / (1)	15.7	16.1	15.2	15.0	15.4	14.4	14.5	13.3	13.8	12.9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資料 : JETRO, 「農林水產物 の 貿易」, 各年度.

表 2-3 日本의 林產物 및 水產物 輸入趨勢, 1976 ~ 85

單位: 백만\$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林產物合計	4,093	4,396 (7.4)	4,763 (8.3)	8,129 (70.7)	8,065 (△0.8)	5,373 (△33.4)	5,339 (△0.6)	4,631 (△13.3)	4,721 (1.9)	4,518 (△4.3)
木 材	3,534	3,801 (7.5)	4,065 (7.0)	6,864 (68.8)	6,628 (△3.4)	4,420 (△33.3)	4,268 (△3.4)	3,648 (△14.5)	3,751 (2.8)	3,385 (△9.8)
製材, 加工材	443	491 (10.8)	578 (10.8)	1,083 (87.3)	1,229 (13.5)	785 (△36.2)	920 (17.3)	842 (△8.6)	802 (△4.7)	919 (14.5)
其 他	115	104 (△9.4)	119 (14.4)	182 (52.3)	208 (14.3)	168 (△19.0)	150 (△10.6)	141 (△6.0)	167 (18.3)	214 (28.1)
水產物合計	1,901	2,453 (29.0)	3,268 (33.2)	4,257 (30.3)	3,374 (△20.8)	3,975 (17.8)	4,186 (5.3)	4,219 (0.8)	4,425 (4.9)	4,941 (11.6)
新鮮, 冷凍水產物	1,508	1,899 (25.3)	2,596 (36.7)	3,389 (30.6)	2,664 (△21.4)	3,213 (20.6)	3,441 (7.6)	3,433 (△0.2)	3,629 (5.7)	4,032 (11.1)
魚 類	396	683 (72.6)	891 (30.4)	1,043 (17.2)	819 (△21.5)	1,196 (46.0)	1,310 (9.5)	1,325 (1.1)	1,443 (8.9)	1,650 (14.4)
감각, 연체동물	1,077	1,160 (7.7)	1,627 (40.3)	2,246 (38.0)	1,764 (△21.5)	1,940 (10.0)	2,029 (4.6)	2,002 (△1.3)	2,070 (3.4)	2,245 (8.5)
其 他	35	57 (63.7)	78 (36.8)	99 (27.8)	81 (△18.7)	77 (△4.5)	102 (30.8)	106 (4.1)	117 (10.2)	136 (16.7)
염장수산물	232	295 (27.3)	419 (41.8)	564 (34.7)	346 (△38.7)	426 (23.2)	418 (△1.9)	417 (△0.3)	383 (△8.1)	435 (13.8)
기타水產物	162	259 (60.0)	254 (△1.9)	304 (20.0)	364 (△19.5)	336 (△7.6)	327 (△2.4)	369 (12.9)	414 (11.9)	474 (14.6)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資料: JETRO, 「農林水產物 の 貿易」, 各年度.

하는 品目을 選定하였다.

以上의 選定基準에 의해 선정된 品目은 대구의 란, 삼치, 계, 오징어, 문어, 표고버섯, 밤, 생사, 녹차, 백삼, 미역, 참치, 연어·송어, 돈육, 뱃장어등 15개品目이다.

이들 品目の 輸入趨勢를 보면 <表 2-4>와 같다. 1976/77 兩年對比 1985/86년 輸入量增加率을 보면 연어·송어가 891%로 가장 높고 백삼이 194%, 계가 160%, 참치가 157%, 대구의 란이 129%로 각각 증가한 반면에 표고버섯이 75%, 생사가 29%, 녹차가 64%로 각각 감소했다. 그외 品目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가율이 높은 品目은 국내수요가 증가하는 品目이지만 國內生產이 이를 쫓아가지 못함으로써 輸入量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증가율이 감소하는 品目은 國內需要減少 또는 國內生產增加로 인해 輸入量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연어·송어의 경우 日·蘇漁業協定으로 日本의 割當量이 감소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日, 美, 캐나다 漁業委員會가 베링해에서 1986년 4월이후 일본의 연어·송어 漁業規制를 결정함에 따라 輸入은 더욱 增大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란의 경우 日本에서 수요가 많아 增加하고 있는데 염장한 어란의 수요가 한계에 도달한 반면에 양념한 어란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消費形態가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需要動向에 따라 輸入이 이루어 진다면 대구의 란의 輸入은 금후에도 安定的推移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계의 경우는 日本에서의 魚獲量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深海資源開發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으며 日本人이 즐겨 먹는 새우나 계는 앞으로도 一定量은 輸入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인삼의 需要是 주로 한방약제와 영양드링크제의 원료로 쓰이는데 이들의 需要가 대체로 일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입추세는 일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③ 輸入先別 品目別 輸入

여기에서는 日本의 總農林水產物과 앞서 선정한 品目の 輸入先別 輸入을 살펴 보고자 한다.

表 2-4 日本의 選定된 品目の 輸入趨勢

單位：千%，億円，%

品目 年 度 區 分		대구의란	삼 치	계	오징어	문 어	표 고 젓	밥	생 사	녹 차	백 삼	미 역	참 치	연 총 여 어	豚 肉	뱾장어
1976	物 金 額	8 15	2 7	12 83	69 400	94 359	0.2 4	22 82	3 194	8 25	0.07 6	22 37	6 63	4 33	149 1,206	14 237
1977	物 金 額	9 18	8 23	18 162	75 378	63 218	0.2 6	17 63	4 299	6 25	0.1 13	25 44	8 86	19 213	110 888	15 257
1978	物 金 額	9 25	4 10	32 317	118 426	78 259	0.2 4	22 73	6 413	5 19	0.2 21	14 22	10 92	50 522	103 854	12 241
1979	物 金 額	9 61	5 10	41 421	156 758	62 390	0.1 2	20 79	4 341	6 23	0.1 18	22 41	13 127	55 583	132 1,113	13 224
1980	物 金 額	7 42	4 8	34 323	94 480	63 442	0.08 1	24 92	3 297	4 20	0.1 12	24 71	13 137	39 318	108 921	15 241
1981	物 金 額	7 54	3 9	31 331	69 433	100 399	0.04 0.8	21 69	1 85	4 19	0.2 19	27 73	12 130	71 742	184 1,565	18 260
1982	物 金 額	12 115	2 9	23 345	96 596	93 336	0.1 3	20 67	3 220	2 11	0.1 12	24 73	12 151	107 1,080	141 1,343	11 193
1983	物 金 額	13 100	3 16	18 214	102 557	95 456	0.7 20	24 89	3 208	2 11	0.2 20	25 74	14 172	98 838	166 1,530	17 305
1984	物 金 額	16 109	3 10	23 231	103 571	108 497	0.05 1	28 106	2 114	3 12	0.3 39	27 84	16 179	98 830	196 1,684	17 300
1985	物 金 額	19 145	3 10	34 335	113 649	99 552	0.1 3	26 88	3 149	2 10	0.2 26	29 101	16 182	115 1,158	190 1,658	17 266
1986	物 金 額	20 159	7 21	44 377	43 119	107 590	0.1 2	36 115	2 107	3 10	0.3 30	29 75	20 211	113 895	208 1,748	21 378
1976. 77 년 대비 1985. 86 년 증가율 (증가기준)		129	0	160	8	31	△75	59	△29	△64	194	23	157	891	54	31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각년도.

먼저 日本의 農林水產物 國別 輸入을 보면 <表 2-5>와 같다. 1985년의 경우 일본의 農林水產物 總輸入額 262 억불 중 미국이 85 억불(32.5%) 캐나다 20 억불(7.5%), 호주 20 억불(7.5%), 중공 17 억불(6.4%), 말레이지아 15 억불(5.7%), 대만 13 억불(5.1%), 한국 9 억불(3.4%) 순으로 되어 있다.

日本의 미국에 대한 輸入依存度는 약 35% 내외로서 우리나라의 40 ~ 50%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飼料穀物 및 小麥 등 穀物에 대한 對美 依存度가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中共은 1980 年 對日輸出이 9 억불에서 1985 年 17 억불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日本市場에서中共은 우리나라와 競合關係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加速化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지닌 臺灣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占有率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1980 년 7.4 억불에서 1984 년에 9.2 억불로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나 1985 년 8.8 억불로 약간 감소했으며 市場占有率은 3% 内外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品目別 輸入先을 보면 대구의 란의 경우 1980 년이후 對日 市場占有率은 우리나라가 30%, 미국, 소련이 각각 3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염장품 보다는 양념한 것이 많이 輸入되면서 미국의 比重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表 2-6>.

삼치는 주로 우리나라와 中共으로부터 輸入하고 있으며 1986 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市場占有率은 70%, 중공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1982 년까지 20 ~ 30%에 그쳤으나 1984 년부터 市場占有率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중공의 占有率은 낮아지고 있다 <表 2-7>.

계는 1986 년의 경우 미국이 32%, 中共이 25%, 캐나다 17%, 우리나라 10%의 市場占有率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은 1980 년에 80%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에 地理的 잇점과 競爭力이 높아진 中共이 큰 伸張勢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中共의 比重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계의

表 2-5 日本의 農林水產物 國別輸入, 1980~85

單位: 백만\$

年別 國別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世界合계	29,055	0.4	27,815	△ 4.3	25,762	△ 7.4	25,498	△ 1.0	27,781	9.0	26,222	△ 5.6
미국	10,214 (35.2)	9.1	10,210 (36.7)	0.0	8,766 (34.0)	△ 14.1	8,993 (35.2)	2.4	9,724 (35.0)	8.1	8,534 (32.5)	△ 12.2
캐나다	1,928 (6.6)	4.5	1,972 (7.1)	2.3	1,959 (7.6)	△ 0.7	1,881 (7.4)	△ 4.0	2,013 (7.2)	7.0	1,958 (7.5)	△ 2.7
호주	2,483 (△ 8.5)	3.2	2,328 (8.4)	△ 6.2	2,072 (8.0)	△ 11.0	1,772 (6.9)	△ 14.5	2,081 (7.5)	17.4	1,952 (7.5)	△ 6.2
중공	940 (3.2)	△ 2.9	1,045 (3.8)	11.2	968 (3.8)	△ 7.4	1,111 (4.4)	14.7	1,367 (4.9)	23.0	1,682 (6.4)	23.1
말레이지아	1,592 (5.6)	△ 7.1	1,292 (4.6)	△ 18.8	1,571 (6.1)	21.6	1,485 (5.8)	△ 5.5	1,627 (5.9)	9.6	1,495 (5.7)	△ 8.1
대만	973 (3.4)	6.7	980 (3.5)	0.7	979 (3.8)	0.0	1,074 (4.2)	9.6	1,226 (4.4)	14.2	1,330 (5.1)	8.5
한국	738 (2.5)	6.8	750 (2.7)	1.6	758 (2.9)	1.1	799 (3.1)	5.3	923 (3.3)	15.5	883 (3.4)	△ 4.3
태국	833 (2.9)	△ 7.3	831 (3.0)	△ 0.2	797 (3.1)	△ 4.1	799 (3.1)	0.3	777 (2.8)	△ 2.8	663 (2.9)	△ 5.7
E C	337 (1.2)	△ 7.9	1,119 (4.0)	232.0	963 (3.7)	△ 13.9	917 (3.1)	△ 4.8	1,209 (4.4)	31.8	1,186 (4.5)	△ 1.9

()는 전체 수입액에 대한 각국별 비중

資 料 : JETRO, 「農林水產物 の 貿易」, 各年度.

表 2-6 대구의 란 輸入先別 輸入

單位: 千噸, 억 원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0.5(7)	0.3(3)	2.4(34)	3.9(32)	5.2(32)	6.3(34)	7.1(35)
	金 額	0.7	0.6	17	47	48	74	84
북 한	物 量	—	0.04(0)	1.9(27)	2.6(21)	0.5(3)	0.4(2)	0.3(1)
	金 額	0.3	11	19	4	3	2	
소 현	物 量	2.7(36)	2.5(28)	1.9(27)	3.8(31)	5.1(32)	5.1(28)	5.3(26)
	金 額	7	10	9	42	38	42	40
미 국	物 量		0.04(0)	0.02(0)	0.4(3)	4.8(30)	6.3(34)	6.6(33)
	金 額	0.5	0.2	2	17	23	25	
기 타	物 量	4.4(58)	6.0(67)	0.9(13)	1.5(12)	0.5(3)	0.4(2)	1.0(5)
	金 額	7.3	13.6	5	5	2	3	8
合 計	物 量	7.6(100)	8.9(100)	7.1(100)	12.2(100)	16.1(100)	18.5(100)	20.3(100)
	金 額	15	25	42	115	109	145	159

() 속은 총 대구의 란 수입에 대한 비중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表 2-7 삼치 輸入先別 輸入

單位: 千噸, 억 원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0.7(30)	1.4(37)	0.6(17)	0.5(20)	2.0(69)	1.4(56)	4.6(70)
	金 額	2	4	2	2	8	6	16
대 만	物 量	0.2(9)	0.5(13)	0.2(6)	0.2(8)	0.2(7)	0.2(8)	0.3(5)
	金 額	0.4	0.9	0.3	0.5	0.3	0.3	0.4
중 공	物 量	1.0(43)	1.4(37)	2.6(72)	1.5(60)	0.7(24)	0.9(36)	1.4(21)
	金 額	0.3	4	5	6	2	3	4
기 타	物 量	0.4(17)	0.5(13)	0.2(6)	0.3(12)	—	—	0.3(5)
	金 額	4.3	1.1	0.7	0.5	—	0.7	0.6
합 계	物 量	2.3(100)	3.8(100)	3.6(100)	2.5(100)	2.9(100)	2.5(100)	6.6(100)
	金 額	7	10	8	9	10	10	21

() 속은 총 삼치수입에 대한 비중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表 2-8 계 輸入先別 輸入

單位 : 千吨, 억円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金 額	7.4(59) 42	4.3(14) 27	4.1(12) 38	2.9(12) 33	2.6(11) 28	2.7(8) 32	4.4(10) 42
대 만	物 量 金 額	0.1(1) 0.5	0.4(1) 1	0.1(0) 0.4	0.3(1) 1.0	0.5(2) 2	0.8(2) 4	1.1(2) 4
중 공	物 量 金 額	0.2(2) 1	0.5(2) 2	1.2(4) 5	2.5(11) 13	4.5(20) 27	7.4(22) 43	11.0(25) 49
북 한	物 量 金 額	0.07(1) 0.2	0.2(1) 1	0.4(1) 2.0	0.3(1) 3	0.1(0) 0.7	0.2(1) 1	2.0(5) 5
미 국	物 量 金 額	4.5(36) 38	25.9(81) 283	27.1(80) 268	11.8(50) 223	7.3(32) 95	11.3(33) 128	14.4(32) 161
캐나다	物 量 金 額	0.08(1) 0.6	0.07(0) 1	0.2(1) 2	4.6(20) 54	5.2(23) 56	8.8(26) 97	7.7(17) 67
기 타	物 量 金 額	0.2(2) 1	0.4(1) 3	0.7(2) 8	1.0(4) 8	2.5(11) 22	2.7(8) 20	3.8(9) 39
合 計	物 量 金 額	12.5(100) 83	31.8(100) 317	33.8(100) 323	23.4(100) 345	22.7(100) 231	33.9(100) 335	44.4(100) 377

() 속은 총 계수입에 대한 비중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輸入價格(금액/수량)이 나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입되는 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表 2-8>.

오징어는 어느 한 나라에 輸入이 偏重되어 있지 않고 여러 國家에서 輸入되고 있는데 이는 오징어류가 전세계에 넓게 分布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최근 主要 輸入先是 폴란드, 대만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여 1976년에 32%에서 1986년에 10%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表 2-9>.

表 2-9 오징어 輸入先別 輸入

單位 : 千噸, 억円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金 額	21.6(32) 111	27.5(23) 107	17.8(19) 98	16.6(17) 116	19.0(19) 115	17.4(15) 110	4.3(10) 14
대 만	物 量 金 額	2.0(3) 24	3.9(3) 27	1.4(1) 16	0.6(1) 10	0.5(0) 7	2.7(2) 15	7.9(18) 18
중 공	物 量 金 額	0.3(0) 1	0.2(0) 0.5	0.3(0) 1	0.6(1) 2	0.4(0) 1	0.9(1) 4	0.5(1) 1
폴 란 드	物 量 金 額	— —	— —	3.4(4) 9	11.4(12) 34	21.1(21) 64	17.7(16) 53	13.4(31) 32
아르헨티나	物 量 金 額	0.8(1) 0.5	9.8(8) 17	4.9(5) 14	9.4(10) 24	6.5(6) 15	5.8(5) 14	5.5(13) 12
기 타	物 量 金 額	43.8(64) 263	76.5(65) 274	66.6(71) 332	67.8(70) 420	55.1(54) 369	68.4(61) 453	11.9(27) 42
合 計	物 量 金 額	68.5(100) 400	118.1(100) 426	94.4(100) 480	96.4(100) 596	102.6(100) 571	112.9(100) 649	43.5(100) 119

() 속은 총 오징어 수입에 대한 비중.

資 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문어의 主要 輸入先是 1984년까지 스페인이었으나 마리탄, 모로코로 바뀌었으며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10%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表 2-10>.

표고버섯은 우리나라와中共에서 거의 전량을 輸入하고 있으며 1986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69%, 中共이 3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최근 中共產의 品質이 좋아지고 있어 日本市場에서 높은 競合關係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表 2-11>.

밤의 輸入先是 거의 全量 中共이며 우리나라의 比重은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다. 中共에서 改良種밤나무가 성숙하는 몇년후는 우리나라 밤수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對日輸出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表 2-12>.

表 2-10 문어 輸入先別 輸入

單位: 千噸, 억 원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17.3(18)	10.4(13)	7.2(11)	9.2(10)	8.2(8)	10.4(11)	13.2(12)
	金 額	72	35	51	39	48	63	74
북 한	物 量	0.1(0)	0.06(0)	0.1	0.1	0.1	0.1	0.1
	金 額	0.2	0.1	0.3	0.3	0.2	0.1	0.1
중 공	物 量	0.1	0.2	0.1	0.03	0.03	0.01	0.02
	金 額	0.3	0.4	0.2	0.04	0.05	0.01	0.1
스 페 인	物 量	59.6(63)	49.7(63)	36.4(57)	46.6(50)	49.9(46)	33.5(34)	5.7(5)
	金 額	223	171	278	166	223	183	34
모 로 코	物 量	1.0(1)	5.2(7)	5.8(9)	16.7(18)	24.6(23)	22.4(23)	23.5(22)
	金 額	5	18	43	63	116	130	137
마 리 탄 (MARTAN)	物 量	4.3(5)	6.3(8)	4.5(7)	11.8(13)	20.1(19)	25.4(26)	32.2(30)
	金 額	17	18	32	45	99	156	195
기 타	物 量	12.0(13)	6.7(9)	9.4(15)	8.4(9)	4.3(4)	6.7(7)	32.3(30)
	金 額	42	18	38	23	11	20	150
合 計	物 量	94.4(100)	78.5(100)	63.5(100)	92.8(100)	108.2(100)	98.6(100)	106.9(100)
	金 額	359	259	442	336	497	552	590

() 속은 총 문어 수입에 대한 비중.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表 2-11 표고버섯 輸入先別 輸入

單位: 톤, 백만 원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93(52)	141(89)	52(67)	71(53)	42(89)	72(51)	86(69)
	金 額	249	319	93	156	111	164	174
중 공	物 量	87(48)	17(11)	23(29)	62(47)	5(11)	64(46)	38(31)
	金 額	140	31	26	104	10	114	61
기 타	物 量	—	—	3(4)	—	—	4(3)	—
	金 額	—	—	3	—	—	7	—
合 計	物 量	180(100)	158(100)	78(100)	133(100)	47(100)	140(100)	124(100)
	金 額	389	352	122	261	121	285	235

() 속은 총 표고버섯 수입에 대한 비중.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表 2-12 밤 输入先別 输入

单位 : 千吨, 억円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金 額	0.2(1) 1	0.06 0.5	0.09 0.5	0.07 0.3	0.3(1) 1	0.7(3) 1	0.9(3) 3
중 공	物 量 金 額	21.5(96) 79	21.9(98) 72	23.6(97) 89	19.7(98) 66	27.9(98) 104	24.9(97) 86	34.6(97) 110
기 타	物 量 金 額	0.6(3) 2	0.3(2) 1	0.6(3) 3	0.3(2) 1	0.2(1) 1	0.1(0) 1	0.3(1) 2
合 計	物 量 金 額	22.3(100) 82	22.3(100) 73	24.3(100) 92	20.1(100) 67	28.4(100) 106	25.7(100) 88	35.8(100) 115

() 속은 총 밤 수입에 대한 비중.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生糸는中共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이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70年代만 해도 20%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労賃上昇 등으로 인한 競争력의 弱化로 최근 수출은 全無한 상태이다
 <表 2-13>

表 2-13 생사 输入先別 输入

单位 : 톤, 억円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金 額	360(14) 34	1,598(28) 130	557(17) 59	251(9) 28	42(2) 4	— —	— —
북 한	物 量 金 額	108(4) 4	78(1) 3	62(2) 4	60(2) 3	26(1) 0.9	35(1) 1	— —
중 공	物 量 金 額	1,957(73) 140	3,875(68) 269	2,207(69) 209	2,400(82) 173	1,586(82) 93	2,247(86) 129	2,044(85) 82
브라질	物 量 金 額	187(7) 12	140(2) 7	252(8) 21	199(7) 14	267(14) 15	315(12) 19	325(14) 13
기 타	物 量 金 額	53(2) 4	37(1) 4	107(3) 4	13(0) 2	6(0) 1	— —	23(1) 12
合 計	物 量 金 額	2,665(100) 194	5,728(100) 413	3,185(100) 297	2,923(100) 220	1,927(100) 114	2,599(100) 149	2,394(100) 107

() 속은 총 생사 수입에 대한 비중.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녹차의 主輸入先是 臺灣으로써 1980 年代初까지 80 %의 市場을 占有했으나 中共의 등장으로 1986년 67 %로 감소한 반면 中共은 1980년 8 %에서 1986년 22 %로 크게 市場占有率을 높였다 <表 2-14>

백삼의 主輸入先是 韓國과 中共이며, 최근 우리나라의 市場占有率은 80 %를 上廻하고 있으며, 中共이 15 ~ 17 %를 차지하고 있다. 日本에서 韓國產이 가장 좋은 評價를 받고 있으나, 中共產의 品質도 서서히 向上되고 있어 主要 競爭國으로 될 可能性이 있다 <表 2-15>

表 2-14 녹차 輸入先別 輸入

單位 : 톤, 백만円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金 額	17 10	— —	0.1 0.2	— —	7.4 3.7	8.2 13	6 5.4
대 만	物 量 金 額	7,679(94) 2,242	3,978(87) 1,633	3,639(83) 1,523	1,836(76) 787	1,624(61) 799	1,171(53) 523	1,905(67) 709
중 공	物 量 金 額	139(2) 60	319(7) 145	341(8) 233	151(6) 56	361(14) 125	527(24) 200	631(22) 195
브라질	物 量 金 額	131(2) 91	153(3) 111	299(7) 226	331(14) 239	274(10) 192	318(14) 260	259(9) 126
기 타	物 量 金 額	99(1) 115	129(3) 19	117(3) 16	93(4) 23	337(13) 47	191(9) 34	53(2) 12
合 計	物 量 金 額	8,165(100) 2,518	4,579(100) 1,908	4,396(100) 1,998	2,411(100) 1,105	2,643(100) 1,167	2,215(100) 1,030	2,854(100) 1,047

() 속은 총 녹차 수입에 대한 비중.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表 2-15 백삼 輸入先別 輸入

單位 : 톤, 백만円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金 額	71(96) 542	198(99) 2,081	53(54) 753	38(41) 599	237(80) 3,156	171(84) 2,142	267(82) 2,461
중 공	物 量 金 額	0.2 2.6	1.8(1) 8.8	43.5(44) 446	52(57) 599	51(17) 637	31(15) 411	54(17) 484
기 타	物 量 金 額	3(4) 45	— —	2(2) 12	2(2) 43	7(3) 100	1(1) 29	5(1) 63
合 計	物 量 金 額	74(100) 590	200(100) 2,089	98(100) 1,211	92(100) 1,241	295(100) 3,893	203(100) 2,582	326(100) 3,008

() 속은 총 백삼수입에 대한 비중.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미역의 輸入先은 한국으로써 지금까지 90 %이상의 市場占有率을 나타내고 있으며,中共이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表 2-16>.

참치의 主輸入先是 臺灣으로써 1982년까지 약 90 %의 市場占有率을維持했으나 그후 70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高度成長에 수반되는 人件費上昇과 勞動力이 他產業에 유출됨으로써 어선의 稼動率이 매년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比重은 미미한 실정이다 <表 2-17>.

表 2-16 미역 輸入先別 輸入

單位 : 千톤, 억円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21.6(99)	14.1(98)	24.0(99)	23.4(98)	26.0(95)	26.7(91)	25.9(90)
	金 額	36	22	70	72	81	95	70
중 공	物 量	0.2(1)	0.02	—	0.5(2)	1.4(5)	2.5(9)	2.9(10)
	金 額	0.2	0.01	—	1	3	6	5
기 타	物 量	—	3(2)	0.2(1)	—	—	—	—
	金 額	—	—	1	—	—	—	—
合 計	物 量	21.8(100)	14.4(100)	24.2(100)	23.9(100)	27.4(100)	29.2(100)	28.8(100)
	金 額	37	22	71	73	84	101	75

() 속은 총 미역수입에 대한 비중.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表 2-17 참치 輸入先別 輸入

單位 : 千톤, 억円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0.1(2)	—	0.03	0.04	0.004	0.001	0.4(2)
	金 額	0.6	—	0.09	0.2	0.04	0.01	1.4
대 만	物 量	5.7(88)	8.7(90)	11.3(90)	11.1(89)	11.7(75)	11.6(72)	13.3(66)
	金 額	53	79	118	133	128	123	125
미 국	物 量	0.2(3)	0.6(6)	0.4(3)	0.1(1)	0.7(5)	0.7(4)	1.1(5)
	金 額	4	6	9	4	20	22	28
기 타	物 量	0.5(7)	0.4(4)	0.8(7)	0.3(10)	3.1(20)	3.9(24)	5.3(27)
	金 額	5	7	10	14	31	37	57
合 計	物 量	6.5(100)	9.7(100)	12.5(100)	12.5(100)	15.5(100)	16.2(100)	20.1(100)
	金 額	63	92	137	151	179	182	211

() 속은 총 참치수입에 대한 비중.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物」, 各年度.

表 2-18 연어·송어 輸入先別 輸入

區 分		單位 : 千噸, 억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국	物量	0.03(1)	0.01	0.01	1.4(1)	2.0(2)	0.4	0.3
	金額	0.03	0.04	0.06	6.5	8.1	1.6	0.8
북한	物量	0.5(14)	1.8(4)	1.7(4)	1.5(1)	1.7(2)	0.8(1)	1.1(1)
	金額	1.4	6.0	4.8	4.7	5.2	2.4	2.5
미국	物量	2.4(65)	40.8(82)	33.0(84)	93.1(87)	80.3(86)	102.2(88)	95.9(85)
	金額	26	430	275	924	732	1,018	743
캐나다	物量	0.3(8)	7.0(14)	2.6(7)	10.8(10)	5.2(6)	9.8(8)	15.1(13)
	金額	4	86	30	140	66	124	143
기타	物量	0.5(14)	0.5(1)	2.0(5)	0.7(1)	3.8(4)	2.3(2)	1.0(1)
	金額	2	1	8	5	19	12	6
合計	物量	3.7(100)	49.7(100)	39.3(100)	107.5(100)	93.0(100)	115.5(100)	113.4(100)
	金額	33	523	318	1,080	830	1,158	895

() 속은 총 연어·송어 수입에 대한 비중.

資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연어·송어는 주로 미국에서 80% 이상을 輸入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10% 内外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養殖用 송어를 수출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수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表 2-18>.

豚肉은 臺灣과 덴마크가 약 8 할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1982 ~ 83년에 걸쳐 덴마크산 豚肉의 輸入禁止措置를 계기로 臺灣產이 代替輸入이 되면서 臺灣의 市場占有率은 15%에서 40%로 급격히 신장했다. 우리나라는 地理的인 利點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市場占有率은 0.3%에 그치고 있어 日本市場開拓努力가 요구된다 <表 2-19>.

뱾장어는 대만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地理的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뱾장어는 온난성으로 대만의 天然의인 따뜻한 氣候에 기인하는

表 2-19 豚肉 輸入先別 輸入

單位 : 千噸, 억 원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金 額	4.8(3) 44	0.01 0.1	0.3 2.4	— —	0.3 2.3	0.09 0.8	0.8 6.4
대 만	物 量 金 額	25.8(17) 229	15.0(15) 126	16.7(15) 137	19.7(14) 180	50.7(26) 431	67.8(36) 587	83.9(40) 697
벤 마 크	物 量 金 額	16.7(11) 138	21.9(21) 183	29.1(27) 240	18.9(13) 161	75.0(38) 647	77.4(41) 675	78.1(38) 657
캐나다	物 量 金 額	36.1(24) 247	30.6(30) 254	30.0(28) 254	43.6(31) 433	29.6(15) 255	21.9(12) 192	22.4(11) 191
기 타	物 量 金 額	65.5(44) 548	35.8(35) 291	32.1(30) 504	58.9(42) 569	40(20) 347	23.0(12) 203	22.5(11) 197
合 計	物 量 金 額	148.9(100) 1,206	103.3(100) 854	108.2(100) 921	141.1(100) 1,343	195.6(100) 1,684	190.2(100) 1,658	207.7(100) 1,748

() 속은 총 豚肉 수입에 대한 비중.

資 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대부분 어린 새끼의 상태로 일본이나 臺灣으로 輸出하고 있어 對日輸出이 미미한 실정이다 <表 2-20>.

表 2-20 뱠장어 輸入先別 輸入

單位 : 千噸, 억 원

區 分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한 국	物 量 金 額	0.001 0.06	0.002 0.15	0.006 0.21	0.01(1) 0.19	0.003 0.06	0.013 0.29	0.009 0.15
대 만	物 量 金 額	14.1(99) 236	12.0(99) 240	15.0(97) 236	10.4(95) 184	15.9(94) 287	16.2(94) 253	20.1(95) 364
중 공	物 量 金 額	0.02 0.2	0.02 0.2	0.09(1) 1.2	0.4(3) 6.6	0.8(5) 12	1.0(6) 12	0.9(4) 13
기 타	物 量 金 額	0.1(1) 1	0.1(1) 1	0.3(2) 4	0.1(1) 2	0.2(1) 1	0.1(1) 1	0.1(1) 1
合 計	物 量 金 額	14.2(100) 237	12.1(100) 241	15.4(100) 241	10.9(100) 193	16.9(100) 300	17.3(100) 266	21.1(100) 378

() 속은 총 뱠장어 수입에 대한 비중.

資 料 : JETRO, 「日本貿易月表」, 各年度.

나. 日本의 市場과 貿易構造分析

위에서는 日本市場이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上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또한 日本의 農林水產物 수입을 產品別, 品目別 또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輸出하는 品目을 중심으로 과거의 時系列資料를 통하여 그 추세와 현황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價格變數의 輸入需要 설명력 검증과 그의 非價格變數의 확인을 위하여 農產物貿易의 註冊을 分析하는 貿易理論과 模型을 원용하여 統計的으로 검토함으로서 우리나라가 日本에 農林水產物을 輸出함에 있어 價格競爭 내지 弘報와 貿易障壁除去를 위한 상무외교에 전력할 것인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研究에서는 價格變數의 統計的 檢證을 위한 Amington과 Resnick and Truman의 Model을 사용하였으며 輸出入國間의 貿易選好度 측정과 각 輸出競爭國의 輸出伸張率을 價格 및 非價格要因으로 나누어 설명하기 위하여 Konandreas 와 Hurtado의 Model을 원용하였다. 다음에는 우선 各 模型의 理論的인 內容을 소개하고 統計資料를 計量的으로 分析하여 그 結果를 제시하였다.

① 아밍تون(Armington) 模型

가) 模型

아밍تون은 대부분의 貿易理論에서 어떤 商品의 성질은 供給國 혹은 輸出國 즉 原產地와 상관없이 同質의이므로 價格의 交叉 輸入需要彈力性은 무한대라는 假定을 반박하고同一한 商品이라도 原產地에 따라 異質의이며 따라서 價格의 交叉彈力性은 有限한 값을 갖는다는 論理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各商品이 原產地 혹은 輸出國에 따라 그 品質이 相異하다면 어느 特定國에서 생산된 特定商品의 特定國家에서의 輸入需要式은 매우 복잡하게 되므로 이를 위하여 輸入需要式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理論의 假定을 도입하였다. 그 첫번째 假定으로서는 商品需要上의 獨立性 (assumption of independence)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가령 日本의 韓

國 또는 여타 輸出競爭國으로부터의 사과 輸入需要는 한국 또는 기타 輸出競爭國으로부터의 배 輸入量과는 獨立的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特定國의 어느 商品에 대한 輸入需要式은 물론 特定國에서 생산된商品의 輸入需要式도 總輸入의 크기와 特定國으로부터 수출된 特定商品의相對價格函數로 명확히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特定輸出國의 輸入市場에서의 市場占有率이 相對價格이 변하지 않는 한 輸入量 大小와는 상관없이 일정하다면 特定輸入國의 輸入規模는 所得과 商品間의 相對價格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의 두 假定을 종합하면 特定國家의 特定國家로부터의 商品의 輸入需要는 所得, 商品間의 相對價格 그리고 特定國家로부터 輸入되는 特定商品의 相對價格의函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特定商品輸出에 있어서 輸出競爭國이 많을 경우에는 特定國으로부터의 輸入需要式을 더욱 간략하게 도출하기 위해서

① 어느 特定 2 個國으로부터 수입한 特定商品間의 代替彈力度는 일정하며 市場占有率과 무관하다.

② 어느 特定 2 個國으로부터 수입한 商品間의 代替彈力度는 여타 어느 특정 2 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간의 代替彈力度와 같다라는 假定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假定下에서 아밍튼 輸入需要式은 아래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우리는 貿易의 흐름을

$$(1) \quad C = (C_1, C_2, \dots, C_m)$$

$$X = (X_1, X_2, \dots, X_n)$$

$$X_i = (X_{i1}, X_{i2}, \dots, X_{im}) \quad i = 1, 2, \dots, n$$

와 같은 벡터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C 는 국가를 나타내는 벡터로서 총 m 개국이 있으며, X 는 상품을 나타내는 벡터로서 총 n 개의 상품이 있는데 X_{ij} 는 j 국에서 수출하는 상품 i 의 량을 나타내고 X_{ij} 와 X_{ik} 의 교차가 격탄력성은 무한대가 아니다($j \neq k \quad i = 1, 2, \dots, n$)

다음으로 어느 수입국가의 특정상품에 대한 市場需要는 주어진 예산과 소득하에서 效用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서 그것은

$$\begin{aligned} \max \quad V &= V(X) \\ &= V(X_1, X_2, \dots, X_n) \\ &= V(X_{11}, X_{12}, \dots, X_{1m}, X_{21}, X_{22}, \dots, X_{2m} \\ &\quad \dots, X_{n1}, X_{n2}, \dots, X_{nm}) \\ \text{s.t.} \quad D &= PX' \end{aligned}$$

로서 여기에서 D 는 소득, P 는 가격의 백터인데

(2) $P = (P_{11}, P_{12}, \dots, P_{1m}, P_{21}, P_{22}, \dots, P_{2m}, \dots, P_{n1}, P_{n2}, \dots, P_{nm})$ 이다.

효용극대화의 1차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정상품의 수입수요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3) $X_{ij} = X_{ij}(D, P_{11}, P_{12}, \dots, P_{im}, P_{21}, P_{22}, \dots, P_{2m}, \dots, P_{n1}, P_{n2}, \dots, P_{nm})$

그러나 위의 輸入需要方程式은 獨立變數가 너무 많아 통계적예측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실제적이지 못한데 위에서와 같이 효용함수의 독립성이라는 가정하에서는

$$\begin{aligned} (4) \quad \max \quad V &= V(X_{11}, X_{12}, \dots, X_{1m}, X_{21}, X_{22}, \dots, \\ &\quad X_{2m}, \dots, X_{n1}, X_{n2}, \dots, X_{nm}) \\ &= V'(X_1, X_2, \dots, X_n) \end{aligned}$$

s.t. $D = \sum_{i=1}^n \sum_{k=1}^m P_{ik} X_{ik} = \sum_{i=1}^n P_i X_i$ 로부터 어느 상품 X_i 의 수입수요함수

(5) $X_i = X_i(D, P_1, P_2, \dots, P_n)$ 을 도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X_i = \phi_i(X_{i1}, X_{i2}, \dots, X_{im})$ 이다.

그리고 어느 상품의 총수요량(X_i , $i = 1, 2, \dots, n$)이 결정되면 다음 단계로 특정상품수요 X_{ij} 는

$$(6) \min \sum_{k=1}^m P_{ik} X_{ik}$$

s.t $X_i = \phi_i (X_{i1}, X_{i2}, \dots, X_{im})$ 로부터

$$(7) X_{ij} = X_{ij} (X_i, \frac{P_{ij}}{P_{i1}}, \frac{P_{ij}}{P_{i2}}, \dots, \frac{P_{ij}}{P_{in}})$$

를 유도할 수 있는데 더욱이 ϕ_i 가 일정한 대체탄력도를 갖는 함수라면 (constant - elasticity - substitution functions) 식 ⑦은

$$(8) X_{ij} = b_{ij}^{\sigma_i} X_i (\frac{p_{ij}}{p_i})^{-\sigma_i}$$

로 바꾸어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σ_i 는 대체탄력도이다.

위의 수요함수를 변화율의 형태로 변형하면

$$(9) \frac{d(p_{ij} x_{ij})}{p_{ij} x_{ij}} = \varepsilon_i \frac{dD}{D} - (\eta_i - 1) \frac{dp_i}{p_i} + \sum_{k \neq i} \eta_{ik} \frac{dp_k}{p_k} - (\sigma_i - 1) \left(\frac{dp_{ij}}{p_{ij}} - \frac{dp_i}{p_i} \right)$$

또는

$$(10) \frac{d(p_{ij} x_{ij})}{p_{ij} x_{ij}} = \varepsilon_i \frac{dD}{D} - [(1 - S_{ij}) (\alpha_i - 1) + S_{ij} (\eta_i - 1)] \frac{dp_{ij}}{p_{ij}} + \sum_{k \neq i} [S_{ik} (\alpha_i - 1) - S_{ik} (\eta_i - 1)] \frac{dp_k}{p_k} + \sum_{k \neq i} \eta_{ik} \frac{dp_k}{p_k}$$

이며 식 (9)와 (10)에서 ε_i 는 상품 X_i 의所得彈力值, η_i 는 상품 X_i 수요의自體價格彈力性, S_{ij} 는 수출국 j 의市場占有率, η_{ik} 는 P_k 에 대한 상품 X_i 수요의交叉彈力性을 나타낸다. 또한 상품 X_i 의 자체가격탄력치가 1이고, 상품 X_i 의 P_k ($i \neq k$)에 대한 교차가격탄력치의 합 ($\sum_{i \neq k} \eta_{ik} = 0$)이 0이라면 위의 식 (10)은 다시

$$(11) \frac{d(\frac{\mathbf{p}_{ij} \mathbf{x}_{ij}}{\mathbf{p}_{ij} - \mathbf{x}_{ij}})}{D} = \epsilon_i \frac{dD}{D} - (\sigma_i - 1) \left(\frac{d\mathbf{p}_{ij}}{\mathbf{p}_{ij}} - \frac{d\mathbf{p}_i}{\mathbf{p}_i} \right)$$

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위의 식 (11)에서 등식의 오른쪽 첫째 항목은 소득
둘째 항목은 가격에 의하여 나타나는 j 국의 수출증가효과를 의미한다.

나)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需要式의 推定

본 연구에서는 각商品의 총수요, 한국에서 輸出 供給되는 각商品의
수요와 그변화율을 나타내는 輸入需要式 (5), (8), 그리고 (11)을 추정하였
다. 그對象品目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日本에서 주로 輸入하고 그外形額
이 크며, 동시에 한국의 主要 輸出品이고, 아울러 日本市場에서 우리나라
와 經濟與件이 유사한中共, 臺灣 그리고 북한과 경쟁관계에 있는 品目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統計資料는 일본 貿易振興會의 「日本貿易月表」 1976
~ 85년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日本의 貿易分類方式이 1976년을 전후하여
바뀌었기 때문에(SITC에서 CCCN으로) 충분한 수의 관측치를 얻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 15個品目에 대한 日本의 輸入需要豫測結果는 <表2-21>
에 要約되었다.

우선 일본의 商品別 總 輸入需要를 선형함수와 양변대수함수로 하여 예
측하였고 獨立變數로서는 所得, 自體價格 그리고 嗜好의 변화를 나타내는
時間變數 그리고 또 하나의 趨勢變數인 所得의 變化率($Q_D = (D_t - D_{t-1})/D_t$)
를 포함시켰다. 선형함수에 있어서 R^2 는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價格과 所得變數의 유의성이 대체로 낮은 편이며, 대수함수의 예측결과는
 R^2 에는 별 변동이 없으나 獨立變數中 所得變數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價
格變數의 유의성은 낮아졌다.

結論的으로 가격의 변동은 日本의 農林水產物輸入을 적절히 설명해 주
는 변수가 못되나 所得 내지 趨勢變數는 어느정도 輸入量의 變化를 설명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韓國 農林水產物 輸入需要豫測結果
에서는 獨立變數 總需要量과 한국의 輸出價格과 日本의 輸入平均價格의
相對價格差가 일반적으로 統計的有意性을 가지기 때문에 日本의 한국농

表 2-21 日本의 品目別 總輸入需要 및 韓國商品에 대한 輸入需要式 推定結果

방정식 품목	일본의 총 수입 수요 (X_i)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X_{ij})								
	X _i				$\ln X_i$					$\ln X_{ij}$				$d(P_{ij} X_{ij}) / P_{ij} X_{ij}$				
	D	P _i	T	R ²	D.W.	$\ln D$	$\ln P_i$	$\ln Q_D$	R ²	D.W.	$\ln X_i$	$\ln \left(\frac{P_{ij}}{P_i} \right)$	R ²	D.W.	dD/D	$d \left(\frac{P_{ij}}{P_i} X_{ij} \right) - d \left(\frac{P_i}{P_{ij}} X_{ij} \right)$	R ²	D.W.
대구의관	0.769 (0.20)	-9711.668 (-2.20)	1376.080 (0.48)	0.870	1.99	4.833*** (5.25)	-0.500** (-2.64)	-0.329 (-1.27)	0.849	2.32	2.147*** (5.32)	3.000*** (3.31)	0.827	2.74	-252.222 (-0.84)	27.586*(2.01)* (-0.84)	0.387	2.27
삼치	9.483 (1.45)	22767.505 (1.02)	-7363.195 (-1.47)	0.354	2.44	-0.738 (-0.39)	-0.367 (-0.41)	0.150 (0.226)	0.169	2.09	1.496** (2.81)	-0.244 (-0.20)	0.564	0.79	-82.704 (-0.73)	-5.511*(-2.00) (-2.00)	0.382	1.83
계	55.513*** (5.76)	18706.895 (0.87)	-3920.40** (-5.65)	0.883	2.09	1.028 (0.91)	-0.432 (-0.48)	0.379 (0.65)	0.277	0.76	0.345 (1.43)	-1.063** (-2.44)	0.501	0.72	21.153 (1.05)	5.325*(1.68) (1.68)	0.300	1.69
오징어	3.979 (0.53)	57470.5 (0.46)	-6052.38 (-0.11)	0.143	1.28	-1.121 (-0.90)	0.513 (-1.08)	-0.103 (-0.21)	0.278	1.16	0.783*** (6.86)	-3.638*** (-7.60)	0.978	1.28	2.340 (0.02)	-82.468*(-12.53) (-12.53)	0.957	2.82
문어	1.453 (0.11)	-71179.9 (-3.59)	4956.066 (0.54)	0.926	1.58	2.387*** (9.86)	-0.500** (-5.45)	0.103 (1.16)	0.944	1.39	0.098 (0.13)	-22.040 (-0.84)	0.367	1.33	42.635 (0.89)	-97.960*(-1.81) (-1.81)	0.319	2.03
표고버섯	-0.229 (-0.56)	219.448 (1.36)	163.589 (0.57)	0.556	2.88	-2.015 (-0.96)	1.708 (-1.70)	-1.861** (-2.16)	0.606	2.34	0.776*** (12.29)	-2.963*** (-6.64)	0.956	1.43	26.119 (0.18)	18.356*(3.54) (3.54)	0.691	1.52
밥	9.452 (1.67)	-5936.832 (-0.14)	-5371.7 (-1.34)	0.771	2.05	1.760** (3.70)	-0.062 (-0.09)	0.104 (0.57)	0.723	1.97	0.362 (0.18)	-1.553 (-1.69)	0.413	1.57	-1269.643 (-0.44)	-35.381*(-0.64) (-0.64)	0.106	2.69
생사	0.986 (0.48)	69.802 (0.18)	-954.78 (-0.67)	0.474	1.49	-3.034 (-1.34)	-0.215 (-0.20)	-0.573 (-0.93)	0.477	1.06	5.324*** (6.98)	5.324*** (6.36)	0.941	2.08	30015120 (0.97)	5526.367*(1.07) (1.07)	0.119	2.62
돈육	-50.621 (-1.02)	-354.300 (-1.49)	50169.29 (1.36)	0.855	2.01	2.233*** (5.95)	2.163 (1.74)	0.599** (2.66)	0.904	0.90	2.774 (1.01)	-45.906*** (-3.75)	0.676	1.39	-1748276 (-0.55)	-238852*(-0.73) (-0.73)	0.082	2.58
연어·송어	-31.555 (-1.57)	81788.8 (-1.94)	34917.9 (2.41)	0.929	2.27	5.927*** (5.12)	1.658 (1.63)	-0.571 (-1.44)	0.849	0.71	3.152*** (4.98)	-2.100*** (-2.62)	0.831	1.07	9.127 (0.02)	-3.515*(-0.57) (-0.57)	0.055	2.28
참치	-0.027 (-0.45)	-12882.2 (-2.65)	1226.85 (9.42)	0.944	2.09	0.062 (0.36)	0.395 (0.24)	-0.223 (-0.41)	0.060	0.34	2.680 (1.67)	-2.499** (-2.88)	0.630	1.74	-19.287 (-0.36)	-55.520*(-0.46) (-0.46)	0.040	1.29
미역	7.611 (0.811)	54476.3 (1.07)	-5347.4 (-0.72)	0.671	2.35	0.033 (0.03)	0.705 (1.41)	0.289 (0.86)	0.661	1.97	0.989*** (93.40)	-2.975** (-15.16)	0.999	1.87	13.832 (0.25)	75.787*(0.80) (0.80)	0.114	2.75
녹차	2.372 (2.35)	-4458.3 (-0.71)	-2087.2** (-2.90)	0.925	1.44	-2.946*** (-6.21)	-1.385** (-2.10)	0.455** (2.38)	0.906	1.37	-0.998 (-0.77)	-1.229 (-0.98)	0.224	1.61	7843.952 (0.42)	-283.473*(-0.71) (-0.71)	0.072	2.19
백삼	0.089 (0.82)	-14.387 (-1.54)	-47.329 (-0.60)	0.616	2.02	2.959** (3.23)	-1.076** (-2.13)	0.773** (2.09)	0.739	1.19	0.917*** (7.76)	-4.049** (-5.79)	0.972	2.03	-104.468 (-1.46)	-14.438*(-1.98) (-1.98)	0.416	2.89
뱀장어	3.641 (0.79)	-4504.2 (-0.80)	-1995.85 (-0.60)	0.524	2.45	1.282** (2.34)	-0.400 (-0.63)	0.286 (1.25)	0.560	2.17	-0.552 (-0.25)	-0.726 (-1.09)	0.147	1.72	3398.704 (1.46)	7.093*(0.48) (0.48)	0.243	2.11

* 통계적 유의수준: * : 10%, ** : 5%, *** : 1%, () : t값

림수산물 輸入은 日本의 總 輸入量 및 韓國의 輸出價格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나, 상대가격변수 $\ln(p_{ij}/p_i)$ 와 $(\frac{d p_{ij}}{p_{ij}} - \frac{d p_i}{p_i})$ 의 예측계수가 ∞ 에 가깝지 않음을 볼 때 商品間에는 同質性이 없고 生產國에 따라商品은 異質的이며 따라서 價格交叉彈力度가 무한대가 아니라는 아밍تون의假定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레스닉과 트루만 模型(Resnick and Truma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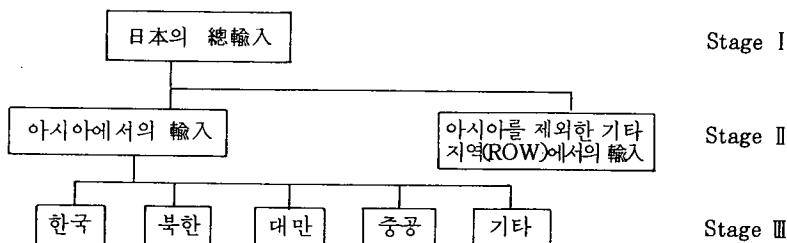
위에서 보았듯이 아밍تون모형에서는 輸入需要式의 單純化를 위해서 여러 가지 假定을 도입하였는데 몇몇의 假定은 제한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질 수도 있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假定이 없이는 商品과 輸出國의 수가 많아 輸入需要式의 獨立變數 특히 價格變數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움(multicollinearity)이 따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레스닉과 트루만은 유럽국가간의 무역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그들의 방법을 일본의 農林水產物 輸入形態를 설명하기 위하여 원용하였다.

가) 模 型

일본의 각각의 農林水產物 輸入經路 또는 段階는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어떤 상품을 輸入함에 있어 1次的으로 總輸入量을 결정하고 2次的으로 總輸入量의 限度內에서 價格條件 또는 여러가지 輸入上의

圖 2-1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



經濟性을 고려하여 아시아와 아시아를 제외한 기타지역에서의 輸入量을 각각 결정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의 輸入量의 限度內에서 한국, 북한, 중공, 대만 그리고 기타국으로부터의 輸入量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위의 輸入段階를 예측하게 될 輸入需要方程式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總輸入需要式은

$$(1) \ln M_T = a_0 + a_1 \ln P_T + a_2 \ln Y + a_3 \ln Q_D$$

이며 여기에서 M_T 는 각 상품의 총수입량

P_T 는 세계로부터의 수입가격지수 ($P_T = \sum_{i=1}^n w_i P_i$)이며

w_i 는 i 국가의 日本市場占有率, P_i 는 i 국가의 수출가격지수
Y는 실질국민소득

Q_D 는 輸入에 영향을 주는 그외의 변수 ($= (Q - Q^*) / Q$)이며

Q는 식품소비지출

Q^* 는 추세지수이다.

다음으로 日本의 世界로부터의 總輸入은 아시아와 기타로부터의 輸入으로 區分되는데 이것은

$$(2) \frac{M_A}{M_T} = d_{10} + d_{11} P_A + d_{12} P_{ROW}$$

$$(3) \frac{M_{ROW}}{M_T} = d_{20} + d_{21} P_A + d_{22} P_{ROW}$$

로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M_A , M_{ROW} 는 아시아로부터 그리고 기타로부터의 輸入量이고 P_A , P_{ROW} 는 아시아로부터 그리고 기타로부터의 輸入價格指數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다시 個別國家로부터의 輸入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4) \frac{M_i}{M_A} = C_{i0} + \sum_j C_{ij} P_j$$

$j =$ 한국, 중공, 대만 등이며 여기에서 M_i 는 i 국으로부터의 일본의 수

입량을 P_j 는 j 국의 수출가격지수를 나타낸다.

위의 方程式 (1) ~ (4) 를 예측하고 나면 각 상품의 自體價格彈力值와 交叉價格彈力值를 구할 수 있는데 i 국으로부터의 輸入量 M_i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5) M_i = S\text{III}_i \cdot S\text{II}_A \cdot M_T$$

여기에서 $S\text{II}_A$ 는 일본의 총수입중 아시아로부터의 輸入比重

$S\text{III}_i$ 는 아시아로부터의 輸入중 특정국가로부터의 輸入比重을 나타낸다.

위의 식 (5)를 P_i 에 관해서 편미분하여 정리하면

1) 자체가격탄력치

$$(6) \frac{\partial M_i}{\partial P_i} \cdot \frac{P_i}{M_i} = \frac{C_{ii} P_i}{S\text{III}_i} + d_{KK} \frac{x_i P_i}{S\text{II}_A} + a_1 W_i \frac{P_i}{P_t}$$

2) 교차가격탄력치

$$(7) \frac{\partial M_i}{\partial P_j} \cdot \frac{P_j}{M_i} = \frac{C_{ij} P_i}{S\text{III}_i} + d_{KK} \frac{x_j P_j}{S\text{II}_A} + a_1 W_j \frac{P_i}{P_t}$$

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自體價格彈力值는 물론 輸出國간의 交叉價格彈力值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나)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需要式의 推定

여기서도 아밍톤模型 推定에서와 같이 對象品目은 동일하며, 日本貿易振興會 「日本貿易月表」의 1976~8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레스닉과 트루만模型에 있어서 각 단계의 相對的 輸入需要方程式은 市場占有 rate를 나타내고, 市場占有rate의 合計는 1이며, 價格變數 以外에 各國의 市場占有rate에 영향을 주는 생략된 變數가 있을 것으로 假定하여 市場占有rate의 合計가 1이라는 制約條件下에서 3 SLS 방식으로 方程式體系를 推定하였는데 그 결과는 <表 2-22>에서 <表 2-36>까지 要約되어 있다.

推定結果에서 보듯이 일본의 農林水產物 輸入需要式의 自體價格과 代替價格에 대한 系數豫測符號가 대부분 理論에서와 같은 부호가 아니었고 그統計的 有意性도 매우 낮아 價格變數는 輸入需要式을 설명하는 적절한 變

表 2-22 日本의 대구의 한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총 속 변 수		독 립 변 수			
총 수 입		절 편	P _A	P _{ROW}	R ²
아 시 아		0.037 (0.378)	0.161 (0.990)	0.348 (1.239)	0.581
(A)		0.962	-0.161	-0.348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		(4.449)	(-0.454)	(-0.568)	
(ROW)					
아시아각국으로부터의 수입		절 편	P _{SK}	P _{TW}	P _{NK}
한 국		0.857 (6.103)	0.060 (-0.347)	-0.297 (-1.672)	0.024 (0.090)
(SK)		0.185 (4.419)	0.076 (-1.459)	0.041 (0.769)	-0.174* (-2.179)
대 만		-0.043 (-0.200)	0.136 (0.509)	0.257 (0.937)	0.151 (0.366)
북 한					
(NK)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5%, *** : 1%, () : t 값

表 2-23 日本의 삼치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총 속 변 수		독 립 변 수			
총 수 입		절 편	P _A	P _{ROW}	R ²
아 시 아		0.754 (7.879)	0.643** (2.734)	-0.147 (-0.562)	0.485
(A)		0.246 (0.272)	-0.643 (-0.288)	0.147 (0.059)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					
(ROW)					
아시아각국으로부터의 수입		절 편	P _{SK}	P _{TW}	P _{NK}
한 국		0.197 (0.321)	0.655 (0.592)	0.851 (0.337)	-0.186 (-0.322) -0.227 (-0.106)
(SK)		-0.006 (-0.085)	-0.085 (-0.659)	0.340 (1.157)	0.077 (1.144) 0.113 (0.453)
대 만					
(TW)					
북 한		-0.029 (-0.858)	0.016 (0.264)	-0.060 (-0.427)	0.024 (0.737) 0.118 (0.986)
(NK)					
중 공		0.838 (0.933)	-0.586 (-0.362)	-1.132 (-0.306)	0.086 (0.102) -0.004 (-0.001)
(CH)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5%, *** : 1%, () : t 값

表 2-24 日本의 개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R^2	
총 수 입	아 시 아	절 편	P_A	P_{ROW}			
	(A)	0.659 (2.296)	-0.523 (-0.980)	0.012 (0.045)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	(ROW)	0.341 (0.621)	0.523 (0.513)	-0.012 (-0.024)		0.168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수입	한 국	절 편	P_{SK}	P_{TW}	P_{NK}	P_{CH}	R^2
	(SK)	1.728 (4.047)	-1.043 (-2.853)	-1.319 (-0.950)	0.329 (1.015)	0.236 (0.397)	
대 만	(TW)	-0.046 (0.584)	-0.077 (0.299)	0.288 (0.308)	0.043 (0.499)	0.077 (0.515)	
북 한	(NK)	0.055 (0.807)	0.150 (2.561)	0.112 (0.502)	-0.102 (-1.960)	-0.297 (-3.113)	0.800
중 공	(CH)	-0.737 (-0.712)	0.970 (1.094)	0.919 (0.273)	-0.271 (-0.344)	-0.015 (-0.011)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5%, *** : 1%, () : t 값

表 2-25 日本의 오징어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R^2	
총 수 입	아 시 아	절 편	P_A	P_{ROW}			
	(A)	0.340 (5.566)	-0.699 (-3.311)	0.604 (2.428)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	(ROW)	0.659 (1.409)	0.699 (0.433)	-0.604 (-0.317)		0.600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수입	한 국	절 편	P_{SK}	P_{TW}	P_{NK}	P_{CH}	R^2
	(SK)	0.227 (0.917)	0.331 (0.498)	0.292 (1.822)	-0.257 (-0.651)	0.528 (0.829)	
대 만	(TW)	0.747 (3.247)	-0.345 (-0.557)	-0.271 (-1.824)	0.211 (0.574)	-0.541 (-0.913)	
북 한	(NK)	0.015 (0.690)	-0.086 (-1.466)	0.014 (0.985)	0.025 (0.724)	0.050 (1.887)	0.744
중 공	(CH)	0.011 (0.018)	0.099 (0.059)	-0.034 (-0.085)	0.021 (0.022)	-0.038 (-0.024)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5%, *** : 1%, () : t 값

表 2-26 日本의 문어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R ²
총 수 입		절 편	P _A	P _{ROW}			
아 시 아		0.221	-0.274	0.089			
(A)		(4.775)	(-1.446)	(0.541)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		0.779	0.274	-0.089			0.358
(ROW)		(1.190)	(0.102)	(-0.038)			
아시아각국으로부터의 수입		절 편	P _{SK}	P _{TW}	P _{NK}	P _{CH}	R ²
한 국		0.953	0.047	-0.050*	0.017	0.052	
(SK)		(21.201)	(0.830)	(-2.034)	(0.069)	(0.960)	
대 만		0.038	-0.013	0.030*	-0.132	-0.032	
(TW)		(1.334)	(-0.358)	(1.907)	(-0.824)	(-0.927)	
북 한		-0.008	0.007	0.002	0.066	-0.006	0.614
(NK)		(-0.971)	(0.725)	(0.461)	(1.458)	(-0.580)	
중 공		0.016	-0.042	0.018	0.048	-0.014	
(CH)		(0.019)	(-0.037)	(0.037)	(0.010)	(-0.013)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5%, *** : 1%, () : t 값

表 2-27 日本의 표고버섯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R ²
총 수 입		절 편	P _A	P _{ROW}			
아 시 아		1.022	-0.016	-0.015			
(A)		(20.422)	(-0.638)	(-1.634)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		-0.022	-0.016	0.015			0.637
(ROW)		(-0.019)	(-0.028)	(0.070)			
아시아각국으로부터의 수입		절 편	P _{SK}	P _{CH}			R ²
한 국		1.177	-0.158	-0.082			
(SK)		(7.018)	(-1.589)	(-0.732)			
중 공		-0.181	0.157	0.086			0.594
(CH)		(-0.557)	(0.814)	(0.340)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5%, *** : 1%, () : t 값

表 2-28 日本의 밤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총 속변수	독립변수			
총 수입	절편	P_A	P_{ROW}	R^2
아시아	1.080	-0.297*	0.016	
(A)	(16.080)	(-1.967)	(0.291)	
아시아를 제외한지역	-0.080	0.297	-0.016	0.438
(ROW)	(-0.023)	(0.038)	(-0.006)	
아시아각국으로부터의 수입	절편	P_{SK}	P_{CH}	R^2
한국	0.056	-0.009	-0.106	
(SK)	(0.779)	(-0.359)	(-0.487)	
중공	0.944	0.009	0.106	0.079
(CH)	(0.370)	(0.010)	(0.014)	

* 통계적 유의수준: * : 10%, ** : 5%, *** : 1%, () : t 값

表 2-29 日本의 生絲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총 속변수	독립변수			
총 수입	절편	P_A	P_{ROW}	R^2
아시아	0.757	-0.023	0.051***	
(A)	(4.641)	(-1.314)	(3.424)	
아시아를 제외한지역	0.243	0.023	-0.051	0.640
(ROW)	(0.288)	(0.254)	(-0.663)	
아시아각국으로부터의 수입	절편	P_{SK}	P_{NK}	P_{CH}
한국	-0.140	0.019	-0.010	0.022
(SK)	(-0.696)	(1.395)	(-0.227)	(0.626)
북한	-0.003	0.001	-0.001	0.003
(NK)	(-0.115)	(0.450)	(-0.173)	(0.634)
중공	1.142	-0.020	0.011	-0.025
(CH)	(0.822)	(-0.209)	(0.036)	(-0.103)

* 통계적 유의수준: * : 10%, ** : 5%, *** : 1%, () : t 값

表 2-30 日本의 돈육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총 수 입		절 편	P_A	P_{ROW}	R^2
아 시 아		0.427	-0.206	-0.048	
(A)		(0.426)	(-0.150)	(-0.060)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		0.573	0.206	0.483	0.006
(ROW)		(0.173)	(0.045)	(0.018)	
아시아각국으로부터의 수입		절 편	P_{SK}	P_{TW}	R^2
한 국		-0.256	0.076	0.290	
(SK)		(-0.282)	(1.015)	(0.281)	
페 르	미	1.256	-0.076	-0.290	0.124
(TW)		(0.200)	(-0.147)	(-0.041)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5%, *** : 1%, () : t 값

表 2-31 日本의 연어·송어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총 수 입		절 편	P_A	P_{ROW}	R^2
아 시 아		0.029	-0.241	0.096	
(A)		(0.275)	(-1.480)	(0.856)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		0.970	0.241	-0.096	0.229
(ROW)		(0.543)	(0.919)	(-0.953)	
아시아각국으로부터의 수입		절 편	P_{SK}	P_{NK}	R^2
한 국		0.114	-0.290	0.778	
(SK)		(0.282)	(-0.932)	(0.530)	
북 한		0.886	0.290	-0.778	0.098
(NK)		(1.310)	(0.555)	(-0.316)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5%, *** : 1%, () : t 값

表 2-32 日本의 참치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총 수 입	절	편	P_A	P_{ROW}
아 시 아	0.376	0.086	0.261	
(A)	(0.916)	(0.337)	(1.500)	
아시아를 제외한지역	0.624	-0.086	-0.261	0.219
(ROW)	(0.304)	(-0.067)	(-0.300)	
아시아각국으로부터의 수입	절	편	P_{SK}	P_{TW}
한 국	0.023	-0.005	-0.015	
(SK)	(0.803)	(-0.691)	(-0.534)	
태 만	0.977	0.005	0.015	0.129
(TW)	(0.471)	(0.010)	(0.008)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5%, *** : 1%, () : t 값

表 2-33 日本의 미역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총 수 입	절	편	P_A	R_{ROW}
아 시 아				
(A)				
아시아를 제외한지역				
(ROW)				
아시아각국으로부터의 수입	절	편	P_{SK}	P_{CH}
한 국	1.075	-0.630*	0.308	
(SK)	(26.389)	(-2.070)	(1.072)	
중 공	-0.075	0.630	-0.308	0.517
(CH)	(-0.094)	(0.105)	(-0.055)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5%, *** : 1%, () : t 값

表 2-34 日本의 녹차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총 수 입		절 편	P _A	P _{ROW}	R ²
아 시 아	(A)	1.051	-0.713*	0.216 (5.219) (-1.775) (1.394)	
아시아를 제외한지역	(ROW)	-0.051	0.713 (-0.033)	-0.216 (0.232) (-0.182)	0.432
아시아각국으로부터의 수입		절 편	P _{SK}	P _{TW}	P _{CH}
한 국	(SK)	0.005	0.002** (1.450)	-0.0001 (3.528)	-0.013*** (-0.019) (-3.145)
대 만	(TW)	0.861	-0.125** (8.323)	-0.527** (-6.780)	0.735*** (-2.539) (6.427)
중 공	(CH)	0.134	0.122 (0.152)	0.527 (0.779)	-0.722 (0.297) (-0.738)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 5 %, *** : 1 %, () : t 값

表 2-35 日本의 백삼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총 수 입		절 편	P _A	P _{ROW}	R ²
아 시 아	(A)	0.972	0.002 (57.121)	-0.0005* (1.126) (-2.082)	
아시아를 제외한지역	(ROW)	0.028	-0.002 (0.031) (-0.022)	0.0005 (0.040)	0.402
아시아각국으로부터의 수입		절 편	P _{SK}	P _{CH}	R ²
한 국	(SK)	1.368	-0.039* (4.527)	-0.009 (-2.085) (-0.386)	
중 공	(CH)	-0.368	0.039 (-0.526)	0.009 (0.900) (0.167)	0.384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 5 %, *** : 1 %, () : t 값

表 2-36 일본의 뱠장어 輸入需要 方程式 推定結果

종 속 변 수	독 럽 변 수				R^2
	절 편	P_A	P_{ROW}		
총 수 입					
아 시 아	0.979	0.002	0.006		
(A)	(41.842)	(0.192)	(1.270)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 (ROW)	0.021 (0.009)	-0.002 (-0.002)	-0.006 (-0.012)		0.170
아시아 각국으로 부터의 수입					
한 국	0.001 (0.619)	-0.0004 (-0.676)	-0.0001 (-0.131)	-0.001 (-0.094)	
대 만	1.030 (13.757)	0.005 (1.365)	-0.010 (-0.169)	-0.038 (-0.662)	0.356
중 공	-0.031 (-0.020)	-0.005 (-0.067)	0.010 (0.008)	0.038 (0.033)	
(CH)					

* 통계적 유의수준 ; * : 10%, ** : 5%, *** : 1%, () : t 값

數가 뜻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많은 品目의 경우 특히 豚肉, 뱠장어는 GLS R^2 가 낮음을 볼 때 價格以外에 說明變數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생략변수는 非價格競爭要因인 品質의 差異, 국가간의 무역장벽정도 그리고 국가간의 貿易選好度 등이 貿易의 큰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價格의 變化는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③ 코너드레스와 헤타도模型

위의 아밍تون과 레스닉·트루만模型과 그 實證的인 假說檢定에서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에 미치는 價格의 영향을 分析하였으나 價格變數는 獨立變數로서 적절한 역할을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農林水產物 貿易의 경우에는 수출국에 따라 商品이 異質的이며, 相對貿易國間의 相異한 專統的 貿易慣行, 貿易障壁, 制度的, 政治的 要因 등이 존재하여 價格이 貿易量의一部分밖에 說明하지 못하고 있음을 가상하여 여기에서는 價格以外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등을 計量化하여 무역의 흐름을 좀 더 구체

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 模 型

코년드레스와 허타도는 세계의 主要 小麥 輸出國家의 小麥輸出增加要因을 세계시장규모의 증가, 각 輸出國의 競爭力向上, 特定輸入國家의 輸入規模增加, 貿易選好度의 變化要因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여 아시아 農林水產物 輸出國家의 日本으로의 輸出增加要因을 分析하였다. 우선 이 模型에서의 假定으로서는 첫째, 特定年度, 特定商品의 貿易量은 여러가지의 貿易去來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特定商品의 個個去來가 i국에서 수출될 확률은 X_{si} 이고, j국에서 수입할 확률은 M_{sj} 라고 하면 어떤 貿易去來가 i국에서 j국으로 수출될 확률은 $X_{si} \cdot M_{sj}$ 인데 이때 중요한 假定은 i국에서 수출될 확률은 j국에서 수입할 확률과 獨立的(origin - destination independence)이며, i국에서 수출되고 j국에서 수입할 확률은 i'국에서 수출하고 j'국에서 수입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mutual independence)는 假定이다.

위의 假定下에서는 i국에서 j국으로의 특정상품무역기대량(expected trade flow from i to j)은

$$(1) \quad \hat{X}_{ij} = X_{si} \cdot M_{sj} \cdot X_{oo}$$

로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X_{oo} 는 特定年度의 總貿易量이다. 이때 i국에서 j국으로 실제 輸出된 輸出量 X_{ij} 는 \hat{X}_{ij} 과 불일치하는데 이는

- ① 國家間의 輸送費, 輸送의 質 및 方法,
- ② 輸出入國家의 流通施設, 通信, 使用言語, 文化, 商慣習, 制度, 法등의 諸般貿易環境(economic horizon and psychic distance),
- ③ 人爲的인 무역장벽, 數量制限, 관세, 輸出補助金, 外換統制 등의 要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즉, 평균적인 개념인 \hat{X}_{ij} 와 국가간의 特殊한 貿易環境, 무역장벽, 輸送問題下에서의 실제 X_{ij} 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의 諸般 貿易制約要因들을 相對的受諾度(degree of relative accep-

tance) 혹은 貿易選好度(degree of preference)를 뜻하는 係數로서 표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2) \quad P_{ij} = \frac{X_{ij}}{\hat{X}_{ij}} \quad \text{이다.}$$

여기에서 i, j 국간에 무역편견(trade bias)가 없다면 1이고 무역선호(불선호)가 존재한다면 1 보다 클(적)을 것이다.

式 (1) 과 (2)를 이용하여 i 국의 총수출량의 시간에 대한 變化率을 구하면

$$\begin{aligned} (3) \quad \dot{X}_i &= \sum_j \dot{X}_{ij} \\ &= \sum_j P_{ij} X_{si} M_{sj} X_{oo} \text{(total export growth)} \\ &= X_{si} X_{oo} \sum_j P_{ij} M_{sj} \text{(world growth effect)} \\ &\quad + \dot{X}_{si} X_{oo} - \sum_j P_{ij} M_{sj} \text{(competitive effect)} \\ &\quad + X_{si} X_{oo} \sum_j P_{ij} \dot{M}_{sj} \text{(import market effect)} \\ &\quad + X_{si} X_{oo} \sum_j P_{ij} M_{sj} \text{(preferential structure effect)} \end{aligned}$$

로서 輸出의 增加要因은 세계市場規模의 擴大, 輸出國의 國際競爭力向上, 去來輸入國의 輸入增加 위에서의 무역선호도의 변화 등으로 區分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나) 統計分析

여기에서 分析對象品目은 위의 2 模型에서와 같고 輸出入 對象國家는 輸出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위의 品目上 輸出競爭國인 中共, 臺灣 그리고 北韓을 포함시켰으며, 輸入국의 경우 우리나라 農林水產物의 主要輸出市場인 日本과 美國(日本, 美國으로의 輸出比重은 1975 ~ 86 年 68 ~ 55 %)을 포함시켰다. 資料는 日本貿易振興會 「日本貿易月表」와 美 商務省의 “미국의 一般輸入과 消費財輸入(U.S. General Imports and Imports for Consumption)을 사용였다. 그러나 미국의 統計資料는 한국과 일본의 商品分類와 相異하여 15 個品目 全體의 分析이 불가능하였고 각국의 統計資料에서 同一한 이름과 內容物로 分류된 6 個 品目에 한해서만 취급하였다.

우선 <表 2-37>에서 <表 2-42>까지에서는 4개 農林水產物 輸出國의 品目別 平均輸出量, 輸出市場占有率, 輸出集中度, 輸出對象國의 輸入比重에 관한 자료를 정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계의 輸出은 輸出競爭國中 제일 많으며 輸出集中度가 낮아 輸出市場의 偏重化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편이나 輸出市場占有率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輸出競爭力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공의 참치수출은 미국에 편중되어 있으나 대만은 日本, 美國에 고루 輸出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대만과는 달리 우리나라 輸出市場占有率은 계의 輸出에서와 같이 계속하여 낮아져 國際競爭력이 낮아지고 있다. 生糸의 市場은 中共이 거의 전부를 독점하고 있으며, 대만 및 북한과는 달리 美國으로도 상당량의 物量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밤의 輸出市場占有率은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매우 낮은 수준이고 미국으로도 輸出하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茶의 輸出市場은 대만과 中共이 兩分하여 獨占하고 있으나 臺灣의 市場占有率은 中共과는 달리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茶의 輸出市場占有率은 미약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輸出對象國은 일정치 않아 市場管理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조제버섯의 輸出市場占有率은 대만과 더불어 낮아지고 있으나 中共은 市場占有率을 계속 增加시키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는 달리 臺灣, 中共은 일본에도 상당량의 조제버섯수출로 輸出市場이 多變化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 대만, 중공, 북한 4個國의 農林水產物 主要 輸入國인 日本과 美國의 品目別 平均輸入量, 輸入比重, 輸入集中度, 輸入對象國과 輸入比重에 관한 자료를 <表 2-43> ~ <表 2-48>에서 정리하였다.

日本의 계輸入은 미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輸入比重이 감소하고 있으며 日本의 韓國으로부터의 계 輸入比重은 中共으로 부터의 輸入比重과는 반대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계시장은 한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中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참치의 경우에는 日本과는 반대로 미국의 輸入比重이 높아지고 있으며 日本은 거의 全量을 臺灣으로부터 輸入하고 있다. 生

表 2-37 계의 輸出市場占有率 및 輸出對象國, 1980 ~ 86

수 출 국	평균수출량	수출시장 점유율	수출집중도 *	대상국 (ms_{ij})	
				일 본	미 국
한 국	ton 1980 ~ 81 1982 ~ 84 1985 ~ 86	5,015	65.5	83	80.7
		4,139	49.9	74	64.4
		6,197	34.8	72	58.0
대 만	1980 ~ 81 1982 ~ 84 1985 ~ 86	226	3.0	100	100.0
		316	3.8	100	100.0
		947	5.3	98	98.2
중 공	1980 ~ 81 1982 ~ 84 1985 ~ 86	2,033	26.6	99	98.7
		3,657	44.1	97	96.7
		9,515	53.5	97	96.6
북 한	1980 ~ 81 1982 ~ 84 1985 ~ 86	337	4.9	100	100.0
		189	2.3	100	100.0
		1,135	6.4	100	100.0

* 수출집중도는 $\sqrt{\frac{2}{\sum} ms_{ij}^2}$ 이고 ms_{ij} 는 i국 총수출량에 대한 i국에서 j국으로의 수출량의 백분율. 100에 가까울수록 수출이 집중되어 있고 반대로 $70 = \sqrt{2 \times (\frac{100}{2})^2}$ 에 가까울수록 수출이 분산되어 있음을 뜻함.

表 2-38 참치의 輸出市場占有率 및 輸出對象國, 1980 ~ 86

수 출 국	평균수출량	수출시장 점유율	수출집중도 *	대상국 (ms_{ij})	
				일 본	미 국
한 국	ton 1980 ~ 81 1982 ~ 84 1985 ~ 86	11,701	36.5	100	0.4
		8,618	20.9	100	0.2
		2,095	4.5	92	8.4
대 만	1980 ~ 81 1982 ~ 84 1985 ~ 86	20,191	62.9	71	53.4
		32,509	78.8	74	35.1
		44,025	95.3	77	28.3
중 공	1980 ~ 81 1982 ~ 84 1985 ~ 86	184	0.6	100	0
		132	0.3	99	0.8
		66	0.1	99	1.5
북 한	1980 ~ 81 1982 ~ 84 1985 ~ 86	-	-	-	-
		-	-	-	-
		-	-	-	-

* 수출집중도는 $\sqrt{\frac{2}{\sum} ms_{ij}^2}$ 이고 ms_{ij} 는 i국 총수출량에 대한 i국에서 j국으로의 수출량의 백분율

表 2-39 生사의 輸出市場占有率 및 輸出對象國, 1980 ~ 86

수출국	평균수출량	수출시장점유율	수출집중도*	대상국 (ms_{ij})	
				일본	미국
한국	279 ton	12.6	100	100.0	0
		10.1	100	100.0	0
		—	—	—	—
대만	—	—	—	—	—
		—	—	—	—
		13	0.7	100	100.0
중공	1,891	85.2	89	88.7	11.3
		2,293	90	89.7	10.3
		1,791	93	92.2	7.8
북한	49	2.2	100	100.0	0
		48	1.8	100	0
		18	1.0	100	0

* 수출집중도는 $\sqrt{\sum_{j=1}^2 ms_{ij}^2}$ 이고 ms_{ij} 는 i국 총수출량에 대한 i국에서 j국으로의 수출량의 백분율

表 2-40 밤의 輸出市場占有率 및 輸出對象國, 1980 ~ 86

수출국	평균수출량	수출시장점유율	수출집중도*	대상국 (ms_{ij})	
				일본	미국
한국	129 ton	0.6	100	100.0	0
		1.1	79	74.9	25.1
		3.0	88	87.0	13.0
대만	—	—	—	—	—
		—	—	—	—
		—	—	—	—
중공	22,353	99.4	100	99.8	0.2
		98.9	100	99.7	0.3
		97.0	100	99.8	0.2
북한	—	—	—	—	—
		—	—	—	—
		—	—	—	—

* 수출집중도는 $\sqrt{\sum_{j=1}^2 ms_{ij}^2}$ 이고 ms_{ij} 는 i국 총수출량에 대한 i국에서 j국으로의 수출량의 백분율

으로의 수출량의 백분율

表 2-41 차의 輸出市場占有率 및 輸出對象國, 1980 ~ 86

수 출 국	평균수출량	수출 시장 점유율	수출집중도*	대상국 (ms_{ij})	
				일 본	미 국
한 국	ton 6	0.03	75	33.3	66.7
		0.01	100	100.0	0
		0.3	84	17.4	82.6
대 만	8,792	43.7	71	53.7	46.3
		41.3	74	35.8	64.2
		22.9	79	74.7	25.3
중 공	11,309	56.2	79	25.8	74.2
		58.7	80	24.0	76.0
		76.8	72	40.5	59.5
북 한	—	—	—	—	—
		—	—	—	—
		—	—	—	—

* 수출집중도는 $\sqrt{\sum_{j=1}^2 ms_{ij}^2}$ 이고 ms_{ij} 는 i 국 총수출량에 대한 i 국에서 j 국으로의 수출량의 백분율

表 2-42 조제버섯의 輸出市場占有率 및 輸出對象國, 1980 ~ 86

수 출 국	평균수출량	수출 시장 점유율	수출집중도*	대상국 (ms_{ij})	
				일 본	미 국
한 국	ton 7,934	15.7	93	7.8	92.2
		7.0	97	3.3	96.7
		6.5	99	0.6	99.4
대 만	24,466	48.4	86	15.8	84.2
		44.1	90	10.6	89.4
		39.6	91	9.3	90.7
중 공	18,126	35.9	73	36.0	64.0
		48.9	74	35.0	65.0
		53.9	74	35.6	64.4
북 한	12	0.02	100	100.0	0
		0.02	100	100.0	0
		—	—	—	—

* 수출집중도는 $\sqrt{\sum_{j=1}^2 ms_{ij}^2}$ 이고 ms_{ij} 는 i 국 총수출량에 대한 i 국에서 j 국으로의 수출량의 백분율

表 2-43 日本 및 美國의 아시아 4 個國으로 부터의 개의
輸入比重과 輸入對象國, 1980 ~ 86

수 입 국	평균수입량	수입 비중	수입집중도*	수 입 대 상 국 (XS_{ij})			
				한 국	대 만	중 공	북 한
일 본	1980 ~ 81	6,659	87.0	68	60.8	3.4	30.1
	1982 ~ 84	6,715	80.9	66	39.7	4.7	52.8
	1985 ~ 86	14,850	83.5	67	24.2	6.3	61.9
미 국	1980 ~ 81	992	13.0	97	97.4	0.0	2.6
	1982 ~ 84	1,586	19.1	93	92.8	0.0	7.2
	1985 ~ 86	2,944	16.5	89	88.5	0.6	10.9

* 수입집중도는 $\sqrt{\frac{4}{\sum_{i=1}^4 XS_{ij}^2}}$ 이고 XS_{ij} 는 j 국 총수입량에 대한 i 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백분율. 100에 가까울수록 수입이 집중되어 있고 반대로 $50 = \sqrt{4 \times (\frac{100}{4})^2}$ 에 가까울수록 수입이 분산되어 있음.

表 2-44 日本 및 美國의 아시아 4 個國으로부터의 참치의
輸入比重과 輸入對象國, 1980 ~ 86

수 입 국	평균수입량	수입 비중	수입집중도*	수 입 대 상 국 (XS_{ij})			
				한 국	대 만	중 공	북 한
일 본	1980 ~ 81	10,821	33.7	100	0.4	99.6	—
	1982 ~ 84	11,434	27.7	100	0.2	99.8	—
	1985 ~ 86	12,654	27.4	99	1.4	98.6	—
미 국	1980 ~ 81	21,255	66.3	70	54.8	44.3	0.9
	1982 ~ 84	29,825	72.3	76	28.8	70.7	0.4
	1985 ~ 86	33,532	72.6	94	5.7	94.1	0.2

* 수입집중도는 $\sqrt{\frac{4}{\sum_{i=1}^4 XS_{ij}^2}}$ 이고 XS_{ij} 는 j 국 총수입량에 대한 i 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백분율

糸는 주로 日本에서 輸入하고 있으며 日本, 美國 공히 거의 全量을 中共으로부터 輸入하고 있다.

表 2-45 日本 및 美國의 아시아 4 個國으로부터의 생사의
輸入比重과 輸入對象國, 1980 ~ 86

수 입 국	평균수입량	수입비중	수입집중도	수 입 대 상 국 (XS _{ij})			
				한 국	대 만	중 공	북 한
일 본	1980 ~ 81	2,006	90.4	85	13.9	—	83.6 2.4
	1982 ~ 84	2,368	90.9	88	11.1	—	86.8 2.0
	1985 ~ 86	1,683	92.4	98	—	0.8	98.2 1.1
미 국	1980 ~ 81	213	9.6	100	—	—	100.0 —
	1982 ~ 84	237	9.1	100	—	—	100.0 —
	1985 ~ 86	139	7.6	100	—	—	100.0 —

* 수입집중도는 $\sqrt{\frac{4}{\sum_{i=1}^4} XS_{ij}^2}$ 이고 XS_{ij}는 j 국 총수입량에 대한 i 국으로 부터의 수입량의 백분율

表 2-46 日本 및 美國의 아시아 4 個國으로부터의 밤의
輸入比重과 輸入對象國, 1980 ~ 86

수 입 국	평균수입량	수입비중	수입집중도	수 입 대 상 국 (XS _{ij})			
				한 국	대 만	중 공	북 한
일 본	1980 ~ 81	22,441	99.8	99	0.6	—	99.4 —
	1982 ~ 84	23,998	99.4	99	0.8	—	99.2 —
	1985 ~ 86	30,586	99.4	97	2.6	—	97.4 —
미 국	1980 ~ 81	41	0.2	100	—	—	100.0 —
	1982 ~ 84	137	0.6	71	48.2	—	51.8 —
	1985 ~ 86	180	0.6	74	66.1	—	33.9 —

* 수입집중도는 $\sqrt{\frac{4}{\sum_{i=1}^4} XS_{ij}^2}$ 이고 XS_{ij}는 j 국 총수입량에 대한 i 국으로 부터의 수입량의 백분율

表 2-47 日本 및 美國의 아시아 4 個國으로부터의 차의
輸入比重과 輸入對象國, 1980 ~ 86

수 입 국	평균수입량	수입비중	수입집중도	수 입 대 상 국 (XS _{ij})			
				한 국	대 만	중 공	북 한
일 본	1980 ~ 81	7,636	38.0	73	—	61.8	38.2 —
	1982 ~ 84	5,494	28.9	71	—	51.2	48.7 —
	1985 ~ 86	16,117	48.3	74	0.1	35.4	64.5 —
미 국	1980 ~ 81	12,471	62.0	75	—	32.7	67.3 —
	1982 ~ 84	13,542	71.1	73	—	37.2	62.8 —
	1985 ~ 86	17,249	51.7	89	0.4	11.2	88.4 —

* 수입집중도는 $\sqrt{\frac{4}{\sum_{i=1}^4} XS_{ij}^2}$ 이고 XS_{ij}는 j 국 총수입량에 대한 i 국으로 부터의 수입량의 백분율

表 2-48 日本 및 美國의 아시아 4個國으로부터의 조제버섯의
輸入比重과 輸入對象國, 1980 ~ 86

수 입 국	평균수입량	수입비중	수입집중도*	수 입 대 상 국 (XS_{ij})				
				한 국	대 만	중 공	북 한	
일 본	1980 ~ 81	11,023	21.8	69	5.6	35.1	59.2	0.1
	1982 ~ 84	13,438	22.1	80	1.0	21.3	77.6	0.1
	1985 ~ 86	15,928	22.9	85	0.2	16.0	83.8	—
미 국	1980 ~ 81	39,515	78.2	63	18.5	52.1	29.4	—
	1982 ~ 84	47,487	77.9	66	8.7	50.5	40.8	—
	1985 ~ 86	53,597	77.1	65	8.3	46.6	45.0	—

* 수입집중도는 $\sqrt{\sum_{i=1}^4 XS_{ij}^2}$ 이고 XS_{ij} 는 j 국 총수입량에 대한 j 국으로 부터의 수입량의 백분율

방여시 주로 日本에서 輸入하고 있으나 日本은 주로 中共으로부터 輸入하고 美國市場은 韓國, 中共이 兩分하여 占有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제버섯의 수출은 日本과 美國에서의 市場占有率이 臺灣과 더불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中共은 계속하여 占有率을 증가시키고 있다. 日本의 輸入比重은 미국과는 달리 미약하게 나마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表 2-43> ~ <表 2-48>을 통하여 다양한 細部資料를 제시하고 農林水產物의 國家間 貿易을 설명하였는데, 다음으로는 각 輸出國의 平均 輸出比重(Xs_i) 各 輸入國의 平均輸入比重(Ms_i), 그리고 총 무역량(Xoo)을 기초로 하여 輸出入國間의 貿易選好度($P_{ij} = X_{ij}/X_{ij}$)를 구하여 <表 2-49> ~ <表 2-54>에 정리하였다.

개의 貿易上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貿易選好度가 높은 반면 中共과의 무역선호도가 낮아 한국은 미국으로의 개수출에 무역환경상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日本의 韓國에 대한 貿易選好度가 낮아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한 貿易障壁이 상대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치의 경우에는 日本은 臺灣에 대하여 美國은 한국과 中共에 대하여 貿易選好度를 갖고 있으나 美國의 韓國에 대한 貿易選好度는 臺灣과 中共에 대한 것과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表 2-49 계의 貿易選好度의 變化, 1980 ~ 86

수출국	수입국	일 본	미 국
한 국	1980 ~ 81	0.929	1.494
	1982 ~ 84	0.796	1.861
	1985 ~ 86	0.695	2.550
대 만	1980 ~ 81	1.132	—
	1982 ~ 84	1.238	—
	1985 ~ 86	1.181	0.109
중 공	1980 ~ 81	1.134	0.098
	1982 ~ 84	1.196	0.163
	1985 ~ 86	1.156	0.205
북 한	1980 ~ 81	1.033	—
	1982 ~ 84	1.224	—
	1985 ~ 86	1.194	—

表 2-50 참치의 貿易選好度의 變化, 1980 ~ 86

수출국	수입국	일 본	미 국
한 국	1980 ~ 81	0.011	1.502
	1982 ~ 84	0.008	1.379
	1985 ~ 86	0.309	1.272
대 만	1980 ~ 81	1.585	0.704
	1982 ~ 84	1.267	0.897
	1985 ~ 86	1.035	0.987
중 공	1980 ~ 81	—	1.442
	1982 ~ 84	0.029	1.464
	1985 ~ 86	0.079	1.939
북 한	1980 ~ 81	—	—
	1982 ~ 84	—	—
	1985 ~ 85	—	—

밤의 경우에는 美國의 對韓國 貿易選好度가 매우 높은 편이나 日本의 對韓國 貿易選好度는 감소하였다.

茶의 貿易에서는 日本은 臺灣에 美國은 韓國과 中共에 높은 貿易選好를 갖고 있다. 조제버섯의 경우는 日本은 中共에 美國은 韓國과 臺灣에 각각 높은 貿易選好度를 갖고 있으며 日本의 對韓國 貿易選好度는 미국의 對韓國 選好

度와는 달리 감소하고 있으며, 日本의 北韓에 대한 무역선호도가 매우 높음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表 2-43> ~ <表 2-54>의 分析을 기초로 期間別 輸出競爭 4個國의 各商品別 輸出增大 또는 減少要因을 貿易量 增大效果 또는 世界市場規模의 增大效果, 輸出國의 競爭력改善效果, 輸入市場效果

表 2-51 生사의 貿易選好度의 變化, 1980 ~ 86

수출국	수입국	일본	미국
한국	1980 ~ 81	1.104	—
	1982 ~ 84	1.104	—
	1985 ~ 86	—	—
대만	1980 ~ 81	—	—
	1982 ~ 84	—	—
	1985 ~ 86	1.103	—
중공	1980 ~ 81	0.982	1.174
	1982 ~ 84	0.987	1.136
	1985 ~ 86	0.998	1.021
북한	1980 ~ 81	1.110	—
	1982 ~ 84	1.126	—
	1985 ~ 86	1.069	—

表 2-52 밤의 貿易選好度의 變化, 1980 ~ 86

수출국	수입국	일본	미국
한국	1980 ~ 81	0.958	—
	1982 ~ 84	0.747	41.431
	1985 ~ 86	0.864	21.488
대만	1980 ~ 81	—	—
	1982 ~ 84	—	—
	1985 ~ 86	—	—
중공	1980 ~ 81	1.000	0.917
	1982 ~ 84	1.003	0.496
	1985 ~ 86	1.004	0.341
북한	1980 ~ 81	—	—
	1982 ~ 84	—	—
	1985 ~ 86	—	—

表 2-53 차의 貿易選好度의 變化, 1980 ~ 86

수출국 \ 수입국		일 본	미 국
한 국	1980 ~ 81	0.873	1.070
	1982 ~ 84	3.636	—
	1985 ~ 86	0.310	1.372
대 만	1980 ~ 81	1.413	0.748
	1982 ~ 84	1.239	0.902
	1985 ~ 86	1.547	0.490
중 공	1980 ~ 81	0.679	1.198
	1982 ~ 84	0.829	1.070
	1985 ~ 86	0.840	1.151
북 한	1980 ~ 81	—	—
	1982 ~ 84	—	—
	1985 ~ 86	—	—

表 2-54 조제버섯의 貿易選好度의 變化, 1980 ~ 86

수출국 \ 수입국		일 본	미 국
한 국	1980 ~ 81	0.358	1.179
	1982 ~ 84	0.150	1.246
	1985 ~ 86	0.028	1.282
대 만	1980 ~ 81	0.725	1.077
	1982 ~ 84	0.481	1.147
	1985 ~ 86	0.405	1.177
중 공	1980 ~ 81	1.650	0.818
	1982 ~ 84	1.583	0.834
	1985 ~ 86	1.555	0.836
북 한	1980 ~ 81	5.447	—
	1982 ~ 84	5.570	—
	1985 ~ 86	—	—

그리고 輸出入國間의 貿易選好度의 變化效果로 나누어 정리한 것을 <表 2 - 55> ~ <表 2 - 60>에서 제시하였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나라 쟈의 輸出은 1980 / 81 년의 5,015 톤에서 1982 / 84 년 4,139 톤으로 876 톤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계무역량이 증대하고 각 輸入市場이 擴大되었으며 對韓國 貿易選好度도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체의 輸出競爭力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각 수출국에 있어서 구체적인 각 品目의 輸出增大要因은 모두 表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의 아밍톤과 레스너 · 트루만 模型에서 價格變數의 貿易에 대한 설명력 不足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하여 코넌드레스 · 허타도모형에서는 價格 以外에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간의 특수한 무역환경, 貿易障壁, 輸送問題 등을 綜合的으로 나타내는 貿易選好度를 計量的으로 구하여 제시하였다. 그 結果를 보면 國家間에는 貿易에 選好 내지는 편견이 존재함을 選好度係數가 1과 같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

다. 日本의 輸入政策

지금까지는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趨勢分析과 더불어 日本의 輸入에 영향을 주는 諸般要因 특히 價格變數의 영향력을 검토하고, 價格 以外의 非價格要因을 計量化하였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日本 輸入政策의 制度의 인측면을 살펴보자 한다.

日本의 輸入에 관한 기본적인 法令으로서는 「外國換 및 外國貿易管理法」 「輸入貿易管理法」 「關稅法」 등이 있다. 먼저 「外國換 및 外國貿易管理法」은 輸入을 規制하는 실질적인 법령으로써 「輸入貿易管理法」이 규정되어 있다. 「關稅法」에서는 관세평가, 긴급관세, 관세할당, 보복관세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保健 및 衛生에 관한 法律, 專賣品에 관한 法律, 自然保護에 관한 法律, 農產物에 관한 法律 등 特別法이 있다. 이와 같은 輸入制度에 관한 法令은 輸入管理令, 關稅定率法, 關稅暫定措置法을 기본으로 하여 그 目

表 2-55 期間別 輸出競爭 4個國의 계輸出増大 또는 減少要因

	무역량 증대효과	경쟁력개선	수입시장효과	무역선호도의 변화
한국 1980/81~1982/84	+	-	+	+
1982/84~1985/86	+	-	-	+
대만 1980/81~1982/84	+	+	-	+
1982/84~1985/86	+	+	+	-
중공 1980/81~1982/84	+	+	-	-
1982/84~1985/86	+	+	+	+
북한 1980/81~1982/84	+	-	+	-
1982/84~1985/86	+	+	+	-

表 2-56 期間別 輸出競爭 4個國의 참치 輸出増大 또는 減少要因

	무역량 증대효과	경쟁력개선	수입시장효과	무역선호도의 변화
한국 1980/81~1982/84	+	-	-	+
1982/84~1985/86	+	-	-	-
대만 1980/81~1982/84	+	+	+	-
1982/84~1985/86	+	+	+	+
중공 1980/81~1982/84	+	-	-	-
1982/84~1985/86	+	-	○	-
북한 1980/81~1982/84				
1982/84~1985/86				

表 2-57 期間別 輸出競爭 4個國의 생사 輸出増大 또는 減少要因

	무역량 증대효과	경쟁력개선	수입시장효과	무역선호도의 변화
한국 1980/81~1982/84	+	-	-	○
1982/84~1985/86	-	-	-	-
대만 1980/81~1982/84				
1982/84~1985/86	-	+	+	+
중공 1980/81~1982/84	+	+	+	+
1982/84~1985/86	-	+	-	-
북한 1980/81~1982/84	+	-	○	-
1982/84~1985/86	-	-	+	+

表 2-58 期間別 輸出競爭 4個國의 밤 輸出増大 또는 減少要因

	무역량 증대효과	경쟁력개선	수입시장효과	무역선호도의 변화
한국 1980/81 ~ 1982/84	+	+	+	-
1982/84 ~ 1985/86	+	+	○	-
대만 1980/81 ~ 1982/84				
1982/84 ~ 1985/86				
중공 1980/81 ~ 1982/84	+	-	-	-
1982/84 ~ 1985/86	+	-	○	+
북한 1980/81 ~ 1982/84				
1982/84 ~ 1985/86				

表 2-59 期間別 輸出競爭 4個國의 차 輸出増大 또는 減少要因

	무역량 증대효과	경쟁력개선	수입시장효과	무역선호도의 변화
한국 1980/81 ~ 1982/84	-	-	-	-
1982/84 ~ 1985/86	+	+	-	+
대만 1980/81 ~ 1982/84	-	-	+	+
1982/84 ~ 1985/86	+	-	-	-
중공 1980/81 ~ 1982/84	-	+	-	-
1982/84 ~ 1985/86	+	+	+	+
북한 1980/81 ~ 1982/84				
1982/84 ~ 1985/86				

表 2-60 期間別 輸出競爭 4個國의 조제버섯 輸出増大 또는 減少要因

	무역량 증대효과	경쟁력개선	수입시장효과	무역선호도의 변화
한국 1980/81 ~ 1982/84	+	-	+	-
1982/84 ~ 1985/86	+	-	-	-
대만 1980/81 ~ 1982/84	+	-	-	-
1982/84 ~ 1985/86	+	-	-	-
중공 1980/81 ~ 1982/84	+	+	+	-
1982/84 ~ 1985/86	+	+	+	-
북한 1980/81 ~ 1982/84	+	○	+	-
1982/84 ~ 1985/86				

의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法令들과 관련하여 기능하고 있다. 그 特徵은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關稅率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는 國定稅率과 國際間의 條約에 의한 協定稅率이 있는데, 國定稅率에는 基本稅率, 產業發達過程 또는 經濟變動 등 短期的 觀點에서 일시적으로 基本稅率로 대신하는 暫定稅率, 特惠稅率 등이 있다. 적용상의 우선순위(實行關稅)는 다음과 같다.

첫째, 協定稅率이 國定稅率보다 낮을 경우 協定稅率을 우선 적용하며, 둘째, 協定稅率보다 國定稅率이 낮은 경우 또는 協定稅率이 없는 경우 國定稅率을 적용하며, 세째 國定稅率中 暫定稅率이 基本稅率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네째 特惠稅率은 다른 稅率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 본 輸入制度를 바탕으로 선정된 品目の 關稅率과 輸入制度를 살펴보면 <表 2-61>과 같다. 대부분 品目の 實行關稅는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밤만이 16%의 高率로 적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낮추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各 品目の 輸入制度는 대구의 란, 오징어 등이 輸入割當(IQ) 品目이고 그외의 品目은 自動承認品目(AA)이다. 그러나 自動承認品目이라도 輸入의 승인 또는 輸入의 確認이 必要하다. 輸入의 승인은 輸入貿易管理令에 의해 輸入公表에 公表되고 있는 특정한 原產地 또는 船積地로부터 輸入되는 貨物에 대해 수입승인을 받을 의무가 주어진다. 輸入確認은 직접 輸入規制를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고 輸入의 감시, 國內特別法의 實效性確保, 輸入割當制 등의 補完 등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臺灣의 農林水產物 輸出 및 輸出支援政策

本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賦存資源의 賦存與件下에서 30억불 가까이 農林水產物을 수출하는 동시에 많은 品目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輸出競爭國인 臺灣의 輸出現況 및 商品構造, 市場構造 및 農業의 與件, 輸出制

表 2-61 選定된 品目の 關稅率 및 輸入制度

品 目	分 類 番 號	關 稅 率				輸 入 制 度
		기 본	협 정	감 정	특 혜	
대 구 의 란	0301-228	10%	6%	6%	5%	輸入割當制(IQ) ◇◎
	0301-237					
삼 치	0301-272	10	5	16	무세	自動承認(AA) ☆
	0303-211	10				" (AA) ◎
오 정 어	0303-212	10	7.5	5	무세	輸入割當制(IQ) ◎
	0303-213	10				自動承認(AA) ◎
표 고 버섯	0704-270	15	3	5	무세	" (AA)
	0805-100	20				" (AA)
생 사	5002-100	무세	7.5	16	무세	" (AA)
	-210~229	15				◇
녹 차	0902-221	무세	15	5	무세	" (AA)
백 삼	1207-972	10				" (AA) ☆
미 역	1208-332	15	3	5	무세	" (AA) ☆
참 치	0301-244~248	10				" ☆
연어, 송어	0301-271	10	5	5	무세	" (AA) ☆
돼 지 고 기	0201-210, 291	10				" (AA) (差額關稅制) 度
뱀 장 어	0301-241	10		5	무세	" (AA) ☆

* 輸入의 承認 { ◇ 輸入承認 : 原產地 또는 선적지역에 대한 輸入承認으로 通商產業大臣의 承認이 必要한 것.
 ◎ 特定輸入承認 : 항만내가 아닌 해면을 선적지역으로 하는 경우 魚貝類 등의 海產物輸入에 대해 承認이 必要한 것.

輸入의 確認 - ☆ 事業確認 : 特定貨物에 대해 事業에 정해진 確認이 必要한 것
 資料 : 通商產業調查會, 「現行輸入制度一覽」, 1987.

度와 輸出支援政策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擴大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가. 輸出現況 및 趨勢分析

臺灣의 農林水產物 輸出趨勢는 <表 2-62>와 같다. 1986년의 경우 農林水產物 총수출은 28억불로서 1次 農林水產物이 17억불, 加工 農林水產物의 輸出은 1972/73兩年對比 1985/86년 增加率은 423%로 크게 증가

表 2-62 臺灣의 農林水產物 輸出趨勢

單位：百萬\$

區分 年度	1 次 農林水產物	加 工 農林水產物	農林水產物 計	總 輸 出	① / ③	③ / ④
1972	① 146.3	② 343.9	③ 490.2	④ 2,988	% 29.84	% 16.41
1973	265.3	416.2	681.5	4,483	38.93	15.20
1974	191.9	648.5	840.4	5,639	22.83	14.90
1975	281.6	627.2	908.8	5,309	30.99	17.12
1976	402.5	668.0	1,070.5	8,166	37.60	13.11
1977	506.7	705.4	1,212.1	9,361	41.80	12.95
1978	619.9	809.3	1,429.2	12,687	43.37	11.27
1979	670.4	939.8	1,610.2	16,103	41.63	10.00
1980	695.3	1,181.2	1,876.5	19,811	37.05	9.47
1981	859.9	1,096.2	1,956.1	22,611	43.96	8.65
1982	813.6	1,045.9	1,859.5	22,240	43.75	7.36
1983	1,006.6	928.8	1,935.4	25,117	52.01	7.71
1984	1,077.0	983.2	2,060.2	30,431	52.28	6.77
1985	1,143.8	964.1	2,107.8	-	54.24	-
1986	1,708.6	1,139.2	2,847.8	39,226	59.98	7.26

資料：臺灣 農林水產貿易統計要覽。

하였다.

한편, 臺灣의 主要 輸出農林水產物은 生產技術, 國內外市場需要, 國際市場의 競爭力 등의 變動에 따라 品目構造에 약간의 变동을 보이고 있다. 初期에는 工業發達로 인해 農產物 및 그 加加工品이 農業의 重要位置를 차지해 왔고 外貨獲得의 主要 원천이었다. 대체로 1950년까지는 설탕과 米穀이 生產과 輸出에 主要品目이었다. 그후 國際競爭力を 갖춘 양송이, 아스파라가스 등의 戰略輸出品目을 開發하고 加工技術의 開發研究 및 產業組織의 強化(1961년 통조림협회 1963년 양송이·아스파라가스 輸出共同會社設立) 計劃生產, 保證價格收買方式 등의 채택으로 설탕, 米穀의 輸出為主에서 과일·채소통조림 輸出로 전환하였다. 특히, 比較優位가 있는 양송이, 아스파라가스, 파인애플, 채소류 등을 재배하기 위해 耕地利用率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品種改良, 投入要素의 改良(肥料, 農藥, 農機械), 관개 시설 등의 農業現代化가 推進되었다.

그러나 臺灣의 農產物輸出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農產物이 臺

灣의 뛰어난 自然條件에 의해 天然的으로 國際競爭力を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賃金, 가까이에 南北貿易의 대상국인 日本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農產物 貿易形態가 장기간동안 臺灣의 農產物 貿易構造를支配하였으나 제3國의 競爭對象國의 登場, 賃金引上 등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에는 바나나 등의 輸出이 감소하였으나 아스파라가스, 양송이, 파인애플 등은 生產·流通을 통제하여 市場需給不均衡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과일, 채소통조림 및 그 加加工品은 1970년대에 계속하여 상당한 輸出比重을 차지하였다.

1980년에 들어 통조림류의 國際市場의 競爭增加와 換率變動 등으로 인한 輸出不振과 原料 및 빙캔의 供給價格이 보편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競爭能力을 상실하고 있다.

한편 1970년대 漁業生產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양식어업의 뱀장어와 갑각류 그리고 원양어업의 다랑어류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水產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2년 12%에서 1986년에는 32%로 높아졌다. 최근 人件費上昇 등으로 원양어업의 선박가동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養殖漁業을 強化시키고 있다.

한편 農林水產物 수출중 1次農林水產物 輸出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1972/73년 평균 34%에서 1985/86년에는 평균 5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본 바와 같이 1975년까지만 해도 설탕, 바나나, 목재, 양송이통조림, 아스파라가스통조림등 天然的으로 比較優位가 있는 통조림류의 品目이었으나 1980년이후 水產物의 輸出伸張率이 급속히 증가하고 1982/83년 日本 豚肉市場에서 덴마크產 豚肉輸入禁止措置를 계기로 돼지고기의 輸出伸張率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1次農產物의比重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表 2-63>, <表 2-64>. 또한 竹製品·과일통조림, 水產加工品등 加工農林水產物의 輸出도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증가하고 있다.

한편, 臺灣의 農林水產物의 國別 輸出을 보면 <表 2-65>에서처럼 역사적, 地理的 關係로 인해 50%내외가 日本으로 10~15%가 미국으로

表 2-63 臺灣의 主要 輸出農林水產物

輸出順 期間	1	2	3	4	5	輸出 總計	總農水產 物에 서의 比重
1961~65	雪 糖	바 나 나	쌀	파인애 푸 통조림	양송이버섯 통조림	827.2	85.56
1966~70	雪 糖	바 나 나	양송이버섯 통조림	아스파라가 스통조림	木 材	832.8	59.87
1971~75	雪 糖	水 產 品	아스파라가 스통조림	木 材	양송이버섯 통조림	2,073.3	62.86
1976~80	水 產 品	菜蔬加工品	雪 糖	아스파라가 스통조림	果實加工品	4,131.5	57.39
1981	水 產 品	菜蔬加工品	水產加工品	雪 糖	果實加工品	1,134.3	57.99
1982	水 產 品	菜蔬加工品	水產加工品	果實加工品	雪 糖 및 기타조제품	993.6	53.43
1983	水 產 品	菜蔬加工品	水產加工品	果實加工品	豚毛및豚肉	1,089.1	56.27
1984	水 產 品	菜蔬加工品	豚毛및豚肉	水產加工品	果實加工品	1,168.5	56.72
1985	水 產 品	豚毛및豚肉	水產加工品	菜蔬加工品	果實加工品	1,354.8	64.27
1986	水 產 品	豚毛및豚肉	竹 製 品	죽순통조림	果實加工品	1,921.0	67.45

資料 : 臺灣 農產貿易統計要覽 .

2 ~ 6 %가 한국으로, 6 ~ 13 %가 EC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輸出市場의 偏重現象을 보이고 있다.

國別 品目別로 細分하여 정리한 것이 <表 2-66> <表 2-67> <表 2-68>이다. <表 2-66>에서 보면 일본으로의 輸出主宗品은 1970년의 경우 바나나(23%), 木材(21%), 水產品(11%), 설탕(10%)의 순에서 1984년의 경우 水產品(26%), 豚肉(16%), 水產加工品(10%), 菜蔬加工品(10%), 깃털(8%)의 순으로 그 비중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水產物과 豚肉은 근래에 와서 對日 총 農林水產物 輸出에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對美輸出은 <表 2-67>에서처럼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水產物이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1984년의 경우 主要 輸出品목은 水產品(21%), 양송이통조림(16%), 菜蔬加工品(13%), 水產加工品(10%)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對 EC 地域 輸出은 <表 2-68>에서처럼 1980年以後 감소추세인데 이는 양송이통조림, 아스파라가스통조림등 加工農產品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

表 2-64 臺灣의 輸出 農林水產物의 構成

單位: 1,000\$, %

品 目 區 分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金額	比重										
1 次 農 產 物	859,911	43.96	813,571	43.75	1,006,517	52.01	1,077,024	52.28	1,143,779	54.26	1,708,634	60.00
바 나 나	25,070	1.28	39,074	2.10	32,978	1.70	40,547	1.97	42,887	2.03	35,014	1.23
파 인 애 플	451	0.02	500	0.03	285	0.01	121	0.01	377	0.02	2,794	0.10
切 花 및 花 種	-	-	-	-	3,247	0.17	4,035	0.20	4,314	0.20	3,725	0.13
돼 지 고 기	75,155	3.84	70,622	3.80	118,760	6.14	175,303	8.51	238,561	11.32	393,013	13.80
水 產 品	475,736	24.32	383,170	20.61	495,312	25.59	513,214	24.91	584,175	27.71	913,376	32.07
加 工 農 產 物	1,096,179	56.04	1,045,949	56.25	928,832	47.99	983,221	47.72	964,082	45.74	1,139,170	40.00
雪 糖 및 其他調製品	144,219	7.37	104,025	5.59	46,505	2.40	36,035	1.75	35,426	1.68	39,073	1.37
果 實 加 工 品	143,906	7.36	129,890	6.99	124,235	6.42	120,582	5.85	107,437	5.10	118,070	4.15
양 송 이 통 조 립	52,583	2.69	64,760	3.48	62,075	3.21	69,450	3.37	50,283	2.39	64,529	2.27
아스파라가스통조림	108,632	5.55	90,674	4.88	61,895	3.20	59,156	2.87	35,557	1.69	46,530	1.63
其他 菜 蔬 調 製 品	186,618	9.54	208,374	11.21	157,876	8.16	189,938	9.22	195,734	9.29	186	0.01
木 材	58,780	3.00	47,656	2.56	51,196	2.65	54,381	2.64	48,466	2.30	81,026	2.85
竹 製 品	75,571	3.76	70,065	3.77	70,576	3.65	69,557	3.38	64,751	3.07	256,707	9.01
水 產 加 工 品	150,749	7.71	171,801	9.24	170,143	8.79	169,509	8.23	228,879	10.86	4,978	0.17
總 輸 出	1,956,090	100.00	1,859,520	100.00	1,935,349	100.00	2,060,245	100.00	2,107,861	100.00	2,847,804	100.00

表 2-65 臺灣의 農林水產物 國家別 輸出

年 度 區分	國 家 別 輸 出 比 率 (%)					
	日 本	美 國	韓 國	E C	其 他	計
1961	41.41	22.85	0.86	9.07	25.81	100
1970	40.33	17.82	7.08	20.13	14.64	100
1973	50.69	13.00	6.39	14.25	15.67	100
1974	39.56	14.64	16.86	13.45	15.49	100
1975	39.49	16.53	10.14	12.05	21.79	100
1976	49.36	12.55	3.44	13.38	21.27	100
1977	46.68	13.57	3.44	11.06	25.25	100
1978	46.12	10.59	3.68	13.50	26.11	100
1979	47.58	10.40	4.10	10.90	27.02	100
1980	44.47	10.40	6.72	11.65	26.76	100
1981	46.91	10.92	6.12	9.95	26.10	100
1982	49.32	12.81	3.04	8.47	26.36	100
1983	49.56	15.21	2.23	6.36	26.64	100
1984	53.20	16.00	1.90	5.70	23.20	100

資料：臺灣 農產貿易統計要覽。

기 때 문이다. 輸出 主要品目의 변화를 보면 양송이통조림, 아스파라가스통조림, 파인애플통조림의 수출이 부진해지고 輸出品目이 좀더 多樣해짐에 따라 1970년 아스파라가스통조림(44%), 양송이통조림(28%), 파인애플통조림(10%)에서 1984년에는 아스파라가스통조림(33%), 菜蔬加工品(20%), 水產加工品(10%), 기타조제과실(4%) 등으로 바뀌었다.

끝으로 1984년 대만의 20大主要輸出 農林水產物과 輸出對象國을 보면 <表 2-69>와 같다. 이를 品目別로 보면 돼지고기, 장어, 깃털, 새우, 양송이통조림, 아스파라가스통조림 등의 순이고 대부분의 品目이 日本, 美國으로 輸出市場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66 臺灣의 對日本 輸出 農林水產物 商品構成

單位: 1,000\$, %

輸出項目	1980		1981		1982		1983		1984	
	金額	比重	金額	比重	金額	比重	金額	比重	金額	比重
1 次 農 產 物	335,626	40.22	469,849	51.20	442,929	48.30	544,580	56.78	652,814	59.62
菜 蔬	20,367	2.44	35,974	3.92	37,907	4.13	15,501	1.62	26,033	2.38
果 實	25,540	3.06	26,923	2.93	39,958	4.36	31,549	3.29	42,301	3.86
羽 毛	16,645	1.99	54,237	5.91	55,391	6.04	75,961	7.92	85,649	7.82
豚毛暨豚肉	55,977	6.71	74,126	8.08	69,094	7.53	117,387	12.24	173,662	15.86
水 產 品	179,724	21.54	238,094	25.95	202,809	22.12	264,473	27.57	284,030	25.94
加工農產物	498,869	59.78	447,758	48.80	474,130	51.70	414,585	43.22	442,107	40.38
其他調製果實	55,530	6.65	50,817	5.54	45,475	4.96	47,735	4.98	55,781	5.09
죽순통조림	--	-	20,148	2.20	20,063	2.19	17,665	1.84	17,004	1.55
其他調製菜蔬	105,250	12.61	92,742	10.11	114,607	12.50	92,900	9.69	106,297	9.71
木 材	59,609	7.14	48,817	5.32	39,757	4.34	36,725	3.83	33,651	3.07
竹 製 品	6,525	0.78	34,609	3.77	32,953	3.59	31,934	3.33	31,248	2.85
水產加工品	97,336	11.66	86,219	9.40	124,227	13.55	111,446	11.62	112,665	10.29
合 計	834,495	100.00	917,607	100.00	917,059	100.00	959,165	100.00	1,094,921	100.00

表 2-67 臺灣의 對美國 輸出 農林水產物 商品構成

單位 : 1,000\$, %

輸出項目	1980		1981		1982		1983		1984	
	金額	比重								
水產品	24,286	12.44	30,936	14.48	39,520	16.59	71,334	24.24	70,425	21.36
雪糖及其他調製品	300	0.15	470	0.22	15,965	6.70	13,824	4.70	14,816	4.49
茶	3,025	1.55	4,454	2.08	3,909	1.64	4,319	1.47	7,453	2.26
파인애플통조림	7,614	3.90	1,562	0.73	1,123	0.47	428	0.15	451	0.14
其他調製果實	16,192	8.29	24,361	11.40	29,615	12.43	20,810	7.07	14,886	4.51
양송이통조림	49,086	25.14	20,397	9.55	31,641	13.28	39,155	13.31	51,511	15.62
아스파라가스통조림	5,379	2.76	2,576	1.21	3,038	1.28	2,622	0.89	4,826	1.46
죽순통조림	—	—	15,814	7.40	10,669	4.48	13,018	4.42	12,721	3.86
其他調製菜蔬	33,264	17.04	27,617	12.93	30,618	12.86	35,250	11.98	43,489	13.19
木材	3,324	1.70	6,184	2.89	3,571	1.50	5,820	1.98	7,388	2.24
竹製品	877	0.45	21,736	10.17	20,518	8.61	25,321	8.60	26,373	8.00
水產加工品	30,319	15.53	28,682	13.43	22,174	9.31	31,403	10.67	33,100	10.04
合計	195,216	100.00	213,634	100.00	238,172	100.00	294,285	100.00	329,747	100.00

第2-68 臺灣의 對 EC 輸出農林水產物 商品構成

單位 : 1,000 \$, %

輸出項目	1980		1981		1982		1983		1984	
	金額	比重								
1 次 農 產 品	24,003	10.97	28,300	14.52	26,593	16.88	22,651	18.41	23,266	19.67
羽 毛	8,842	4.04	5,206	2.67	3,458	2.20	2,753	2.24	2,816	2.38
水 產 品	8,230	3.76	4,818	2.47	4,247	2.70	3,594	2.92	1,909	1.61
葉 煙 草	2,095	0.96	3,900	2.00	3,269	2.08	1,876	1.52	1,504	1.27
加 工 農 產 物	194,710	89.03	166,622	85.48	130,946	83.12	100,404	81.59	95,015	80.33
茶	1,023	0.47	806	0.41	1,308	0.83	922	0.75	1,300	1.10
其 他 調 製 果 實	7,760	3.55	5,706	2.93	4,201	2.67	4,476	3.64	4,935	4.17
양 송 이 통 조 립	10,926	5.00	6,478	3.32	3,674	2.33	1,875	1.52	525	0.44
아스파라가스통조립	111,860	51.14	90,093	46.22	69,776	44.29	48,685	39.56	38,534	32.58
죽 순 통 조 립	...	-	5,029	2.58	4,622	2.93	4,013	3.26	4,549	3.85
其 他 調 製 菜 蔬	29,404	13.44	25,411	13.04	22,535	14.30	22,052	17.92	23,434	19.81
薄 荷 呃 樟 腦	342	0.16	1,680	0.86	1,606	1.02	1,163	0.95	1,491	1.26
竹 製 品	500	0.23	5,756	2.95	5,073	3.22	4,161	3.38	3,788	3.20
水 產 加 工 品	28,845	13.19	21,963	11.27	13,550	8.60	9,342	7.59	11,622	9.83
合 计	218,713	100.00	194,922	100.00	157,539	100.00	123,055	100.00	118,281	100.00

表 2-69 臺灣의 20大主要輸出 農林水產物과 輸出對象國, 1984

順序	品目	輸出額 (1,000 \$)	總農林 水產物輸出 에서의比重	輸出對象國			
				國家	百分比	國家	百分比
1	냉동돼지고기	155,311.1	7.54	日本	99.47	류구島	0.36
2	장어(신선, 냉동)	107,174.2	5.20	日本	95.21	류구島	2.47
3	羽毛	94,906.5	4.61	日本	90.26	美國	4.35
4	새우	90,153.4	4.38	日本	82.07	美國	16.66
5	양송이통조림	69,450.4	3.37	美國	74.17	스웨덴	5.50
6	아스파라가스통조림	59,155.6	2.87	서독	35.73	프랑스	11.87
7	구어서 냉동한 장어	58,558.2	2.84	日本	99.59	류구島	0.34
8	간새우	58,149.0	2.82	美國	53.7	日本	30.12
9	토마토 페이스트	43,203.4	2.10	日本	73.44	美國	7.96
10	바나나	40,546.7	1.97	日本	99.84	홍콩	0.10
11	쌀	39,086.5	1.90	인도네시아	72.62	말레이지아	25.35
12	조제된 장어	38,082.8	1.85	日本	95.89	美國	3.94
13	죽순통조림	38,048.3	1.85	日本	44.69	美國	33.43
14	참치(신선 혹은 냉장)	36,852.9	1.79	日本	90.32	美國	9.45
15	참치통조림	33,402.7	1.62	美國	66.39	서독	12.9
16	참새우	32,186.1	1.56	日本	79.57	美國	13.76
17	羊毛	28,071.3	1.36	日本	78.96	韓國	16.83
18	냉동식용 대두	24,614.0	1.19	日本	98.98	美國	0.37
19	원당	22,930.5	1.11	美國	59.99	日本	21.44
20	자두	22,632.8	1.10	日本	92.93	美國	2.99

나. 農林水產物 輸出擴大上의 問題點과 對應政策

① 全般的인 問題點

臺灣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經濟成長과 工業發展으로 勞動力이 不足해짐과 아울러 農村人口의 都市로의 移動으로 인하여 農村에서의 賃金水準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勞動集約的인 農林水產物의 生產과 輸出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아직도 工產品의 生產 및 輸出과는 달리 農民이 輸出商品生產時 商品의 規格, 品質, 栽培管理 등에 소홀히 하고 加工段階에서는 生產技術의 未洽으로 加工損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높은 人件費, 生產管理소홀 그리고 높은 加工損失은 모두 生產原價를 높이고 國際競爭力を 弱化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原資材의 市場價格이 국내의 生產與件에 따라 심한 不安定을 보이고 있으므로 國際競爭력의 向上이나 지속적인 輸出增大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臺灣의 農林水產物 輸出業者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大規模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研究開發投資에 대한 의욕이 없으며 따라서 企業體質改善이 어려워 經營管理의 效率化와 新製品의 開發에 의한 輸出增大를 위해서는 輸出業體의 大規模화와 政府의 輸出業體支援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의 統計資料에서와 같이 臺灣의 輸出市場은 日本, 美國으로偏重化되어 있어 輸出市場이 多邊化되어 있을 경우보다 輸出可能商品의 範圍가 협소하고 輸入國의 國內生產, 經濟狀況 貿易政策의 變動에 따라 輸出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農林水產物 生產과 輸出時 一般的으로 봉착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加工하여 輸出되는 農林水產物은 季節的 生產으로 洪水出荷와 一時收買를 해야 하나 販賣는 年中 實施되므로 輸出業體의 높은 收買費用, 倉庫費用은 原價를 壓迫하고 있어 이에 대한 金融支援問題를 안고 있다.

② 輸出增大를 위한 對應政策

우선 臺灣政府는 輸出 農林水產物의 生產原價를 節減하기 위하여 勞動節約的인 栽培技術을 도입하고 農業의 適地栽培의 추진과 아울러 專門 原料地域制度를 實施하여 原資材의 生產原價節減에 努力하고 있다. 또한, 輸出商社의 大規模화와 經營管理強化 그리고 機械化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品質改善과 연구개발로 附加價值가 높은 新商品의 輸出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流通段階의 原價負擔을 덜기 위해서 農產物 輸出情勢의 變化에 對處한 集荷, 流通의 機能을 檢討하고 改善할 계획이다. 그리고 輸出市場이 偏重되고 輸出業者間의 과당수출경쟁과 덤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新市場開拓과 특히 對日本 輸出依存度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제한된 農業資源의 充分한 利用과 農民收益의 保障, 農產物 輸出秩序의 維持를 위해 政府가 各種 農產物의 生產, 流通, 特性 혹은 條件에 따라 관리할 目的으로 計劃生產 및 流通制度를 實施하고 있다.

먼저 各種 農產物의 生產과 流通을 지도 관리하는 計劃生產·流通制度가 있고 生產·加工 혹은 生產·流通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고 約定에 의해 原料를 收買·加工하거나 혹은 商品을 收買·輸出하는 契作契約制度가 있다.

또한 市場需要量을 감안하여 輸出量, 輸出時期 등을 조절 안배하는 輸出調節方法을 사용하고 있으며 業者團體 스스로 輸出基本價格을 설정하고 이價格以下로 輸出하려는 貿易業者에 대해선 輸出許可를 금지하는 輸出基本價格制定方法이 있다.

以上의 臺灣 輸出農產物 生產·流通制度의 長短點 및 該當品目, 改善點을 정리한 것이 <表2-70>이다.

또 한편으로는 海外市場에 관한 情報와 資料를 적극적으로 廉集하고 分析하여 新市場, 新商品의 開發에 도움이 되게 하며 政府와 수출업자와의 合同으로 輸出農產物의 무역장벽해소에 힘쓸 複案을 마련중이다. 마지막으로 臺灣政府는 加工 農林水產物에 대한 輸出支援金을 확대 지급하고 設備更新에 대한 政策的 融資方法을 模索中이다.

表 2-70 臺灣 輸出農產品의 生產 및 流通制度

制 度	主 要 内 容	該 當 品 目	長 点	短 点	評 價 및 改 善 方 向
計劃生產 및 流通制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種 農產物의 生產과 流通을 指導·管理 • 生產과 流通의 秩序確立 • 農民의 所得保障 • 聯合輸出 • 計劃生產 • 保證價格實施 • 統一收買 및 安定基金 設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송이 • 아스파라가스 • 죽순 • 통조림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計劃生產 및 輸出로 生產 및 流通秩序 安定 • 計劃生產과 聯合輸出로 商品의 種類·形態·品質 등을 수입상 요구에 부합, 商品在庫壓力을 줄임 • 聯合輸出組織이 集團保證을 할 수 있어 各 工場의 融資貸付가 容易하여 制度運營의 效率性提高 • 聯合輸出組織의 發展基金으로 人材確保, 對外交涉力增進, 宣傳廣告 및 情報蒐集, 研究開發業務推進可能, 農民도 輸出利潤의 惠擇 • 聯合輸出을 通해 比較的 유리하게 外國輸入商과 長期輸出契約 締結 • 聯合輸出은 業者間의 단결·協調를 助長, 需給均衡과 統一價格을 고시하여 과당경쟁을 防止하고 교제비용을 줄여 輸出利潤을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在의 利潤의 維持를 위해 보수적, 市場擴大가 容易하지 않다. • 聯合輸出은 販賣價格均等으로 品質이 一般水準을 維持할 뿐 改善의 진보가 어렵다. • 統一價格設定으로 輸出價格이 市場競爭變化에 適應이 느리고 즉각적인 調整이 不可能하다. • 既存市場에 輸出이 集中되어 新市場 開發 결여 	<p>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더욱 완전하고 수출 경쟁력을 提高를 위한 改善方案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原料收買價格의 신축성 부여 • 研究開發과 生產性提高 및 品質向上 • 情報蒐集 能力強化 • 貿易商에 대한 輸出獎勵措置 強化 • 入材育成과 新市場의 開拓

制 度	主 要 内 容	該 當 品 目	長 点	短 点	評 價 및 改 善 方 向
契作·契約制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生産·加工 혹은 生産·流通 쌍방이 契約을 締結하고 契約에 따라 原料를 收買·加工하거나 혹은 收買·輸出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契作品目 : 냉동 풋대두, 냉동 양송이 契約品目 : 마늘, 꿀 	<ul style="list-style-type: none"> 本制度 實施後 農民은 工業部門으로부터 生產資金의 援助 또는 保證金을 받음으로써 收買를 保證받음 加工工場·貿易商은原料供給으로 輸出의 安定性確保, 輸出秩序의 定立, 輸出市場開拓에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收買價格決定時 이전으로 政府가介入함으로써 약자인 농민입장을擁護하게 되고 그 결과 市場市勢와 연관이 없어 輸出擴張이 어렵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政府는 契約 쌍방간의 契約履行指導에重點을 두고 收買價格協商에 대해 自發的決定을誘導하고 政府關與를最少化
輸出調節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輸出協會에서 會員의 輸出時期數量을 확인한 후 市場需要量을 超過할 경우 輸出量·時期를 調節 	<ul style="list-style-type: none"> 生 花 신선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輸出의 集中을 피하고 市勢를 安定하게 하여 輸出秩序가 양호하고 또한 協會의 自發的協調로 業者間의 단결을 촉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간의 貿易商들이 會費納付를 피하기 위해 協會에 加入하지 않아 가끔 市場을 교란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輸出成果는 상당히 良好함 비록 輸出秩序는 좋지 않으나健全한 協會를組織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制度를擴大 實施함도考慮
輸出基本價格制度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業者 스스로 輸出基本價格을 設定하고 그 以下價格으로 輸出을 못하도록 規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동어류 對日輸出品目으로 누에고치, 紅糖 對歐美輸出品目으로 加工쨈장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당경쟁의 방지에 타월한效果가 있다. 특히 買賣 쌍방간의 거리가 먼 歐美地域과의 輸出에서 그效果가 더욱 현저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部 輸出業者와 輸入商間의 結託으로 表面上 基本價格으로 輸出申請을 하고 實際로는 基本價格以下로 輸出하는事例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過去 輸出基本價格을 設定한 品目이 많았으나 그 후一部分은 效能喪失로取消 앞으로의 繼續 實施與否는 業者的 誠意, 協力狀況에 따라 決定될 것임

資料：江內坤，“臺灣 輸出農產品의 產銷(生産·流通)制度의 檢討”，臺灣 農產貿易問題研討會，1985. 11.

③ 臺灣의 對 日本 農林水產物 輸出上의 問題點 및 輸出增大量 위한 輸出入業者의 要望事項

위에서는 臺灣의 農林水產物 輸出上의 問題點과 그에 대한 臺灣政府의 對應政策을 약술하였는데 다음에는 臺灣의 主要輸出市場인 日本으로의 農林水產物 수출시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최근 臺灣政府에서 臺灣 및 日本輸出入商社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바 그에 따른 農林水產物 輸出入上의 隘路點과 問題點 그리고 전의사항을 要約한 것이다. 이와 같은 具體的인 인터뷰내용은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增大에 많은 示唆點을 줄 것이다.

가) 日本 輸出業者의 臺灣政府에 대한 要求事項

- 輸出認定工場의 設立, 品質檢查管理의 철저, 輸出檢查規定의 制定
- 輸出쿼타의 폐지 및 植物檢查의 簡易化
- 供給獨占에 의한 價格造作防止 및 價格安定化
- 運輸, 船舶의 增加 및 항만부두설비의 改善
- 輸出業者가 計劃的으로 出荷, 輸出하도록 指導하고 工場의 衛生檢查를 強化

나) 日本 輸入業者의 日本政府에 대한 要求事項

- 輸入關稅率의 引下와 優待特惠關稅 對象品目的 擴大, 輸入쿼타폐지
- 植物檢查, 輸入手續 등의 緩和 및 簡易化

다) 臺灣 輸出業者의 臺灣政府에 대한 要求事項

- 臺灣 항구도시인 高雄에 國際貿易事務所를 設置하고 輸出手續을 最大限으로 간략하게 (양식용 새끼뱀장어)
- 原料收買에 대한 金融支援, 低利子 貸付등 輸出支援金融을 擴大하고 換率의 不安定에 의한 不利益의 초래 방지
 - 輸出源資材에 대한 輸入關稅引下 및 從量課稅制의 채택
 - 수출돼지, 돼지고기의 計劃生產, 流通을 實施하고 輸出供給方法을 統一함, 도축세를 경감하여 原價節下
 - 輸出檢查手續을 簡易化하여 수출지연을 방지하고 一定水準以上

의 工場에 對해서는 自體的으로 檢査할 권리를 부여

— 最低 輸出價格의 設定으로 과당경쟁을 防止하고 業者로 하여 금團體를 조직하여 輸出價格을 管理

— 냉동선 및 냉동콘테이너 規模의 擴大, 農產物은 工產品과 分離하여 輸送함으로써 品質維持

라) 臺灣 輸出業者の 日本政府에 대 한 要求事項

— 貨物引受手續의 緩和, 24 시간 365 日 전천후 통관제도의 確立

— 輸入쿼터제도의 철폐

— 臺灣에 關係人員을 파견하여 檢査 測定케 하여 여러가지의 방역 제한을 事前에 실시

— 商品價格을 보다 合理的으로 決定되게 하며 日本業者が 不當하게 價格引下를 要求하지 못하게 함

— 전세비행기의 數量을 增加하고 貨物傳貿輸送機의 日本着陸權을 완화

第 3 章

우리나라의 農產物輸入과 關聯된 主要國의 輸出入政策

1. 美國의 農業 및 農產物輸出政策

目下 우리나라は 工業爲主의 輸出主導에 의한 經濟發展으로 말미암은 不均衡 成長과 經濟의 二重構造에 대한 모순이 활발히 論議되는 한편으로는 農業의 位相定立과 轉換期의 構造調整에 대한 充分한 考慮의 겨를도 없이 對內的으로는 輸入開放 특히 農產物市場開放의 여론이 형성되고 外部의 으로는 그 壓力を 받고 있다. 이와 같은 輸入開放壓力은 世界各國의 比較 優位의 經濟原理에 의하여 모든 나라가 暗默的으로 國富를 極大化시키려는 經濟의 內在的인 要因에 의하여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특히 貿易障壁이 极심한 農產物貿易의 경우에는 價格의 시그널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계 각국의 農業保護政策의 跛行的 結果를 農產物輸入國에 轉稼함에서 유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農產物貿易 또는 農產物 輸入開放壓力에 대한 문제파악에 앞서서 農產物輸出大國의 農業政策을 分析해 봄이 무엇보다 先行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對應戰略도 차질이 없고 明確해 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세계 제 1의 農產物 輸出大國이며 우리나라 農產物輸入에 있

어서의 第1 輸入先인 美國의 國內農業事情의 變化, 그리고 그에 대한 政策的 對應을 검토함과 아울러 美國의 農業政策變化를 초래한 世界農產物市場의 推移를 함께 考察하여 農產物 輸入開放壓力의 기본적 흐름의 理解에 一助가 되고자 한다.

가. 美國 農業政策의 概要

① 背 景

美國의 農業政策의 樹立과 施行過程은 經濟的인 目的과 政治的인 目的으로 區分하여 理解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Gardner 1982)고 하는데 經濟的인 政策介入의 目的是 나라 全體의 富를 極大化시킴에 있고 政治的인 政策介入의 目的是 選舉區民의 投票를 의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相異한 目的下에서의 政策介入은 반드시 調和와 一致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大部分 갈등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美國의 農業政策은 經濟的으로 非效率의이라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美國政府로 하여금 農民에게 有利한 方向으로立法를 하고 農業 및 農產物 市場에 政策的으로 介入하게 되는 根據는 人口는 적지만 2명씩의 上院議席을 차지하는 農業을 根幹으로 하는 州들의 政治力과 그를 바탕으로 한 議會 農業分科委員會의 막강한 힘의 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요 한 것은 農業保護政策에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 기본적인 認識이 政街는 물론 일반국민간에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로서는 農民은 經濟的으로 가장 곤란을 당하고 있으며 그대로 放置한다면 破產의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이다. 둘째로는 農民은 生產要素의 購入이나 生產物의 販賣에 있어서 相對的으로 不利한 位置에 있기 때문에 價格支持나 交涉能力 (bargaining power)의 提高를 통해서 所得이 保障되어야 한다는 理論이며 마지막으로는 政府의 介入이 없는 狀態下에서는 農產物市場은 极심한 不安定性이 示顯되어 生產者는 물론이고 消費者에까지 不利益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② 農業政策과 政策手段의 變遷

美國의 農業政策은 1862年 自作農場法(Homestead Act, 1862)를 필두로 生產調節보다는 增產이 主要 政策目標이었다. 그러나 20世紀初半까지의 增產一邊倒의 農業政策은 恐慌, 世界大戰, 穀物波動을 거치면서 過剩生產이 이루어져 農家所得의 保護와 生產調節을 위한 政策이 同時에 必要하게 되었다. 最初의 價格支持는 1929年 聯邦農業委員會(Federal Farm Board)에 의하여 施行되었으나 剩餘農產物 購買로 인한 財源의 枯渴로 인하여 1933年 商品信用會社(Commodity Credit Corporation)가 發足되고 無償還請求權貸付制度(Non · Recourse Loan Program), 直接購買(Direct Commodity Purchases)(牛乳의 價格支持를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 耕地配定(Acreage Allotments)(현재는 땅콩과 담배에 적용), 市販券타제도(Marketing Quotas)등의 政策이 遂行되었다.

1950年代中半(韓國戰後)에 生產調節의 必要性이 더욱 高潮되자 1956年的 農業法(Agricultural Act of 1956)에서는 農民이 耕地를 休耕하면 政府가 補償해 주는 土地銀行制度(Soil Bank)를 施行하였으며, 1970年的 農業法(Agricultural Act of 1970)에서는 貸付率등 여러 가지 農業政策의 惠擇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政府에서 告示하는 만큼의 耕地를 休耕시켜야 한다는 耕地減縮(Set Aside)制度를 적용하였다.

1970年代中後半에 들어와서는 農民에게는 어느정도의 價格은 保障해 주고 消費者에게는 市場의 需給事情에 따라 價格을 設定하고 그 差額을 政府가 支拂하는 不足拂制度(Deficiency Payment)를 도입함과 아울러 市場價格의 安定과 國內外 市場에 供給量을 彈力的으로 確保하기 위하여 農民所有在庫制度(Farmer Owned Reserve : FOR)를 導入하였다 <각각 1973年的 農業 및 消費者保護法(Agricultural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73)과 1977年 食糧 및 農業法(Food and Agriculture Act of 1977)에 立脚함>. 또한 1983年的 現場支拂制度(Payment-in-Kind Program of 1983)를 통하여 穀物, 陸地棉花 및 米穀에 대하여 自

發的으로 植付面積을 休耕하는 農民에게는 일부 生產 可能量을 政府保有의 現物로서 補償해 줌으로써 生產減縮과 政府保有在庫의 減縮에 힘써 왔다.

以上에서 美國의 農業政策의 刮目할 만한 變化와 政策手段을 要約하였는 바 美國農業은 強力한 農民의 政治力으로 인하여 農產物의 支持價格은 大部分의 경우 市場均衡價格보다 높은 수준에서 維持되었기 때문에 過剩生産의 문제가 提起되었으며, 過剩生産으로 인한 在庫累增現狀이 가져 오는 여러가지 隊단을 解消하기 위하여 多樣하고 複合的인 生產調整 및 消費促進, 輸出增大, 市販調整政策 등을 취해 온 歪曲된 성질의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作物別로 政策介入의 樣態는 약간씩 다르긴 해도 1973년이후 1977년의 農業政策은 政治的 目的과 經濟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相異한 政策手段을 사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共通점이 있다. 그것은 두개의 相異한 管理價格(two different regulated prices) 制度인 바 農民의 所得을 保障하기 위한 目標價格과 市場價格安定을 위해 商品信用公社(CCC)에 의하여 主管되는 貸付率 즉 市場最低價格인데 이는 農民에 대한 所得保障과 높은 價格支持로 나타날 수 있는 在庫增加, 輸出不振, 價格不安定을 동시에 해결하는 日本과 韓國에서의 二重穀價政策과 어떤 의미에선 類似한 面이 있다.

③ 品目別 政策

美國의 主要 品目別 農業政策은 <表3-1>에 要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價格形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政策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輸出禁止(export embargoes), 農產物検査 및 等級制度, 食品衛生, 輸送에 관한 規程 등 세세한 政府의 介入政策은 제외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政府의 介入政策을 考慮한다면 美國의 農產物市場내지 農業이라는 產業은 아담스미스類의 完全自由競爭市場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畜產物中 養豚과 養鷄 및 大豆는 이렇다 할 政府의 政策이 없는 反面 牛乳 및 乳製品產業에는 政府가 가장 깊숙히 간여하여 非效率的이며, 社會的 純剩餘의 損失이 엄청나다는 비난이 澄湃하고 있다(입풀리토와 마

表 3-1 主要 品目別 政策

單位 : 10 억 원

品 目	農家販賣額('85)	政 策
牛	28.7	• 輸入制限
飼料穀物	19.2	• 부족불제도, 가격지지, 경지제한, 농가보유재고제도
낙농 품	18.1	• 가격지지, 가격차별, 수입조절
大豆	10.8	• 政策無
돼지	8.9	• 政策無
견초	2.2	• 政策無
가금육 및 달걀	10.9	• 政策無
小麦	7.9	• 부족불제도, 가격지지, 경지위임, 작물재배유보, 농가보유재고제도, 목초지 지불제도
목화	3.8	• 부족불제도, 가격지지
담배	2.7	• 경지 및 시장조정, 가격지지
米 穀	0.9	• 부족불제도, 가격지지, 농가보유재고제도
사탕무우 및 사탕수수	1.5	• 輸入賦課金
땅콩	1.0	• 가격지지, 경지제한
주요과채류 (감자, 토마토, 포도, 상추, 오렌지)	6.8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약간의 수입제한 및 시장통제

資料 : U. S. D. A., Agricultural Statistics,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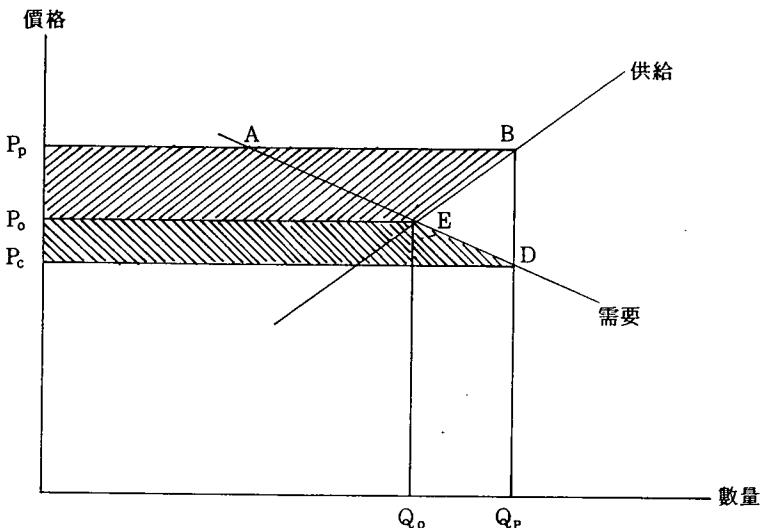
U. S. D. A., Farm Income Statistics, Statistical Bulletin No. 627.

(송, 1978).

美國農業政策中 가장 전형적인 예는 밀과 飼料穀物인 옥수수, 수수 등에 관한 政府의 政策이며 이는 위에서 잠깐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日本에 있어서 米穀에 대한 二重穀價制度와 類似한 價格政策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農家所得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目標價格 즉, 農家販賣價格이 世界市場價格보다 높이 策定되는데 이 價格下에서는 <圖3-1> 에서와 같이 A, B 만큼의 過剩生產이 招來되는데 1950 年代와 1960 年代에는 이와 같은 높은 生產者支持價格으로 인하여 政府保有在庫가 늘어나게 되었다.

圖 3-1 目標價格과 缺損支拂制度의 經濟的 効果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하여 1973년과 1977년의 農法에서는 不足拂制度 (Deficiency Payment)를 導入하였는 바 目標價格 P_p 에서는 Q_p 만큼이 生產되는데 이것을 市場에서 모두 消費시킴으로서 一般農產物 消費者들은 P_c 의 價格을 支拂하게 되어 政府의 介入이 없을 때와 比較하여 生產者는 $\square P_p P_c BE$ 만큼의 所得이 增加하고 消費者는 $\square P_o P_c DE$ 만큼의 剩餘가 더 돌아가게 되는데 最終적으로는 國民이 缺損額 $\square P_p P_c BD$ 만큼을 納稅해야 하므로 社會의 純損失은 $\triangle EBD$ 만큼이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目標價格과 함께 市場의 最低價格制를 運用하고 있는데 이는 1977年の 農法에 의하여 無償還請求貸付制度 (Nonrecourse Loan)를 導入함으로써 農民이 穀物을 擔保로 擔保된 穀物을 一定價格 (loan rate)으로 미리 融資받아 收穫後 市場價格이 融資價格보다 낮은 경우에는 商品信用公社 (CCC)에 擔保되었던 現物을 引渡하기 때문에 融資率 혹은 融資價格以下로 市場價格을 引下시키지 않는制度이다. 이때 融資價格 또는 美國內의 市場價格이 世界市場價格보다 높은 경우에는 輸出을 위해서는 輸出補助金支給이 必要한데 이는 政治的 論難의 對象이 되기 때문에 融資價格은 世界市場價格水

準이어야 한다는 主張이 많다. 1977 年의 農業法 以後로는 最低市場價格의 주된 役割은 生產과 輸出의 變動에 對備한 政府保有在庫의 調整에 주로 쓰여져 왔다. 또한, 市場價格을 安定시키고 政府保有在庫量을 調整하기 위하여 農民이 在庫를 保有할 경우에는 補助金을 支給하고, 倉庫設立을 支援하며, 市場價格이 急騰할 시에는 放出價(trigger prices)를 設定하여 農民所有在庫를 放出 販賣하 하는 制度도 運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相異한 二重價格의 運用으로 인한 過剩生產과 政府의 財政赤字의 폐단을 除去하기 위하여 生產割當, 耕地制限, 休耕 등의 制度를 導入하였는데 담배와 땅콩의 경우에 있어서는 生產者價格을 支持하는 대신 그 價格에서 消費될 수 있는 만큼을 生產하도록 生產割當을 하고 있다 (圖 3-1에서 점A). 小麥과 飼料穀物을 제외한 品目에 대한 農業政策은 程度의 差異가 약간씩은 있으나 根本的으로 小麥과 類似한 政策手段과 問題點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農產物間에는 生產이나 消費側面에서 相互競爭 및 代替關係下에 있다는 인식아래 한 品目에 대한 某種의 措置는 餘他品目에 영향을 주므로 品目間에 政策調和를 이루려는 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美國의 農業政策으로 인한 國內市場의 保護率을 政策이 없었을 때 예상되는 市場均衡價格과 實際價格을 比較하여 總體的으로 1960 年代의 1.15 ~ 1.20 水準에서 1970 年代는 1.05 ~ 1.06 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하여(가너 1981) 農產物에 대한 政府介入度가 낮아지고 自由市場化되어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特定品目을 對象으로 하지 않는 政府의 農業政策은 매우 복잡하고 多樣하지만 生產原價에 미치는 效果를 中心으로 두 가지로 區分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環境保全, 食品消費者의 保護, 農民의 安全과 健康, 農民의 賃金과 勞動與件을 都市勤勞者 水準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등의 生產原價를 上昇시키는 要因들과, 둘째로는 農民에 대한 金融惠擇, 灌溉施設에 대한 補助, 農業災害保險 특히 農業技術開發에 대한 政府補助등 農業의 生產原價를 절감시키는 效果를 갖는 政府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政府의 農業에 影響을 미치는 政策으로서는 에너지政策, 인프레와 利子率에 영향을 주는 通貨政策이 있다.

4. 1980年以後 美國農業의 與件變化와 對應政策

① 與件變化

가) 不振한 農家經濟

<表3-2>에서 總農家の 純現金所得 및 純農業所得은 外形적으로 增加해 왔으나(不變 純現金所得은 대체로一定) 政府의 價格支持로 인한 支拂金을 제외하면 農家の 經營에 의한 所得은 減少해 가는 趨勢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겠으나 <圖3-2>에서와 같이 1980년을 前後하여 農家の 肥料, 燃料 등의 投入材 價格指數는 계속하여 上昇해 온 反面 生產物의 農家販賣價格指數는 거의一定하였고 1985년의 경우는 오히려 큰 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낮은 農產物의 市場價格과 계속된 生產者 價格支持로 인하여 政府의 直接支拂金은 계속하여 急增하고 있어 農家の 所得은 주로 政府의 補助金支拂로 維持되고 있는 사실을 發見

表 3-2 年度別 農家所得 및 支出, 1980 ~ 85

單位: 10억 불, %

	1980	1982	1984	1985	1986
總現金所得 ¹⁾	143.3	150.6	154.9	156.2	
總農業所得 ²⁾	149.3	163.4	174.4	166.6	
現金支出	109.1	113.8	115.6	112.1	
總支出 ³⁾	133.1	140.7	141.7	136.1	
純現金所得 ⁴⁾	34.2	36.8	39.3	44.0	
不變純現金所得 ⁵⁾	39.9	36.8	36.4	39.5	
純農業所得 ⁶⁾	16.1(7.5)	22.7(15.4)	32.7(25.7)	30.5(25.2)	30.0(46.7)
不變純農業所得 ⁵⁾	18.8	22.7	30.3	27.3	
政府直接支拂金	1.2	3.5	8.4	7.7	14.0

1) 總現金所得 = 農畜產物販賣額 + 農業關聯所得 + 政府直接支拂金

2) 總農業所得 = 總農業現金所得 + 非現金所得 및 在庫價值 變動

3) 雇傭勞動 및 減價債却으로 인한 臨時支出도 포함

4) 純現金所得 = 總現金所得 - 現金支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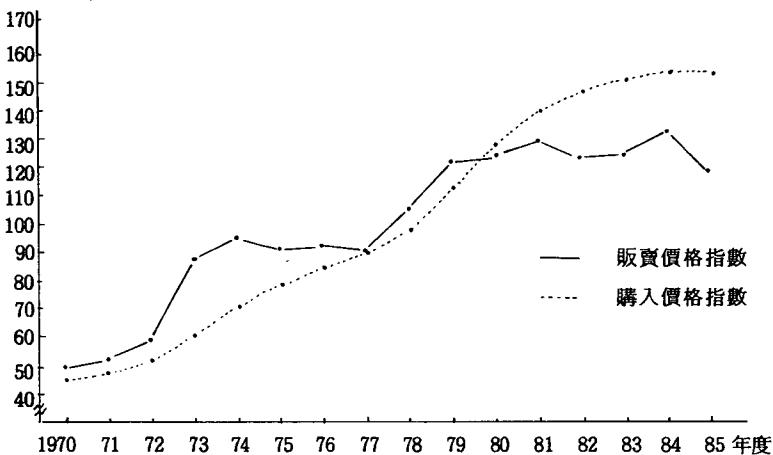
5) GNP 더플레이터 (1982=100)으로 더플레이트한 것임

6) 純農業所得 = 總農業所得 - 總支出

() : 純農業所得에 대한 政府直接支拂金의 比率

資料 : Economic Indicators of the Farm Sector, Farm Sector Review 1985.
U. S. D. A.

圖 3-2 農家販賣價格 및 購入價格指數, 1970~85
指數(1977=100)



資料 : Economic Indicators of the Farm Sector, Farm Sector Review 1985.
U.S.D.A.

할 수 있다. 農家の 純農業所得中 政府支出이 차지하는 比重은 계속 增加하였으며, 1986년의 경우에는 農家所得의 50%가 政府支出에 의하여 維持되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80年以後 계속하여 인프레이션 이 진정되고 固定資產에 대한 價格이 下落하는 동시에 農家經營의 收支가 悪化된 관계로 農家負債의 農家資產에 대한 負債比率은 間斷없이 높아지고 있다 <表 3-3>.

또한, 이와 같은 높은 負債比率로 인하여 純現金收入이 負가 되는 農家數는 總體的으로 總專業農家の 경우 30%에 육박하고 있다 <表 3-4>.

表 3-3 農家の 負債比率

單位: 10억 원, %

區分	1971	1974	1977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農家資產 ①	792.3	930.7	1,084.4	1,293.3	1,182.0	1,082.0	1,022.8	884.2	776.0
農家負債 ②	134.2	151.5	182.8	212.5	215.9	217.2	208.3	196.5	183.4
② / ①	16.9	16.3	16.7	16.4	18.3	20.0	20.4	22.2	23.6

資料 : Economic Indicators of the Farm Sector, Farm Sector Review 1985,
U.S.D.A.

表 3-4 專業農의 營農實態 1984 ~ 85 *

單位 : %

負의 純現金 收入	專業農家 負債比率				全體
	0.4 以下	0.4 ~ 0.7	0.7 ~ 1.0	1.0 以上	
利子支拂前					
1984	16.9	4.4	2.3	1.6	25.2
1985	13.0	3.1	1.4	1.8	19.3
利子支拂後					
1984	21.4	8.8	3.7	2.4	36.3
1985	17.5	5.8	2.5	3.2	29.0
利子 및 元金支拂後					
1984	31.4	13.1	5.4	3.1	53.3
1985	24.2	10.1	4.6	4.6	43.5

* 적어도 농업생산액이 4만\$ 이상인 農家를 專業農으로 간주했음.

資料 : U. S. D. A., Economic Indicators of the farm Sector, Farm Sector Review, 1985.

나) 輸出減少와 在庫累增

美國의 農產物輸出은 1970 年代初 穀物波動을 始發로 달러貨의 評價切下, 世界的인凶作으로 인한 輸入需要의 急增 등으로 비약적으로伸張하여 왔으나 1980 年代를 前後하여 對蘇 穀物禁輸措置, 輸出競爭國의 등장, 開途國에 있어서의 食糧自給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輸出이 減少되고 있는趨勢이다. <表 3-5>에서 美國의 農產物 總輸出은 1980 年 1 억 6 천만t에서 1985 年은 1 억 2 천만t으로 23% 가량 減少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減少될 展望이다. 品目別로 보면 主要 輸出穀物인 小麥과 糜, 飼料穀物 그리고 大豆는 1980 年이후 輸出이 크게 감소하여 總農產物輸出 減少의 主導的인 役割을 하였다. 反面, 瓜類와 肉類輸出은 계속 一定水準을維持하고 있으나 額數로 볼 때 그 比重이 미미한 品目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過剩生產과 輸出不振으로 인하여 美國의 穀物在庫는 <表 3-6>에서와 같이 1981 年以來 200% 나 增加하였는데 世界穀物在庫의 增加率 100% 미만을 크게 上廻하는 것이다. 美國의 穀物在庫推移를 品目別로 보면 小麥은 100% 内外의 增加率을 보인 反面 飼料穀物 특히 옥수수에 있어서는 在庫量이 무려 300% 가까이 증가하여 심각한 在庫管理問題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表 3-5 美國 農產物 輸出推移

單位:百萬公噸, %

品目＼年度	1980	1981(①)	1982	1983	1984	1985(②)	(②)/(①)	1986 ^v
小麥	36.1	42.2	44.6	36.7	41.7	28.5	67.5	28.0
밀 가루	0.9	0.9	0.9	1.5	1.1	0.8	88.9	1.2
飼料穀物 ²⁾	71.3	69.4	58.2	53.8	55.6	54.9	79.1	49.1
米 穀	3.0	3.2	2.9	2.3	2.3	2.0	62.5	1.8
家畜飼料	6.2	5.8	6.0	7.0	6.8	6.5	112.1	6.4
大豆	23.8	20.0	25.5	24.5	19.2	16.6	83.0	18.4
大豆粕	7.2	6.1	6.3	6.4	4.9	4.5	73.8	5.0
大豆油	1.2	0.7	0.9	0.9	0.8	0.8	114.3	0.7
기타油 및粕	0.4	0.4	0.3	0.2	0.2	0.1	25.0	0.1
해바라기씨	1.9	1.4	1.5	1.4	1.0	1.0	71.4	0.8
해바라기기름	0.1	0.3	0.1	0.2	0.2	0.1	33.3	0.1
면과 면직물	2.0	1.3	1.6	1.2	1.5	1.3	100.0	0.8
담배	0.3	0.3	0.3	0.2	0.2	0.3	100.0	0.2
果菜類	3.1	3.4	3.1	3.0	2.9	2.7	79.4	2.8
肉類	0.3	0.4	0.4	0.4	0.4	0.4	100.0	0.4
家禽肉	0.3	0.4	0.3	0.3	0.2	0.2	50.0	0.2
動物의기름	1.5	1.5	1.5	1.4	1.4	1.2	80.0	1.2
其他	4.1	4.5	3.7	3.4	3.2	4.2	93.3	3.1
總計	163.9	162.3	158.1	144.8	143.6	126.1	77.7	120.5

1) 推定値임

2) 옥수수, 보리, 호밀, 수수, 귀리, 混合穀

資料 : U.S.D.A., World Agriculture, Situation and Outlook Report 1987. 3.

表 3-6 世界의 穀物在庫 動向

單位:百萬公噸

區分＼年度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穀物別							
小麥	97.6	106.5	119.8	130.2	145.8	150.6	157.9
飼料穀物*	107.5	145.2	174.0	98.3	127.5	201.1	243.8
米穀	43.7	45.2	42.0	46.6	53.1	53.6	49.9
計	248.8	296.8	335.9	275.1	326.4	405.3	451.6
地域別							
카나다	14 (5.6)	16.2 (5.5)	18.5 (5.5)	13.3 (4.8)	12.2 (3.7)	14.7 (3.6)	23.9 (5.3)
E E C	20.8 (8.4)	18.2 (6.1)	22.8 (6.8)	15.6 (5.7)	33.5 (10.3)	36.0 (8.9)	29.2 (6.5)
美國	71.8 (28.9)	11.2 (37.5)	152.2 (45.3)	79.5 (28.9)	98.8 (30.3)	181.2 (44.7)	226.8 (50.2)
小麥	26.9	31.5	41.2	38.1	38.8	51.8	50.0
飼料穀物	44.3	78.0	108.7	39.9	50.8	126.9	168.8
옥수수	35.4	64.4	89.5	25.6	41.9	102.6	142.6
米穀	0.5	1.6	2.3	1.5	2.1	2.5	2.1

* 옥수수, 보리, 호밀, 수수, 귀리, 混合穀

()는 世界穀物在庫에 대한 퍼센트

資料 : F.A.O., food outlook, 1987. 2.

U.S.D.A., World Grain Situation and Outlook, E.R.S., 1987. 2.

② 美國農業政策의 變化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이 美國의 農業은 過剩生產과 輸出競爭力弱化, 輸出不振으로 인하여 穀物價格은 계속하여 下落하였으며 農家所得의 安定을 위한 政府의 財政支出은 急速히 膨脹한 反面, 農產物 在庫問題가 심각히 擙頭되었다. 따라서 美國은 이와 같은 農業의 不況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5年 食糧安全保障法(The Food Security Act of 1985)을 制定하기에 이른 것이다. 1985년의 農法의 根本趣旨는 현재 當面하고 있는 農業의 根本問題를 市場經濟의 原理에 立却하여 解決하려는데 그 特徵이 있다 하겠다. 食糧安全保障法의 主要內容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가) 農產物價格政策

于先 美國政府는 農產物의 過剩生產과 在庫累積, 政府支出의 過多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첫째 生產者支持價格인 目標價格(target prices)을 1986년을 頂點으로 차츰 引下시켜서 生產을 抑制하며 市場의 最低價格을 形成케 하는 商品信用公社의 貸付率도 점차 市場價格 혹은 世界市場價格에 近接시켜 國內市場價格이 높은 關係로 輸出이 不振되는 障碍要因을 除去하였다. 主要 品目別 目標價格과 貸付率은 다음과 같다(<表 3-7> 참조).

表 3-7 最低目標價格 및 貸付率(市場價格), 作物年度 1986 ~ 90

品目	年度	1986	1987	1988	1989	1990
小麥 ¹⁾						
目標價格		4.38	4.38	4.29	4.16	4.00
貸付率		3.00	4)	4)	4)	4)
玉米 ²⁾						
目標價格		3.03	3.03	2.97	2.88	2.75
貸付率		2.40	4)	4)	4)	4)
棉花 ³⁾						
目標價格		11.90	11.66	11.30	10.95	10.71
貸付率		7.20				
棉花 ³⁾						
目標價格		81	79.4	77	74.5	72.9
貸付率		55				

1) 單位는 \$/ bushel

3) 單位는 cents/pound

2) 單位는 \$/ cwt

4) 貸付率은 平均市場價格의 75 ~ 85% 水準임.

資料 : Glaser, L.K., 「Provisions of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U.S.D.A., E.R.S.

나) 輸出促進政策

美國은 輸出競爭國의 등장과 높은 國內市場價格으로 부진하였던 輸出物量을 擴大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輸出促進政策을 1985년 新農業法에 포함시켰다. 美國農產物의 輸出競爭力を 높이기 위해서 지원폭이 큰 쌀, 면화의 경우 國際價格이 農產物擔保融資時貸付率의 50%까지 引下되어도 現金으로 상환하면 融資額을 完濟할 것으로 간주(Marketing Loan Rate System)할 뿐만아니라 國際價格이 融資價格의 50%이상으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그 追加引下分 만큼은 商品信用公社에서 保有하고 있는 現物을 무상으로 지급해줌으로써 國際價格의 하락에 상관없이 輸出할 수 있는 體制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輸出競爭國의 輸出補助金支給이나 불공정貿易去來로 인하여 美國에 不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政府에서 不足拂支給을 擴大 지원함으로써 美國의 農產物市場에서의 占有率을 회복할 計劃인데 1986~1990年間 매년 3억불이상을 이와 같은 目的으로 使用할 豫定이다.

또한 美國의 農產物輸出不振의 部分的인 理由가 輸入國의 財政能力의 弱化에 있다고 보아 1986~1990年間 수입국에 50억달러 상당의 3년간의 短期信用을 供與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輸出振興에 소요되는 中期資金을 1986~1988年間 매년 5억불, 1989~1990年間 매년 10억불씩 策定하여 金融支援을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 적극적인 輸出促進政策으로서는 競爭國의 輸出補助金이나 美國의 높은 國內市場價格, 그리고 換率變動에 의하여 農產物輸出에 악영향을 미칠 때는 商品信用公社가 保有하고 있는 在庫를 처분하여 輸出을 支援한다는 輸出市場擴大計劃인데 1985~1988年間 20억불의 在庫를 使用하여 수출을 보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肉類의 輸出促進을 위해서는 農產物總輸出에 대한 支援基金의 15%이상을 肉類輸出의 振興을 위해서 使用되어야 한다는 規定을 두고 있다

또한 美國政府는 商務的인 農產物輸出의 促進이 외에도 美公法 480號에 입각한 農產物의 外國援助를 통하여 과잉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은 경주하고 있다. 즉 美公法 480의 適用期限을 1990年末까지 延長하고 贈與量의 下限 및 긴급식량원조량을 擴大할 것이며, 海外食糧援助의 對

象品目을 既存의 小麥과 乳製品에서 餘他品目으로 까지 擴大함과 동시에 商品信用公社 保有의 農產物 放出도 海外援助를 위해서는 可能하도록 하였다.

③ 뉴라운드 農產物 貿易協商

美國은 農業不況의 問題解決을 위하여 스스로의 自求策마련과 多樣한 輸出補助施策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 國際間 多者協商에 참여하여 農產物 貿易障壁의 완화와 自由貿易의 實現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1986年 가을부터 시작된 農產物 貿易協商을 위한 뉴라운드 1, 2 차회의에서는 農產物輸出國인 美國, 카나다, 호주 等과 典型的인 農產物 輸入國家인 EC, 日本 等으로 意見이 각각 나뉘어 협상타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라운드 협상에 임하는 美國의 입장은 EC와의 輸出補助金 支給을 통한 과당수출경쟁을 저양하자는 데 있으며, 모든 국가는 國內農業保護를 위한 政策手段으로서 價格支持를 행하고 있는데 이는 資源配分을 歪曲시키고 國際農產物의 貿易秩序를 교란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所得保障政策으로서 世界農產物 市場은 自由競爭市場의 原理가 適用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發生하는 農民의 不利益은 所得配分政策을 사용하여 補完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④ 對韓 輸入開放 壓力

우리나라의 對美總貿易黑子는 3低現象으로 인한 經濟與件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급속히 增加하여 1985年的 43 억불에서 1986년에는 76 억불이나 되어 農產物의 輸入開放壓力의 요인이 되고 있다.

農產物의 輸入開放要求는 總體的인 對美貿易黑子의 외형액에서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美國이 韓國에 加하는 農산물 수입개방압력에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하겠다. 美國의 農產物輸出은 수출경쟁국의 등장으로 각 시장에서의 市場占有rate이 점차 낮아짐은 물론 開發途上國에서의 食糧自給으로 인하여 輸出絕對物量도 급격히 減少하였는데 이것이 美國의 農業不況의 原因이 되고 있다. 美國의 韓國으로의 輸出도 1980年을 전후하여 대

체로 전품목이 減少하고 있으며 第三國이 市場을 침투하여 市場占有率이 낮아지고 있다(이상 <表3-8>~<表3-13> 참조).

表 3-8 農林水產物 國別 輸入, 1983~85

單位:百萬\$, %

年別 國別	1983		1984		1985	
	輸入額	前年對比 增加率	輸入額	前年對比 增加率	輸入額	前年對比 增加率
美 國	1,488(0.52)	—	1,300(0.46)	△ 17.3	1,018(0.41)	△ 17.2
말레이지아	366(0.13)	—	334(0.12)	△ 8.7	328(0.13)	△ 1.8
濠 洲	264(0.09)	—	286(0.10)	8.3	224(0.09)	△ 21.7
泰 國	69(0.02)	—	99(0.04)	43.5	90(0.04)	△ 9.1
日 本	73(0.03)	—	73(0.03)	0.0	89(0.04)	21.9
인도네시아	64(0.02)	—	80(0.03)	25.0	73(0.03)	△ 8.8
其 他	535(0.19)	—	654(0.23)	26.9	646(0.26)	△ 4.9
農林水產物(A)	2,859(1.00)	—	2,826(1.00)	△ 1.2	2,468(1.00)	△ 11.3
輸 出 用(B)	290		250	△ 13.8	247	△ 1.2
B / A (%)	10.1		8.8		10.0	

資料：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表 3-9 小麥의 輸入先別 輸入

單位: 千噸, 千\$

區 分		1977	1982	1983	1984	1985	1986
美 國	物量	1,938(97.4)	1,907(99.0)	1,835(71.9)	1,905(71.9)	1,966(65.8)	1,866(54.1)
	金額	266,460	344,432	330,421	315,513	314,954	264,476
濠 洲	物量	20 (1.0)	20 (1.0)	—	624(23.6)	954(31.9)	701(20.3)
	金額	2,220	3,028	—	90,784	119,756	74,248
프랑스	物量	—	—	—	50 (1.9)	1	0.1
	金額	—	—	—	7,553	78	9.6
뉴질랜드	物量	—	—	—	50 (1.9)	4 (0.1)	23 (0.7)
	金額	—	—	—	7,207	546	1,840
캐나다	物量	31 (1.6)	—	19 (1.0)	15 (0.6)	55 (1.8)	640(18.6)
	金額	4,378	—	3,080	2,700	5,964	61,713
其 他	物量	—	—	—	4 (0.2)	6 (0.2)	218.9 (6.3)
	金額	—	—	—	402	871	22,713
合 計	物量	1,990(100.0)	1,927(100.0)	1,854(100.0)	2,648(100.0)	2,986(100.0)	3,449(100.0)
	金額	273,227	347,460	333,501	424,519	441,569	424,756

() 속은 總小麥 輸入에 대한 比重
資料：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表 3-10 옥수수 輸入先別 輸入

單位：千噸，千\$

區 分		1977	1982	1983	1984	1985	1986
美 國	物量	1,249(97.7)	2,723(95.4)	3,944(97.2)	2,606(85.1)	1,673(49.1)	1,325(36.1)
	金額	148,118	365,545	578,100	424,166	221,367	133,198
泰 國	物量	—	34(1.2)	58(1.4)	116(3.8)	361(10.6)	1,130(30.8)
	金額	—	4,579	8,641	18,152	39,204	110,739
자유중국	物量	—	—	—	47(1.5)	83(2.4)	25(0.7)
	金額	—	—	—	7,049	10,500	2,485
기 타	物量	29(2.3)	97(3.4)	55(1.4)	295(9.6)	1,289(37.8)	1,191(32.4)
	金額	3,495	13,741	8,093	41,879	150,464	123,454
合 計		物量	1,278(100.0)	2,854(100.0)	4,057(100.0)	3,064(100.0)	3,406(100.0)
		金額	151,613	384,865	594,834	491,246	421,535
							369,876

() 속은 總 옥수수 輸入에 대한 비중

資料：關稅廳，「貿易統計年報」，各年度。

表 3-11: 수 수 輸入先別 輸入

單位：千噸，千\$

區 分		1977	1982	1983	1984	1985	1986
美 國	物量	1 (4.5)	389(100.0)	56 (35.2)	142 (44.5)	36 (10.5)	—
	金額	130	51,608	6,586	20,669	4,484	—
아르헨티나	物量	21 (95.5)	—	78 (49.1)	69 (21.6)	—	5.4 (2.2)
	金額	2,515	—	11,117	10,775	—	538
歐 洲	物量	—	—	21 (13.2)	75 (23.5)	1 (0.3)	10.6 (4.3)
	金額	—	—	3,318	10,944	173	899
自由中國	物量	—	—	—	4 (1.3)	2 (0.6)	0.07
	金額	—	—	—	535	211	5.1
其 他	物量	—	—	—	29 (9.1)	305 (88.7)	230 (93.5)
	金額	—	—	—	3,964	33,195	21,367
合 計		物量	22(100.0)	387(100.0)	159(100.0)	319(100.0)	344(100.0)
		金額	2,644	51,608	21,599	46,901	38,063
							22,809

() 속은 總 수수 輸入에 대한 比重

資料：關稅廳，「貿易統計年報」，各年度。

表 3-12 쇠고기 輸入先別 輸入(精肉기준)

單位: 千%, 千\$

區 分		1977	1982	1983	1984	1985	1986
日 本	物量	—	—	—	—	1(0.0)	—
	金額	—	—	—	—	26	—
美 國	物量	78(1.4)	657(1.3)	693(1.4)	1,073(5.4)	837(31.9)	10 (32.3)
	金額	506	1,161	4,455	6,492	4,793	90
歐 洲	物量	5,097(89.9)	49,974(97.9)	45,473(91.9)	17,249(87.0)	1,179(45.0)	0.4 (1.3)
	金額	5,478	141,998	130,368	50,566	662	3
뉴질랜드	物量	497 (8.8)	108(0.2)	2,237(4.5)	—	347(13.2)	20(64.5)
	金額	780	312	7,288	—	1,251	84
스웨덴	物量	—	302(0.6)	1,067(2.2)	507(2.6)	147 (5.6)	—
	金額	—	806	2,992	1,582	387	—
其 他	物量	—	4 (0.0)	—	990(5.0)	109 (4.2)	—
	金額	—	3,794	—	2,502	305	—
合 計		物量 5,672(100)	51,045(100)	49,470(100)	19,819(100)	2,620(100)	31(100.0)
		金額 6,766	148,071	145,102	61,142	7,424	176

() 속은 總쇠고기 輸入에 대한 比重.

資料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表 3-13 大豆 輸入先別 輸入

單位: 千%, 千\$

區 分		1977	1982	1983	1984	1985	1986
美 國	物量	133(100.0)	581 (99.7)	658 (99.9)	721 (99.7)	779 (89.7)	959 (97.3)
	金額	43,014	156,280	183,591	228,551	193,963	216,361
其 他	物量	—	2 (0.3)	—	1 (0.1)	89 (10.3)	26 (2.6)
	金額	4	424	114	90	22,581	2,957
合 計		物量 133(100.0)	583(100.0)	658(100.0)	722(100.0)	868(100.0)	986(100.0)
		金額 48,018	156,704	183,705	228,641	216,544	222,278

() 속은 總大豆 輸入에 대한 比重.

資料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이에 따라 美國은 既存輸出品目의 對韓市場에서의 市場占有率을 회복할 계획이며 또한 餘地品目에 대해서도 輸入關稅引下와 輸入規制의 완화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1987年初 美國은 쇠고기(上等肉), 포도주, 프렌치프라이용 감자, 알파파(사료)等 農畜產物을 중심으로한 50여개 상품의 市

場開放 및 關稅引下의 要求와 더불어 食品加工產業까지도 開放하라고 要구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에 對應하여 政府는 美國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밀, 옥수수, 콩과 원면 등 주요 農產物을 원칙적으로 美國에서 구입할 예정이며 또한 1987년 7월부터는 기왕에 輸入自由化 品目으로豫示된 토지고기통조림, 레먼과 크랜베리쥬스, 알파파草를開放하겠다고 밝혔다. 現在는 美國上下兩院에서의 통상무역법에서는 對韓 쇠고기 輸入開放要求도 포함시키고 있다.

다. 要 約

美國農業은 現在 最大의 不況과 시련에 봉착하고 있다. 不況의 原因은 크게 對內外的 要因으로 區分하여 밝힐 수 있는데 첫째 對內的으로는 美國 역시 農家保護와 農民의 所得支持政策은例外가 아니어서 市場均衡價格보다 높은 價格을 農民에게 保障해 줌으로써 過剩生產이 되고 過剩生產된 農產物을 消化하기 위해서는 낮은 消費者價格이 形成되나 市場에서의 消費者價格은 아직도 世界市場價格보다 높기 때문에 輸出이 不振하게 되며 生產者, 消費者價格의 差異로 인하여 政府의 財政支出은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美國 農產物 輸出의 不振과 農業不況의 對外의 要因으로서는 1980년의 對蘇 穀物禁輸措置를 비롯하여 지난 20年間 만성적으로 食糧問題를 안고 있던 中共, 인도등 開發途上國에서의 食糧自給과 輸入需要의 激減, 이와 併行하여 EC와 그밖의 農產物 輸出國이 抬頭되어 輸出競爭이 激化되었다는 점이다. 美國의 輸出競爭力強化의 基底에는 生產技術의 移轉問題도 크게 作用하는 바 최근 主要 輸出國 뿐만 아니라 開發途上國에서도 쌀, 콩의 生產性이 增大하고 있으며 특히 EC의 경우는 美國과의 生產性隔差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美國政府는 위와 같이 累積되어 온 農業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1985年的食糧安全保障法을 制定하였는데 多樣한 政策手段을 동원하여 長短期의 으로 對處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過剩生產과 財政赤字問題를 長期的이고 根本的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農產物市場을 自由市場의 形態에 接近시키고 生產者支持價格인 目標價格을 引下함으로써 生產誘因을 除去할 計劃이다.

短期的으로는 累積된 在庫의 處理를 위해서 最低市場價格인 貸付率을 引下하고 輸出補助金과 類似한 마케팅·론 制度를 통하여 EC의 輸出補助金支給에 의한 輸出에 對處하고 있다. 輸出補助金支給은 價格下落을 통하여 輸出國의 納稅者들로부터 輸入國의 消費者들에게 福祉가 移轉되는 效果를 가져 오는데 그로 인한 輸出國의 財政負擔은 머지않아 農產物 輸出國에 破產을 가져 올 것이라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적인 특히 美國의 農產物 過剩現象은 經濟흐름의 과정중에 나타나는 一時的이고 短期的인 不均衡的인 現象일 뿐 長期的으로持續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무릇 農業政策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事後的으로 問題를 解決하는데 촛점이 맞추어 진 것이 대개의 경우인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農產物 輸出國 대부분은 自國의 富 또는 剩餘(suplus) 가 出血輸出競爭으로 輸入國으로 移轉되는 現狀況을 방지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政策對案으로서 農民을 보호하되 過剩問題가 發生하지 않도록 힘쓸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現在의 값싼 輸入農產物 價格으로 國內農產物生產의 機會費用이 높다는 여론에 同調만 할 것이 아니라 각 輸出國에서 農業調整과 生產 및 在庫調整이 끝난 후 農產物 品貴事態도 미리 예견해 보는 자세가 必要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對美貿易黑子幅의 擴大 및 통상마찰의 대두와 美國農業의 不況은 우연히도 그 시기가 일치하여 農產物 輸入開放壓力은 加重되고 있다. 그러나 工產品輸出의 增大로 인한 對美貿易黑子의 擴大問題를 원화의 評價切上이나 같은 類의 工產品을 더 많이 輸入함으로써 완화시키지 않고 農產物 輸入開放으로 인하여 과급될 農家의 不利益을 補償하여 줄 腹案도 없이 손쉽게 農產物 輸入開放을 云謂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이 된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가 받고 있는 農產物 輸入開放壓力과 美國의 農業不況은 거의例外가 없는 세계 모든 국가의 國內農業保護로 인한 過剩生產과 그 처리과정에서 각 국가가 自體解決이 아닌 貿易相對國에게 그들의 문제를 轉嫁시킴으로써 유래되고 있음을 깊이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2. 日本의 農產物輸入政策

本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賦存資源의 賦存下에서 주로 工產品을 輸出하고 大量의 農產物을 수입하는 日本의 輸入趨勢와 그에 대응하는 食糧自給率을 살펴보고 國內農業保護를 위해 各 品目別로 취하고 있는 輸入制度를 살펴 보고자 한다. 최근 日本의 貿易收支黑字의 擴大로 인한 통상 무역마찰과 國内外 價格差의 擴大에 따라 輸入開放壓力이 加重되고 있다. 이에 따른 農產物 輸入開放에 대한 日本內의 여론과 農業構造政策의 變化 그동안의 開放化推移와 그에 대한 對應政策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輸入開放壓力에 대한 教訓과 示唆點을 찾고자 한다.

가. 農產物輸入趨勢

① 輸入絕對量推移

日本은 耕地面積이 협소하고 人口가 과밀한 나라로서 1人當 耕地面積은 0.06 ha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工產品을 수출하고 農產物을 輸入하는 代表的인 나라이다. <表 3-14>, <表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產物, 畜產物, 水產物 등 상당량을 輸入에 의존해 오고 있다.

먼저 農產物輸入의 경우를 보면 1960 年以後 高度成長期를 통해서 급속히 증대되어 1960 ~ 75년간 穀物類는 4배, 豆類는 3배, 果菜類 12배 油脂類는 2배가 각각 증가하였다. 1975년 이후 완만한 經濟成長으로 農產物의 輸入增加率은 高度成長期에 비해一般的으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所得向上과 食品消費의 고급화로 인한 畜產物 등의 需要增大에 따라 飼料穀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1975 ~ 85년 옥수수의 年間輸入은 760 만톤에서 1,440 만톤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食品高級化, 多樣化에 따라 植物性油脂原料와 嗜好品의 輸入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畜產物과 水產物輸入의 경우를 보면 農產物 경우처럼 1960년

表 3-14 日本의 主要農產物 輸入趨勢

單位 : 1,000 톤

品目別	1960	196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穀類	4,500	10,410	15,803	19,422	25,057	26,710	24,927	26,237	27,137	27,109
米穀	219	1,052	15	29	27	67	61	18	165	30
小麥	2,660	3,532	4,621	5,715	5,564	5,504	5,432	5,544	5,553	5,194
大麥	30	512	1,072	2,117	2,087	2,225	1,833	2,275	2,284	2,071
옥수수	1,514	3,558	5,647	7,568	13,331	13,248	14,206	14,649	13,976	14,449
우수	57	1,627	4,109	3,669	3,742	3,436	3,145	3,345	4,592	4,861
其他雜穀	20	129	339	324	306	230	250	406	567	504
薯類	0	0	0	28	211	190	194	186	183	200
감자	0	0	0	28	211	190	194	186	183	200
豆類	1,181	2,060	3,465	3,588	4,705	4,537	4,640	5,323	4,806	5,202
大豆	1,081	1,847	3,244	3,334	4,401	4,197	4,344	4,995	4,515	4,910
其他豆類	100	213	221	254	304	340	296	328	291	292
野菜	16	42	98	226	468	576	613	710	897	790
果實	118	573	1,186	1,387	1,539	1,614	1,699	1,611	1,753	1,874
油脂類	220	266	342	363	443	461	464	452	405	422
植物性油脂	19	22	53	173	247	312	319	313	270	276
大豆油	1	1	4	14	0	29	38	7	9	2
油菜油	0	0	0	15	8	24	19	13	23	13
動物性油脂	201	244	289	190	196	149	145	139	135	146
牛脂	161	191	257	183	170	132	116	111	95	95

資料 : 農林水産大臣官房調査課, 「食料需給表」, 1985.

이후 고도성장기를 통해 급속히 증대되어 1960 ~ 75년간 肉類가 18배, 牛乳와 乳製品이 4배, 魚貝類가 11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특히 1975년 이후 低成長期동안 所得向上과 食品消費의 高級化로 인해 畜產物과 水產物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日本 農畜水產物의 輸入이 크게 증가한 品目은 畜產物과 水產物 그리고 植物性油脂의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飼料穀物 및 畜產物, 魚貝類, 植物性油脂原料가 있고 需要의 多樣化에 의한 것으로써 小麥

表 3-15 日本의 主要畜産物 및 水産物 輸入趨勢

單位 : 1,000 톤

品目別	1960	196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肉類	41	121	220	731	738	789	784	826	830	851
쇠고기	6	11	33	91	172	172	198	208	213	225
돼지고기	6	0	17	208	207	232	199	271	262	272
닭고기	0	8	12	28	80	104	107	100	112	115
其他肉類	29	83	143	375	254	262	260	228	226	222
鶏卵	0	2	51	55	49	52	41	40	29	39
牛乳 및 乳製品	237	506	561	979	1,027	1,068	1,085	1,092	1,218	1,139
魚貝類	100	655	745	1,088	1,689	1,597	1,527	1,944	1,955	2,255
생선·냉장		103	233	619	847	998	1,119	1,124	1,203	1,356
鹽藏	8	15	59	123	169	189	190	358	450	510
통조림			1	2	10	11	13	11	13	15
飼料用	92	536	451	336	662	397	207	449	289	374
海藻類	8	12	15	25	55	51	53	56	58	58
雪糖類										
粗糖	1,244	1,642	2,758	2,243	2,106	1,683	1,932	1,969	1,872	1,823

資料 : 農林水產大臣官房調查課, 「食料需給表」, 1985.

果菜類, 嗜好品, 飼料 및 煙草 등을 들 수 있다.

② 食糧自給率

앞서 日本의 農畜水產物의 輸入을 살펴 보았으나 이는 日本 自國內 生產問題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食糧自給率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表 3-16>은 1960 ~ 85 年間의 主要 食用 農產物의 自給率을 나타낸 것으로 1960 年의 경우 小麥, 大豆, 설탕을 제외한 대부분의 品目에서 自給率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米穀등 소수의 品目을 제외하고 대부분 品目的 自給率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絶對輸入量 추세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高度成長에 따른 所得向上, 食品消費의 高級化, 多樣化로 인해 絶對輸入量이 증가한 品目은 상대적으로 自給率이 크게 떨어졌다.

表 3-16 日本의 食糧自給率

單位 : %

		1960	196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主要農產物의 自給率	米 谷	102	95	106	110	87	92	93	94	109	107
	小 麥	39	28	9	4	10	10	12	11	12	14
	豆 類	44	25	13	9	7	7	9	7	9	8
	大 豆	28	11	4	4	4	5	5	4	5	5
	野 菜	100	100	99	99	97	97	96	96	95	95
	果 實	100	90	84	84	81	77	79	81	74	76
	鶏 雞	101	100	97	97	98	97	98	98	99	98
	牛 乳 · 乳 製 品	89	86	89	82	86	84	85	86	86	89
	肉 類	91	90	89	77	81	80	80	80	80	81
	牛 肉	96	95	90	81	72	75	71	70	72	72
	豚 肉	96	100	98	86	87	86	87	85	84	86
	雪 糖	18	30	23	16	29	28	31	30	32	34
飼料 物 (~) 食 用 自 給 率	米穀의 需給均衡을 前提로 한 경우 ¹⁾	82	62	46	40	33	33	33	32	31	32
	米穀의 各年度 需給 實績을 基礎로 한 경우 ²⁾	83	62	48	44	29	31	31	30	34	34

1) 米穀의 自給率이 100%가 되었다는 假定下에서의 自給率임.

2) 各年度 米穀의 實績値를 使用하여 計算한 自給率임

資料 : 農林水產大臣官房調查課, 「食料需給表」, 1985

이를 몇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推移를 보면 첫째, 國內需要가 증가했으나 供給이 쫓아가지 못해 自給率이 낮은 品目은 肉類와 飼料穀物로써 飼料穀物은 大部分 輸入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食生活의 고급화에 따른 畜產物需要增加는 肉類와 飼料穀物의 輸入擴大를 가져 왔고 自給率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설탕은 1960년 당시부터 大部分 輸入에 의존한 것으로 氣候條件等 日本에서의 生產이 적합하지 않은 때문이지만 政府의 保護措置에 힘입어 1960년에 비해 自給率은 다소 높아졌다.

둘째, 國내需要는 증가했으나 國內生産은 오히려 감소하여 자급율이 낮아진 品目은 小麥, 豆類, 油脂類로서 所得增加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한 반면 國內外價格差의 擴大로 國내生産이 위축된 品目들이다. 그러나 소액의 경우 1975年 自給率 4%에서 1985年 14%로 豆類는 7%에서 8%로 각각 自給率이 높아 진 것은 政府가 적극적인 生產支援政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세째, 國內需要는 증가하고 國內生產도 증가하고 있지만 1960년 당시에 비해 自給率이 다소 떨어진 品目은 果實類로서 果實類는 食品消費의 고급화, 다양화로 인해 非代替果實의 輸入增加로 自給率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네째, 國內自給率을前提로 하여 1960년 당시와 비교하여 변함이 없고完全自給 또는 그에 가까운 것은 米穀, 野菜, 鷄卵 등의 品目으로서 米穀은 과잉 상태로 日本農業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米穀은 國家貿易品目으로 日本政府의 막대한 보호 아래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日本은 耕地面積이 좁고 人口는 많아 一部品目을 제외하고 자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높은 經濟成長과 所得向上에 따른食品消費의 高級化, 多樣化로 主要 農產物의 自給率은 낮아지고 있다. 특히飼料穀物의 輸入增加로 인해 穀物의 自給率은 1960년 83%에서 1985년 34%로 크게 낮아졌다. 絶對輸入量推移와 食糧自給率推移를 통해 볼 때 앞으로도 日本은 상당량의 農畜水產物을 輸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安定的輸入의 문제와 一定自給率의 維持, 國內外 價格差의 擴大에 따른 農業構造調整問題, 貿易收支擴大에 따른 輸入開放壓力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는 日本의 輸入制度와 開放化에 對處한 輸入政策을 살펴 보고자 한다.

나. 品目別 구체적인 輸入制度

日本의 農產物 輸入制度는 國內農業政策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體系의으로 統合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方向은 「農業基本法」 제13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關稅率의 調整, 輸入의 制限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종종 農產物에 관한 法令이 정비되고 있다.

輸入에 관한 기본적인 法令으로서는 「外國換 및 外國貿易管理法」「輸入貿易管理令」「關稅法」등이 있으며, 輸入制度에 관련된 法規로서는 「輸入去來法」「特別法」등이 있다.

農產物 輸入規制에 관계되는 것으로 수입승인제도와 수입신고제도 2개가 있다. 輸入承認制度는 輸入割當制度, 事前許可制度, 其他制度로 区分할 수 있는데 그중 輸入割當制度는 輸入制限이 강력한 것으로서 輸入貿易管理令 제 3 조에 의거 통산성고시에 의해 공표된다. 즉 輸入公表에 의해 非自由化品目(一般的으로 IQ品目이라 함)으로 규정된 品目에 대해 輸入割當이 되고 있다. 현재 輸入割當品目數는 關稅率表 4 단위 기준으로 76 개로서 그중 26 개가 農林水產物品目이다. 그러나 國家貿易品目 및 GATT一般例外規定品目을 뺀 輸入制限品目은 23 개로서 그중 農林水產物은 22 개(8 단위로 환산할 경우 무려 89 개에 이르고 있음)이다.

IQ品目은 통상 연 2회(上下半期)로 区分하여 輸入割當量을 設定하지만 割當量은 해당품목의 需給 및 價格 등의 動向, 對外關係 등을 검토하여 主務長官의 동의를 얻어 通商長官이 정한다. 割當方法은 原則的으로 數量割當이지만 數量算定이 곤란한 것은 金額割當을 취하고 있다.

현재 實施되고 있는 割當方式은 一般割當과 特別割當이 있으며 一般割當中 대개 重要 輸入品目은 計劃割當을 하는데 輸入割當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 品目은 割當量이 많고 輸入動向이 國內生產物의 需給에 큰 영향을 미치는 品目이기 때문에 品目의 需給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필요한 할당량을 산출하고 있다. 割當時 國內生產, 流通, 價格 등의 推移와 對外事情 등을 고려하여 각 品目별로 그 割當時期가 다르다. 그 割當方式은 政府 및 事業團買入, 輸入商社割當, 需要者割當 등으로 되어 있다. 計劃割當을 品目별로 정리한 것이 <表 3 - 17>이다.

한편 日本은 關稅를 彈力的으로 運用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형태의 關稅가 있는데 이에 대한 對象品目과 적용방법은 <表 3 - 18>에서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從價稅만 적용되어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한 형태의 關稅中 季節關稅, 슬라이드關稅, 差額關稅를 해당품목별로 정리한 것이 <表 3 - 19>이다.

季節關稅는 國內農產物의 出荷期가 계절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그 出荷期에 해당하는 農產物과 競合하는 輸入品에 대해 높은 關稅를 부과함

表 3-17 日本의 計劃割當方式

品 名	割 当 方 式	品 名	割 当 方 式
米, 小麥, 大麥	政府(食糧廳) 買入	파 우 다	
쌀 가루, 옥수수 가루	需要者 割當	製 畜 用 { 飼 料 用	畜產振興事業團買入 需要者 割當
雜 豆	商社割當(基金協會와 買契約이 있는 者)	牛 肉 (一般用)	畜產振興事業團買入, 需要者 割當, 商社割當을併用
落 花 生	商 社 割 當	(호텔用)	需要者 割當
구 약나물의 지하초, 감자가루	需要者 割當	牛 肉 (煮沸牛肉)	需要者 割當 商社割當併用
오 렌 지	商 社 割 當	(需要開發用)	需要者 割當
파인애플통조림	商 社 割 當	水 產 物	韓國產은 商社割當, 其他 地域產은 需要者 割當과 商社割當을併用
濃 縮 果 汁	需要者割當과 商社割當	명 태	需要者割當, 商社割當併用
Fruits 뿐 래	商 社 割 當	청 어	"
Fruits 펄 프	商 社 割 當	오 징 어	"
토 마 토 쥬 스	需要者 割當과 商社割當을併用	대 구 의 卵	"
토마토케첩소스	"	말린 오징어	"
澱粉(糖化用等)	需要者 割當	김	商社割當(海苔協會와 賣契約이 있는 者)
Butter(一般用)	畜產振興事業團買入	다 시 마	需要者 割當
脫 脂 粉 乳		家畜, 家禽豫防液	商社割當(藥事法의 許可가 있는 者)
一 般 用	畜產振興事業團買入		
{ 飼料用等	需要者 割當		

資料 : JETRO, 「農林水產物の 貿易」, 1986.

表 3-18 特殊한 形態의 關稅, 1986 年度

特 殘 한 形 態 의 關 稅	品 目 數	品 名
1. 슬라이드關稅 및 差額關稅	14	
(1) 슬라이드關稅	7	양파등
(2) 差額關稅	7	豚, 豚肉(3), 햄, 베이컨등(3)
2. 季 節 關 稅	7	바나나(2), 오렌지(2), 그레이프프루트(2), 포도
3. 關稅割當制度 (TQ)	22	肉用肥育素牛, Natural 치즈, Oat, 옥수수(3), 麥芽(2), 粗留알코올(2) 등
4. 從 價 從 量 選 擇 稅	37	鳥卵 및 卵黃, 魚油, 아자油, 아마인油, 砂糖水, 당밀, 香味付着色의 糖類(8), 果汁, 香味付着色의 調製食料品等
5. 從 價 從 量 併 用 稅	1	담 배
6. 從 量 稅	100	馬, 牛, 鹽藏등의 牛肉, 海苔, 寒天, 豚脂, 食用植物 油(12), 砂糖(12), 당밀(4), 마카로니등, beer, 포도즙, 포도주(3), 베르吏, 清酒等(2), 위스키(2) 브랜디(2), 리큐르등(3), 配合飼料(2), 原油, 撻 發油(5), 灯油, 輕油, 重油(3), 液化石油(2) 등

資料：日本關稅協會，「貿易年鑑」，1986。

表 3-19 關稅 適用(季節關稅, 슬라이드關稅, 差額關稅)

A. 季節關稅

對 象 品 目		輸 入 關 稅						自由化年 度
바나나	신선한것(08.01.1(1))	잠정	매년 4/1부터 동년 9/30까지 수입된것	-40%				1963
	저 장용액에일시적으로 저장한것 (08.11.1)		" 10/1 " 익년 3/31 "	-50%				
	신선한것 (08.02.2)	기본	" 4/1 " 동년 9/30 "	-40%				
	저 장용액에일시적으로 저장한것 (08.11.2)		" 10/1 " 익년 3/31 "	-50%				
오렌지	신선한것 (08.02.3)	기본	매년 6/1 " 동년 11/30 "	-20%				1971
	저 장용액에일시적으로 저장한것		" 12/1 " 익년 5/31 "	-40%				
	신선한것 또는 냉장 한것 (07.01)	잠정	" 6/1 " 동년 11/30 "	-20%				
	저 장용액에일시적으로 저장한것		" 12/1 " 익년 5/31 "	-40%				1973
포도	신선한것 (08.04.1)	잠정	매년 11/1부터 익년 2월까지 수입된것	-13%				

B. 슬라이드關稅

對 象 品 目		輸 入 關 稅						自由化年 度
양파	신선한것 또는 냉장 한것 (07.01)	잠정	○ 과세가격이 1kg당 6円이하인것	-10%				
			○ 과세가격이 1kg당 67円을 초과하고 73円 70 전 이하인것 1kg당 과세가격과 73円 70전과 의 차액					
		잠정	○ 과세가격이 1kg당 73円 70전을 초과하는것 — 무세					

C. 差額關稅

對 象 品 目		輸 入 關 稅						自由化年 度
豚	산동물 (1 두당 중량 50kg이하의 것)	잠정	○ 1 두당 과세가격이政令으로 정한 돈육에 대한 축산물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1961년 법률 제183 호)제 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1kg 당 안정기준가격 및 안정상위가격의 합계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大藏大臣이 정한 금 액 (기준수입가격)의 가장 좋은 지육은 54를 곱하고 1.1로 나눈 금액 이하의 것 — 1 두당 해당기준수입가격에 54를 곱해 얻은 금액과 과세가격의 차액 ○ 기타의 것 — 10%					1971

資料：日本關稅協會，「貿易年鑑」，1986

으로써 國內農產物을 保護하고 그외의 계절에는 낮은 關稅를 적용함으로써 國民生活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으며 해당품목은 바나나, 오렌지, 그레이프フル츠, 포도 등 계절성이 있는 新鮮食料品이 이에 해당한다.

스라이드 關稅는 輸入品의 價格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상품에 과세되는 關稅額이 감소하는 部分(슬라이드部分)이 있는 것을 말하며 國產品價格과 輸入品價格과의 差額은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關稅의 維持 保護機能을 적절하게 해준다. 슬라이드 關稅 적용품목은 대체로 國際市況이 대폭적으로 변동하는 상품에 적용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品目은 양파이다.

差額 關稅는 輸入品의 價格이 一定水準을 밀들 경우 그 水準以下로 輸入品이 國內市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逆으로 폭등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關稅負擔이 경감되는 제도로서 豚肉에 적용되고 있다.

특수한 형태의 關稅中 關稅割當制度는 1961년부터 貿易自由化에로의 方向轉換에 對比하기 위해設定된 制度로서 첫째, 貿易自由化에 의해 國內產業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自由化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둘째, 輸入品을 낮은 價格으로 輸入하고자 하는 需要者와 해당 輸入商品과競合되는 상품의 國內生產者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制度이다.

<表 3-20>에서 보는 바와같이 關稅割當制度下에서 割當收量은 해당년도의 國內需要豫想量에서 國內生產豫想量을 뺀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國際與件 및 其他條件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割當 關稅率은 1次와 2次로 區分되어 關稅率審議會議 심의를 거쳐 輸入制限品目과 비교하여 결정된다. 미리 設定해 놓은 割當數量內에서의 輸入에 대해서는 低率 關稅(1次 關稅)를 적용하고 이 수량을 초과하는 輸入에 대해서는 高率 關稅(2次 關稅)를 적용함으로써 生產者側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關稅割當의 적용품목은 生牛, 가공치즈, 귀리, 제조용 옥수수, 맥아 등이다.

한편, 日本의 穀物輸入制度는 <表 3-21>에서와 같다. 輸入管理體系는 옥수수등 飼料用穀物 및 大豆가 自動承認品目이며 쌀, 食用小麥과 大麥이 輸入割當制(Quota)이고 加工用 옥수수가 關稅割當制로 되어 있다.

日本의 輸入穀物은 주로 協商을 통해 輸入하는 隨意契約方式에 의존하고

表 3-20 關 稅 割 當 制 度

對 象 品 目	CCC N No	輸 入 關 稅		自由化 年 度	다른 關 稅 와 의 關 係
生牛(300kg/頭이하의 것)	01·02	감 정	(1)해당년도의 국내수요에 상량에서 국내예상생산량을 뺀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시장의 상황,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政令이 정하는 수량범위 즉 1차관세 - 무세 (2) 2차관세 - 1두당 45,000円	1971	水牛 - 무세(협정) 300kg이상의 것 - 중량세 (1두당 75,000円(협정))
		감 정			
치즈 및 커드중 가공치즈이외의 것(가공치즈원료용의 것에 한함)	04·04·2	감 정 기 본	(1)上 同 - 무세 (2) 2차관세 - 35 %	1951	가공치즈 - 종가세 (35%(감정)) 자연치즈이외것 - 종가세 (35%(기본)) IQ 품목
귀 리 (Oat)	10·04	감 정	(1)上 同 - 무세 (2) 2차관세 - 10 %	1959	
옥수수(관세정율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	10·05	협 정	(1)上 同 - ①제조용 - 무세 ②기타용 - 10 % (2) 2차관세 - 1kg당 15円	1951	사료용 - 무세(협정)
麥 芽	11·07	감 정	(1)上 同 - 무세 (2) 2차관세 - 1kg당 25円	1974	

* 第 13 條 1 項 : 配合飼料中 政令이 定한 製造에 사용하는 것.

表 3-21 韓國, 日本, 台灣의 穀物輸入制度 比較

	韓 國	日 本	臺 澳
輸入管理制度	• 輸入割當制(Quota)	自動承認(우수수 등 飼料用 穀物 및 大豆) 輸入割當(秈, 食用小麥과 大麥) 關稅割當(우수수(飼料用 除外))	• 輸入割當制(Quota)
購買方法	• 秧, 搾油用大豆: 隨意契約(貿易機能의 專門化 必要, 交涉力 必要) → 分散購買로 輸送費 上昇要因 指摘됨 • 우수수, 小麥, 食用大豆 를 비롯하여 大部分의 穀物을 必要에 따라 公開競爭入札(長期의 으로 安定的 供給線確保의 問題 와 品質考慮 미흡) → 82年부터 國內商社에 入札特惠(價格의 0.5%) → 1986. 3. 31 부로 鞏止	• 協商을 통해 大部分 隨意契約으로 輸入되며, 公開競爭入札方式, 海外開發輸入도 施行	• 우수수: 官民合同의 購買 사절단이 收穫期에 現地에서 50% 購買 → 穀物導入 安定化 • 우수수 50%, 大豆, 小麥은 自國內에서 競爭入札에 의해 輸入 이때 輸入共同委員會 또는 協會에서 一括 購入하여 會員社別로 割當하고 있음
輸入窗口	• 多 元 化	食糧用穀物(麥類): 食糧廳 飼料穀物: 組合貿易, 綜合商社 搾油用大豆: 組合商社에 依頼	• 一括輸入 → 貿易機能의 專門化와 規模의 經濟 圖謀
入札價格	• 穀物매이자, 綜合商社, 日本支店, 代理店등에 完全開放	• 自國商社로 限定	• 制限(日本系 綜合商社 進出 배제)
關稅率	기본 5% 밀 5% 우수수 10% 大豆 10%	기본 20% 밀 4.8엔/kg 우수수 10%(기본) 우수수 무세(감정)-(협정) 加工用: 關稅割當 1차: 무세 2차: 15엔/kg	기본 10% 밀 6.5% 우수수 5% 大豆 10% 7%
特 徵	• 購買行爲가 公開競爭入札에 치중 → 싼價格에 購入할 수 있으나 品質 및 수율에 問題點이 있음	• 自由競爭原理를 最大 活用하면서 國內食糧政策과 食糧의 安定的 確保에 重點	• 貿易機能專門化, 規模經濟追求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食糧確保라는 次元에서 先物市場에의 적극적인 참여, 海外開發輸入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日本의 穀物輸入制度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台灣에 비해 自由競爭原理를 최대한 活用하면서 國內食糧政策과 食糧의 安定的 確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食糧用穀物等 國民經濟에 중요한 品目은 食糧廳이 관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先物市場에의 참여 및 穀物輸入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도록 專門家의 育成, 政策의 支援의 強化, 政策의 長期評價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日本의 輸入制度는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制度들이 效率的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도의 樹立過程 때문으로 보여진다. 하나의 制度나 政策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長期間이 소요된다. 問題의 성격, 현상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한 對策과 政策手段 등에 대한 의견일치를 형성하기 위해 政府 內外의 수 많은 利害關係集團間에 협의와 조정이 계속된다. 일단 의견이 일치되면 다음 단계로 이를立法化 내지는 制度化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制度는 生物組織처럼 完璧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日本의 制度 그리고 그 運用과 決定過程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의 輸入制度는 日本의 制度 秩序內에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단지 日本輸入制度에 대한 시사점은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그 해결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 맞는 方法을 스스로 찾아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 開放化에 대처한 輸入政策

① 현재까지 輸入自由化推移

日本의 貿易自由化는 1960. 6 經濟企劃廳이 제시한 「日本의 貿易換自由化大綱」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推進背景은 先進國의 추세가 貿易自由化方向으로 강에 따라 日本만이 고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自由經濟體制를 표방하는 2개의 國際機構 즉 IMF (1952년

加入) 와 GATT(1955년 加入)에 각각 加入하게 되었고 日本의 經濟부 흥에 따라 미국이 貿易自由化壓力을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必要性과 要求에 의해 貿易自由化는 推進되었는데 그 추진 방법을 4 가지로 區分하여 ①早期에 자유화하는 것 ②가까운 장래에 自由化하는 것 ③가능한 한 빨리 自由化하도록 노력할 品目 ④自由化가 상당기간 곤란한 品目 등으로 나누어서 自由化計劃이 樹立되었다.

특히, 農林漁業部門은 國內의 他產業 또는 外國의 同種產業에 비해 현저한 過剩就業과 低生產性의 상태에 있어 일반적으로 自由化는 상당기간 곤란하고 農林漁業의 就業構造改善에 기여하는 部門 또는 所得形成上 중요한 부문에 속하는 主要品目은 장래에도 自由化가 지극히 곤란하다고 보지만 長期的으로는 自由化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基本對策에 대한 施策을 推進하여 國際競爭力의 強化를 도모하고 장래의 自由化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이 計劃에 따라 自由化는 점차 진행되어 1962년에는 Positive List 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1963년에는 GATT 11條國(國際收支를 이유로 輸入制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1964년에는 IMF 8條國(國際收支를 이유로 換銀行을 제한하지 않는다)의 이행과 더불어同年 OECD의 加入으로 日本經濟의 國際化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日本은 1967年以後 國際收支가 黑字基調로 전환되어 輸入自由化計劃의 實行은 그만큼 가속화됨과 동시에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1968年부터 캐네디라운드가 시작되면서 輸入自由化는 더욱 촉진되었다.

貿易自由化는 政府의 조심스러운 접근과 政策的 배려에 의해 영향이 작은 品目부터 漸進的으로 실시하고 영향이 큰 品目은 예고기간을 설정하여 自由化에 대한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행해졌다. 그와 동시에 고도의 경제성장이 달성됨으로써 예상되었던 악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農產物도 自由化計劃에 따라 자유화가 실시되었다 <表 3-22>. 1962년 輸入制限品目이 81개(關稅分類番號 4單位 기준)이었으나 1985년 현재 22개(8 단위 기준으로 보면 89개에 해당)로 감소했다. 農產物

輸入自由化는 日本農業에 영향이 작은 品目이 대부분이었고 補完對策을樹立해 가면서 自由化가 實施되었다. 예컨대 大豆는 不足拂제도의 도입과 함께 關稅 10 %의 從價稅를 4 엔 80 전 /kg 종량세로 인상하고, 바나나는 關稅 20 %를 基準稅率 30 %, 잡정세율 70 %로 인상하였으며 粗糖에 대해서는 糖價安定事業團을 設立하여 價格安定制度를樹立했다.

현재 殘存 輸入制限品目에 대한 輸入開放要求를 강력히 받고 있으나 日本政府는 農業의 근간이 되는 品目(쇠고기, 乳製品, 오레지, 과즙등), 地域特產物(전분, 낙화생, 파인애플통조림등), 200 해리 關聯品目(고등어,

表 3-22 日本의 農林水產物 自由化 推移 (關稅分類番號 4 單位 基準)

年 度	輸入制限品目數	主要 自由化된 品目	備 考
1960		커피원두, 牛脂	• 貿易自由化計劃大綱 決定 (1960. 6)
1961		新鮮野菜, 大豆	
1962	81	生糸 羊	•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1962.4)
1963	76	바나나, 조당, 커피	
1964	72	합판, 박판 및 합판용 단판	• IMF 8 條國으로 이행
1966	73		• 코코아분 自由化後 關稅分類의 變更으로 2 品目 增加 (1966. 4)
1970	58	마가린소트닝, 라미(모시풀), 레몬쥬스	
1971	28	포도, 마카로니類, 사과, 병동파인애플(無糖), 쏘세지, 豚, 豚肉, 당밀	
1972	24	햄, 베이컨, 정제당, 配合飼料	
1973	23	非食用 海草	
1974	22	麥芽	
1978	22 (部分自由化)	훈제청어, 동고오징어, 햄, 베이컨통조림	
1984	"	후르츠필프	
1985	"	豚肉調製品(牛肉을 包含하지 않는 것)	

정어리, 오징어 등의 多獲性大衆魚), 식판관련품목(米麥粉, 割米麥) 이라는 이유로 잔존수입제한품목에 대한 輸入開放을 유보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日本의 農產物 輸入自由化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시행됨으로써 自國內 農業生產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② 開放化와 對應戰略

貿易自由化過程 속에서 日本은 農產物自由化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對應政策을樹立해 왔다.

우선 農產物 貿易政策의 方向과 개방화에 대한 農業構造調整政策을 索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農業中 比較優位가 높은 部門은 特化하고 과잉되는 品目은 輸出努力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둘째, 比較優位가 높지 않더라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幼稚產業으로 育成한다.

세째, 食糧安保上 一定部門에 대해서 保護하고 一定水準의 自給率을 유지한다.

네째, 食糧安保上 또는 幼稚產業部門 이외에는 輸入自由化를 유도한다.

다섯째, 경쟁력 있는 農業을 위해 耕地規模의擴大, 研究開發, 農業基盤整備投資 등의 構造改善政策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같은 目的들을 달성하고 農產物輸入自由化에 대한 國內農業保護를 위해 다음과 같은 農產物價格制度를 실시해 왔다.

政府가 賣出·買入 및 輸入을 관리하는 管理價格制度(米穀, 담배), 일정 범위내에서 市場價格을 안정시키는 安定帶價格制度(치정식육, 누에고치)畜產振興事業團에 의해 賣出·買入 및 일괄수입을 통해 市場價格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安定指標價格制度(指定乳製品), 農產物價格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最低價格保障制度(薯類 및 薯類加工品, 전분, 사탕무우, 사탕수수, 설탕, 맥류),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기준가격과 生產者의 販賣價格의 差額을 교부금으로 지불하는 교부금

제도(또는 不足拂制度) (大豆, 油菜), 價格安定도모와 價格이 一定水準을 밀들 경우 그 差額의一部를 生產者 등이 적립한 기금에서 補填해 주는 安定基金制度(野菜, 肉用송아지, 계란, 加工原料用果實) 등이 실시되어 왔다.

한편 케네디 라운드로 인해 무역자유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유력한 保護手段이었던 關稅가 각국 공히 인하됨으로써 日本은 關稅를 多樣化, 정교화 함과 동시에 관세에 대신할 輸入制限方法으로 非關稅障壁을 강화함으로써 農產物輸入에 대해 自國農業을 보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의 非關稅障壁의 특징은 여러가지 法律 등에 의해 원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國民의 保健·衛生과 직접 관련되는 食品의 安全基準의 強化 및 日本特有的 文化的인 要素 및 商慣習으로 인한 輸入規制가 많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輸入割當時 輸入實績이 있는 소수 輸入業者에게만 割當量을 줌으로써 新規參與者(예컨대 감귤류, 牛肉)를 배척하며 割當總數量에 대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거나 분명치 않고 輸入業者는 반드시 割當量을 전부 輸入할 의무도 없어 輸出業者는 輸出計劃에 어려움을 받고 있어 數量割當制는 각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 복잡한 수입통관절차로 인해 輸入이 지연되거나 억제되고 있다. 예컨대 고기의 한조각마다에 등급이 표시되지 않으면 牛肉에 관한 제출서류로서는 완전치 못하다고 한다든지, 후루초카덴의 용기에 들어있는 제리의 수까지 명기하라고 요구한다든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성분을 관세직원이 불신하고 試驗所에 分析을 의뢰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거액의 보관료를 지불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세째, 표시기준의 독단성으로 日本의 輸入業者名을 製品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製品에는 일본도착후 개개의 輸入業者名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때문에 輸出業者側은 통관항에서 이 作業을 하는 專擔要員을 고용해야 하고 그 결과 코스트가 증가하게 된다.

네째, 加工食品이나 化學製品의 경우 衛生上 有害한가의 여부보다 國內生產이나 國內食品攝取패턴에 적당한가에 기준을 둘으로써 無害한 성분이라도 日本食生活에 생소한 것은 輸入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식품첨가

제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라도 日本人이 먹지 않는 성분을 함유한 食品은 日本市場에서 추방되고 있다.

다섯째, 日本社會 특유의 구조적 非關稅障壁이 존재하는데 이는 日本의 독특한 文化 또는 商慣習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본특유의 相互依存關係 내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輸出業體가 日本市場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多樣한 購買方法 및 國營貿易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價格制度와 非關稅障壁은 農產物 輸入自由화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 특히 輸入自由化에 대한 위기감이 뒤얽혀 自國農業保護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日本農業의 취약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환기됨으로써 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그 補完對策을 樹立하고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③ 農產物輸入開放에 대한 여론과 앞으로의 展望

1970년까지 日本農業은 높은 價格支持政策과 農業保護를 實施해 왔으며 農產物自由化는 農民의 반대를 의식하면서 선택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日本의 막대한 經濟收支黑字의擴大에 따른 통상무역마찰과 세계 農產物市場의 過剩이라는 外部的要因과 國際農產物價格下落과 엔고로 인한 內外價格差의擴大, 食糧危機에 대한 불안이 완화됨으로써 財界를 중심으로 農業비판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國際化時代를 맞이하여 經濟構造調整이라는 名目下에 행해지고 있다.

최근의 農政비판의 직접적계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農業不況이 국제적인 農業保護政策에 비판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따라 日本內에서도 농업비판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농정비판과 제언은 재계를 중심으로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이들의 배경을 살펴 봄으로써 최근 농정비판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제 1회. 농정비판은 1960년 전후 高度成長期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農業

만 따로 떼어놓고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農業도 產業構造近代化路線을 채택하여 社會政策의 農政에서 產業政策의 農政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2회 농정비판은 1965 ~ 67년 사이로 日本의 高度成長의 침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財界團體들은 農業基本法下의 農政은 지나치게 農業保護政策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히 米價政策, 식관제도, 農地流動化施策 등에 비판을 가하였다. 따라서 農政도 國際分業論에 입각하여 比較優位論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3회 農政비판은 1980년 이후 행해진 것으로 식관제도를 포함한 食品產業에 대한 문제와 國際化의 진전에 대응한 農業生產構造의 재편문제로서 농정비판의 촛점은 米穀政策과 土地問題로서 미곡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포된 價格政策, 構造政策, 生產政策 등 農政 모든 分野에 걸쳐 있다. 食品產業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原料 農畜水產物을 自由化할 필요가 있으며 農業生產構造再編問題는 總合研究開發機構(NIRA) 報告書와 農政審議會가 제출한 「21세기를 향한 農政의 基本方向」이라는 보고서에 구체화되어 있다.

이상의 농정비판은 재계를 중심으로 經濟政策의 轉換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현재의 농정비판은 農業의 기본적 역할에까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농정비판에 따라 1987년 3月 麥類 및 大豆의 生產者價格決定方式을 수정하고 쇠고기 가격 및 米穀의 生產者價格을 인하하고 있으며 農產物輸入制限措置의 대폭적인 緩和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食糧自給率의 維持 및 強化라는 지금까지의 農政 대신에 食糧供給의 擴大라는 측면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최근의 농정비판과 제언을 살펴 보면 1981년의 NIRA 보고서는 4개의 혁명(시장혁명, 토지혁명, 기술혁명, 인재혁명)의 必要性과 日本의 先進國型 產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원리의 도입과 政府役割의 축소가前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IRA 報告書以後 1986년 나카소네수상의 私的諮詢機關에서 제출한 소

위 前川보고서는 방대한 무역흑자의 지속에 따른 무역마찰의 激化를 줄이고 國際協力を 도모하기 위해서는 內需主導型 經濟成長과 產業構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 정부자문기관인 農政審議會가 제출한 「21세기를 향한 農政의 기본방향」이라는 報告書로서 그 基本方向은 國際化時代에 적합한 農業政策의 實現에 두고 있다. 農政轉換과 關聯하여 주목되는 것은 農業의 體質強化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農業의 確立, 國內外價格差의 시정, 農業保護施策의 강구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經營規模의 擴大와 中핵농가의 育成을 통한 生產性이 높은 奉作農業의 確立, 過剩米 및 自主流通米의 조정, 보관, 매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식관제도의 개선, 價格政策의 改善 등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농정비판과 제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日本의 막대한 貿易收支黑字가 農產物自由化에 의해 오늘날의 무역마찰이 전혀 해소될 수 없고 農業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무시한 것이며 農業構造調整의 目標가 非現實的이고 農產物價格引下가 農업구조조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또한 農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雇傭 및 社會保障, 土地問題, 財政力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日本의 農業構造改革은 農產物市場開放이라는 外部의要因을 계기로 해서 財界가 주도하고 여기에 一部勞動團體가 가세하고 평론가들에 의한 왜곡된 비판이 매스콤을 통해 일반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農業構造改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農業의 擔當者인 農民이 소외된 상태에서는 수행될 수 없는 문제이다. 農業에 구조적모순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日本資本主義의 구조적모순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실제 日本의 非農業部門 특히 重化學工業의 지나친 비대화가 農業과의 均衡을 상실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日本農業構造改革은 日本資本主義의 改革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第 4 章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入 및 그 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1. 輸 出

가.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動向

우리나라 總 農林水產物의 輸出은 1970 年以後 1979 年까지 계속하여 증가하여 19 억불 가까이 되었으나 그 이후 1985 年까지는 間斷없이 감소하여 14 억불로 激減하였다. 그러나 1986 年 적극적인 農林水產物 輸出政策 으로 1986 年에는 1985 年 對比 무려 40 % 가까이 輸出이 伸張되어 다시 19 억불에 접근하였다. 이는 주로 총 수출의 70 %를 차지하는 水產物 輸出이 1985 年 對比 4 억불이상 增加한 것에 힘입은 바 크며, 農產物과 林產物輸出도 각각 4 천만불, 1 억불이상 증가하였다 <表 4-1>.

우리나라 農林水產物의 產品別 또는 商品別, 國家別, 年度別의 輸出趨勢와 變動要因에 대한 心層的인 分析은 「農林水產物 輸出增大方案에 관한研究」,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에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86 年 위의 研究事業에서 다루었던 11 個輸出戰略品目(사과, 배, 화훼류, 표고버섯, 깐밤, 생사, 피조개, 미역, 갯지렁이, 굴 및 정어리통조림)과 本 研究에서의 對象品目(대구의 란, 삼치, 게, 오징어, 문어, 豚肉, 연어, 송

表 4-1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推移

單位：百萬弗

區分 年度	總輸出	農林水產物		農產物		畜產物		果實類		菜蔬類		農產 高조립	構成比	調製 食料品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1)	(2)	(2)/(1)	(3)	(3)/(2)	(4)	(4)/(3)	(5)	(5)/(3)	(6)	(6)/(3)	(7)	(7)/(3)	(8)	(8)/(3)	
1970	835	264.4	31.7	64.3	24.3	0.3	0.0	1.1	1.7	0.2	0.3	3.4	5.3	3.0	4.7
1971	1,068	328.7	30.8	63.1	19.2	0.5	0.1	0.5	0.8	0.4	0.6	5.2	8.2	2.9	4.6
1972	1,624	425.2	26.2	75.6	17.8	7.5	9.9	1.9	2.5	0.4	0.5	6.6	8.7	2.1	2.8
1973	3,225	744.7	23.1	132.7	17.8	7.3	5.5	2.4	1.8	1.4	1.1	20.7	15.6	4.5	3.4
1974	4,460	694.5	15.6	133.2	19.2	17.4	13.1	3.4	2.6	2.8	2.1	23.2	17.4	7.8	5.9
1975	5,081	931.3	18.3	208.8	22.4	35.9	17.2	3.1	1.5	4.7	2.3	22.3	10.7	10.0	5.1
1976	7,715	1,182.8	15.3	176.1	14.9	34.6	19.6	3.4	1.9	8.9	5.1	36.9	20.9	9.1	5.2
1977	10,046	1,585.5	15.8	275.3	17.4	48.1	17.5	3.9	1.4	8.3	3.0	53.3	19.4	19.8	7.2
1978	12,711	1,690.1	13.3	281.2	16.6	35.8	12.7	7.5	2.7	12.5	4.4	59.9	21.3	22.6	8.0
1979	15,055	1,939.6	12.9	266.0	13.7	45.7	17.1	7.1	2.7	14.8	5.6	50.0	18.8	21.3	8.0
1980	17,505	1,725.4	9.9	225.0	13.0	25.8	11.5	15.3	6.8	23.5	10.4	33.2	14.8	17.9	7.9
1981	21,254	1,863.8	8.8	182.0	9.8	23.7	13.0	15.5	8.5	21.5	11.8	29.4	16.2	21.2	11.6
1982	21,853	1,502.3	6.9	154.8	10.3	11.8	7.6	11.6	7.5	18.5	11.9	23.0	14.9	22.8	14.7
1983	24,445	1,415.4	5.8	154.6	10.9	11.7	7.6	5.8	3.8	19.7	12.7	25.7	16.6	25.6	16.6
1984	29,245	1,472.4	5.0	216.8	14.7	14.6	6.7	5.2	2.4	19.1	8.8	23.5	10.8	32.2	14.9
1985	30,283	1,397.6	4.6	164.0	11.7	25.0	15.2	6.0	3.7	13.0	7.9	21.0	12.8	39.0	23.8
1986	34,714	1,925.0	5.5	208.0	10.8	23.0	11.1	12.0	5.8	12.0	5.8	24.0	11.6	53.0	25.5

區分 年度	生絲類				水產物				魚類				魚類 甲殼類 軟體動物				林產物				非 林產物		木材 及其他 林產物	
	生絲類		其他農產物		水產物		魚類		魚類 甲殼類 軟體動物		林產物		非 林產物		木材 及其他 林產物		非 林產物		木材 及其他 林產物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⑨	⑨/(3)	⑩	⑩/(3)	⑪	⑪/(2)	⑫	⑫/(11)	⑬	⑬/(11)	⑭	⑭/(2)	⑮	⑮/(14)	⑯	⑯/(14)									
1970	50.9	79.2	5.4	8.4	90.1	34.1	-	-	-	-	110.1	41.6	1.4	1.3	108.7	98.7								
1971	48.0	76.1	5.8	9.2	115.0	34.9	-	-	-	-	150.6	45.8	1.7	1.1	148.9	98.9								
1972	52.2	69.0	4.9	6.5	152.6	35.9	-	-	-	-	197.0	46.3	3.2	1.6	193.8	98.4								
1973	73.0	55.0	23.3	17.6	260.0	34.9	-	-	-	-	352.0	47.3	6.6	1.9	345.4	98.1								
1974	58.9	44.2	19.7	14.8	290.9	41.9	-	-	-	-	270.3	38.9	3.9	1.4	266.4	98.6								
1975	120.6	57.8	11.6	5.6	428.7	46.0	-	-	-	-	293.7	31.5	9.9	3.4	283.8	96.6								
1976	73.1	41.5	10.1	5.7	567.4	48.0	268.9	47.4	298.5	52.6	438.6	37.1	9.6	2.2	429.0	97.8								
1977	125.2	45.5	14.7	5.3	703.1	44.3	621.9	88.5	81.2	11.5	606.9	38.3	17.9	2.9	589.0	97.1								
1978	96.9	34.5	46.0	16.4	752.0	44.5	562.5	74.8	189.5	25.2	656.9	38.9	46.1	7.0	610.8	93.0								
1979	81.7	30.7	45.4	17.1	936.0	48.3	741.4	79.2	194.6	20.8	737.6	38.0	25.3	3.4	712.3	96.6								
1980	65.3	29.0	44.0	19.6	871.4	50.5	623.3	71.5	248.1	28.5	629.0	36.5	24.2	3.8	604.8	96.2								
1981	26.0	14.3	44.7	24.6	1,050.8	56.4	765.6	72.9	285.2	27.1	631.0	33.9	22.8	3.6	608.2	96.4								
1982	34.0	21.9	33.1	21.4	946.8	63.0	675.9	71.4	270.9	28.6	400.7	26.7	13.4	3.3	387.3	96.7								
1983	38.9	25.2	27.2	17.6	907.4	64.1	635.7	70.1	271.7	29.9	353.4	25.0	41.7	11.8	311.7	88.2								
1984	42.9	19.8	79.3	36.6	955.2	64.9	660.1	69.1	295.1	30.9	300.4	20.4	33.1	11.0	267.3	88.9								
1985	20.0	12.2	40.0	24.4	970.0	69.4	654.8	67.5	315.2	32.5	263.6	18.8	43.5	32.1	178.9	67.9								
1986	31.0	14.9	53.0	25.5	1,384.1	71.9	883.9	63.9	500.2	36.1	333.0	17.3	42.9	12.8	290.1	87.2								

資料：農林水產部，「農政主要指標」，1987

水產廳，「水產統計年報」，各年度

山林廳，「林業統計要覽」，1987

어, 참치, 녹차, 백삼, 뱃장어), 그리고 최근 輸出有望品目으로 각광받는 김치 등의 品目에 관해서만 그 輸出推移를 살펴 보았다 <表 4-2>. 이들 品目들은 輸出競爭力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수출경쟁국에서 많이 수출되며 우리나라 주요 輸出市場인 日本에서 많은 額數를 수입하는 戰略品目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1980 ~ 81년 平均輸出量 對比 2배이상 輸出이 증대된 品目으로서는 쇠지고기 2배, 사과는 무려 12배, 조개 3배, 굴 4배이상, 연어통조림 3배, 밤 4배, 切花 2배以上 등이다. 반면 輸出이 감소된 品目으로서는 뱃장어, 삼치, 계, 고등어통조림, 김치, 생사, 송이버섯, 떡갈잎·멍게잎 등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品目은 輸出의 일관성이 없고 變動이 심하므로 위와 같은 輸出增加率은 큰 의미가 없다.

나. 農林水產物 輸出增大上의 問題點과 輸出戰略品의 開發

우리나라는 新興工業國에서 흔히 나타나는 工業化 과정에 있어서의 勞動力不足과 農村勞動力의 都市로의 移動으로 인하여 農村에서는 심한 人力難과 高賃金 현상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輸出商品의 生產原價는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勞動集約的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農林水產物의 輸出은 採算性이 낮아지고 있으며, 後發 開途國의 輸出競爭으로 國際競爭力이 날로 弱化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지금까지 農林水產物의 輸出은 國內生產의 변화와 國內 農林水產物 價格의 變動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일관적인 輸出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輸出業體는 零細하고 非專門的인 경우가 많으며, 稼動率과 輸出採算性이 저조하고 研究開發을 통하여 新商品을 開發하거나 生產原價를 줄이려는 의욕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農民은 輸出商品의 生產時 商品의 規格, 品質, 栽培管理에 소홀한 점은 대만의 경우에서와 같다.

우리나라의 農林水產物은 70 ~ 90 %가 日本과 美國市場에 輸出되고 있어 극도의 輸出市場 偏重化 문제를 안고 있는데 輸出業者들간에 限定된 海外需要와 市場을 占有하기 위한 과당경쟁과 덤핑행위가 자행되어 제값을 못 받을 경우가 많고 輸出秩序가 혼란되어 있는 예가 허다하다.

表 4-2 年度別、品目別 輸出實績

單位: ton, 千 \$, %

品目(CCCN-No)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 85+86 /80+81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돼지고기(0201-0300)	332	946	2.2	7.6	0.93	6.1	1.57	8.44	283.4	1,030.1	172.4	623	869.7	4,433.8	212
果 質 類															
사 과(0806-0100)	8.1	17	615	314	1,643.2	840	1,038.4	660	3,458	1,974	2,831	2,281	5,516	4,362.8	1,240
배 (0806-0201)	2,323	1,756	5,161	3,831	7,434	5,305	2,361	1,990	2,471	1,828	2,639	2,490	5,325	4,893	6.4
水 產 物															
산 장 어(0301-0301)	4,191	12,677	3,516	16,921	2,112	7,994	1,669	7,101	1,347	4,651	1,336	4,560	1,839	7,548	△ 59
삼치(0301-0502,0611)	7,321	12,303	4,841	12,585	4,248	10,545	8,798	17,670	6,057	10,093	3,320	7,150	6,784	16,070	△ 17
냉동참치(0301-0601)	117,456	201,135	106,924	245,654	80,743	180,771	187,103	151,461	87,547	171,943	81,872	143,339	182,388	200,969	18
냉동어란(0301-0613)	2,480	7,056	2,111	12,028	5,688	28,864	5,783	24,260	5,838	22,844	6,783	31,435	7,421	46,424	209
산 문 어(0303-0202)	687	2,782	1,210	4,863	990	3,535	766	1,495	936	5,628	1,355	4,439	1,081	5,506	28
산 조 개(0303-0206)	6,807	16,456	13,249	32,322	17,525	38,271	28,199	40,127	38,633	45,605	38,054	43,616	47,604	70,148	327
산 게(0303-0208)	3,386	10,656	3,563	12,484	2,333	8,173	2,187	9,175	2,023	8,086	2,380	9,085	4,138	17,463	△ 6.2
냉동오징어(0303-0303)	11,849	26,555	7,883	23,258	20,534	30,899	16,315	36,289	8,925	22,586	10,566	26,825	18,969	45,596	50
굴 (0303-0508)	324	991	836	2,365	258	540	773	2,228	1,087	3,045	2,304	6,698	3,956	11,617	440
냉동송어(0301-0609)	289	150	185	753	210	388	883	1,187	1,631	2,305	462	641	229	364	46
미 역(1208-0106)	24,633	29,719	27,351	33,814	23,523	30,080	24,837	31,291	27,136	35,995	27,868	37,834	27,276	39,460	6.1

品目(CCCN-No)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 85+86 /80+81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水 產 통 조 림															
굴통조림(1605-0101)	3,086	9,154	3,480	10,356	5,480	17,077	7,028	21,053	4,414	13,395	7,100	23,358	11,657	39,068	186
고등어통조림(1604-0102)	950	1,667	880	1,579	1,061	1,664	1,870	2,589	1,740	2,221	590	924	1,048	1,472	△10.5
연어통조림(1604-0105)	45	232	687	2,595	1,117	3,171	1,006	2,785	1,219	3,624	1,382	3,754	1,582	4,860	305
범(0805-0300, 2006-0207)	5,830	22,461	45	189	7,731	24,091	11,988	37,350	14,310	43,930	12,638	35,126	16,659	50,814	399
김 치 (2002-0101)	2,183	2,979	2,967	4,057	3,197	3,536	5,011	5,241	1,138	1,087	799	867	621	636	△ 72
인 삼 (1207-0201, 0215, 0299 1301-0801-0804 2107-0201~0205, 0299 0301, 0399)	696	63,263	651	57,629	702	66,771	713	63,455	1,453	83,354	835	71,735	1,090	78,365	44
生 縱 類 (5001-5005, 5007)	1,685	65,315	1,207	25,963	1,001	33,979	1,684	38,950	1,929	42,929	805	19,530	905	30,664	△ 41
버 셋 류															
표고버섯(전조) (0704-0101)	683	9,818	308	5,369	202	2,664	430	9,123	354	6,301	597	8,922	732	11,021	34
송이버섯(전조) (0704-0102)	12	345	3	36	0.6	36	7.9	209	0.04	1.2	6.2	106	0.8	15	△ 53
기타버섯(신선, 냉동) (0701-0402)	154	7,426	376	15,547	231	9,504	958	25,937	586	20,623	1,051	30,902	254	27,295	146
화 휘 류															
기타의 산식물(묘목, 선인장, 목단苗, 0602-0499)	1,913	96	205	16	197	78	234	36	346	57	557	97	5,888	268	204
절 화(0603-0100)	-	-	2.2	25.5	-	-	1.3	11.4	34.8	103.4	4.0	10.8	3.8	33.4	255
떡갈잎, 멍개잎 등 기타 (0604-0000)	1,317	2,595	1,104	2,524	982	2,001	1,000	2,273	1,247	2,681	1,150	2,335	606	1,180	△ 28

* 1980, 81 兩年對比 1985, 86 兩年物量 增加率

資料：關稅廳，貿易統計年報，各年度

農林水產物은 工產品과는 달리 그 產業과 商品의 고유특성으로부터 초래되는 輸出上의 問題點을 또한 갖고 있다.

우선 農林水產物의 生產은 自然條件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變動이 심하고 이는 1次農林水產物을 原料로 사용하는 加工輸出業體의 原料需給 및 價格不安定의 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農林水產物의 生產은 季節的이므로 일시생산, 洪水出荷로 일시수매를 해야 하니 加工과 輸出은 年中 分割되므로 工產品에 비하여 資金回轉이 낮고 資金壓迫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農林水產物은 變質可能性이 높으므로 品質管理에 어려움이 있으며 運送上에도 나름대로의 問題點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農林水產物은 政治的인 배려가 깊은 品目으로서 輸入國에서의 輸入規制가 강한 편이며, 規制緩和에 대한 展望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農林水產物 輸出時 직면하고 있는 問題點과 農林水產物 特有의 隘路點을 서술하였는데 앞으로 輸出計劃을樹立하고 輸出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隘路點을 타개해 가는 方向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農林水產物 輸出增大를 위해서는 첫째로 새로운 輸出戰略品을 개발하여 海外需要를 창출하고 輸出競爭國의 추격을 따돌리는 일과 둘째로는 기존의 輸出農林水產物의 質을 높이거나 生產原價節減, 制度改善 내지 수출마케팅活動 등을 통하여 輸出競爭力を 提高시켜야 할 것이다. 後者에 관한 사항은 다음 節에서 言及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輸出戰略品 開發에 관한 몇가지 指針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점차 임금이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資本과 技術이 풍부해지는 賦存資源與件의 變動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勞動集約의 農林水產物의 生產과 輸出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존 輸出商品의 資本裝備率을 높이거나 점차 資本과 技術集約의 高級商品의 開發로 輸出商品構造의 轉換이 必要하다. 이는 우리나라 内部經濟與件變動에 따른 生產費用 最少化의 原理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主要 輸出競爭國이 아직도 임금이 싼 經濟開發 初期段階에 있고, 主要 輸出市場은 所得水準이 매우 높고 상품의 價格보다는 質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所得彈力性이 높은 高級食品을 需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商品

이 研究, 開發에 의하여 生產, 輸出이 되면 그에 대한 技術은 점차 보편화, 진부화(obsolescence) 과정을 통하여 相對的 比較優位가 國家間에 移轉되는 工產品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적극적인 海外市場과 嗜好, 食性에 관한 資料와 情報를 수집하고 研究, 開發에 아낌없는 投資가 행해져서 좀 더 質이 높고 資本과 技術集約的인 加工食品等의 輸出戰略品에 注力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第 2 章에서의 分析에서와 같이 農產物貿易에 영향을 주는 要因은 勿論 價格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貿易障壁, 國家間의 貿易選好度 그리고 商品의 相異한 質에 의해서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어떠한 商品이 外見上으로는 동일한 品目일지라도商品의 質이나 原產地에 따라 輸入國의 需要行態가 다르므로 海外消費者가 선호하는 쪽으로 상품의 質을 提高하거나 우리나라가 原產地 임으로 해서 海外 豈價가 높은 品目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 農林水產物 輸出增大方案

위에서는 農林水產物 輸出上 우리나라가 처한 諸般問題點과 農林水產物 고유의 애로점을 제시하고 輸出增大를 위한 戰略品開發과 推進方向에 관하여 言及하였다. 다음에는 기존상품을 기존시장에 수출함에 있어 직면하고 있으며 비교적 短期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輸出增大方案을 열거하였다.

① 農林水產物 輸出의 一貫性提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은 国내의 生產不安定에 대한 價格의 安定化라는 次元에서 일관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海外 輸入國의 貿易政策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출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輸出의 일관성이 없었음으로 對外的으로는 輸入先으로서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對內的으로는 輸出品의 生產, 加工 그리고 輸出業에 대한 전문지식의 集積이 어려웠으며, 一時業者들에 의하여 수출이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主要 品目別로 長期的인 輸出計劃과 輸出政策을 早期에 수립하여 國內生產과 作況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출이 가능케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꾸준한 農林水產物 輸出을 위해서는 對美輸出을 위한 안성, 평택의 배 輸出栽培團地의 指定에서와 같이 輸出用 生產團地를 지정하고 內需用과 輸出用을 區分하여 需給·管理하여 안정적으로 原料供給體系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對外의 要因에 의한 輸出의 非一貫性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輸入國의 貿易政策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게 商務外交活動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輸入國의 輸入規制에 대하여 事前의으로 신속히 대처하고 固定去來線(양송이 : 미국 EC, 밤 : 일본, 사과 : 대만)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輸出市場調查團 파견과 수출상담 및 情報蒐集 등을 통하여 輸出市場調查活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海外 有關團體인 대만연합공사(양송이), 日本통조림협회(수산통조림), 일본 밤輸入分科委員會(밤), 대만합작사(과실류) 등과 진밀히 협조해야 하며, 日本, 台灣, 美國 등지에 고정정보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② 輸出 農林水產物의 品質提高

農林水產物은 변질이 쉬우므로 原料購入上의 流通體制를改善(특히 정어리)하여 新鮮度維持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輸入國의 品質要求와 規制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미국의 FDA 기준에 대한 教育과 品質管理技術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김치의 경우 마늘냄새, 매운맛 등을 제거하고, 짜고 쟁거운 등商品의 不均一性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包裝方法의 高級化, 多樣化, 冷凍施設의 補完, 酸化防止를 위한 容器의 開發 등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도 比較優位를 갖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4 억불이상 수출하는 쇄지고기의 경우는 台灣과는 달리 輸出部位(안심, 등심, 어깨등심, 허벅지살)가 多樣化되어 있지 못하여 屠體에 대한 等級制가 실시되지 않아 輸出增大에 어려움이 있다. 花卉輸出에 있어서는 無菌苗의 生產普及으로 品質을 向上하고(카네이션), 밤加工時의 保存첨가제, 果實類 品質高級化를 위한 위생봉지 共同購入, 끌판

지상자 品質向上, 一流商品指定과 支援強化(굴, 참치통조림, 깐밥 및 밥통조림, 사과, 배 등)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輸出商品의 新鮮度와 品質維持를 위해서는 항공편이용의 확대 및 항공료 인하 그리고 밤의 경우 선박증편, 신도착지개발(오오사카) 등도 요구되고 있다.

水產物의 경우에 있어서는 활어운반기술과 裝備開發이 시급하며 특히 円高와 貨金引上으로 인하여 日本의 加工水產物 輸出上의 國際競爭力이 弱化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品質을 고급화시킨 高次水產加工品을 생산하면 日本이 개척한 시장에 침투(참치통조림, 게맛살 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輸出市場 多邊化

農林水產物 輸出市場의 多邊化는 無作爲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海外市場에서의 農林水產物 貿易構造, 消費者嗜好, 貿易政策, 輸出競爭國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試驗輸出段階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工產品輸出에서와 같이 事前的인 市場調查와 情報蒐集에 대한 投資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市場調查團의 파견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輸出市場의 多邊化를 위해서는 單一品目과 品質로 세계시장 모두에 침투한다는 관념을 불식하고 地域別로 또는 輸入國家別로 特化商品을 개발함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미국에 휘렛통조림, EC에 참치통조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정어리통조림 등이 그것이다.

④ 輸出秩序의 確立

農林水產物 輸出時 중요한 것은 輸出物量이 增大되고 그로 인한 輸出收益性도 함께 제고되어야 바람직한 것이지 輸出은 많이 했으나 收益性이 낮아진다면 적게 輸出한 것 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輸出市場이 限定, 偏重化되어 있고 群小輸出業者가 과당경쟁하는 관계로 제값을 못받고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輸出秩序가 극도로 혼란한 예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輸出自律指導價格制(양송이통)

조림, 홍합, 반지락통조림, 깐밥, 사과, 배)와 輸出自律規制(깐밥, 사과, 배) 制度가 바람직하며, 수출창구 정비가 요청된다.

또한 輸出價格의 協議調整, 自律指導價格 및 規制事項遵守, 不公正去來行爲배제 등을 위하여 輸出秩序委員會와 같은 團體의 役割이 活性化되어야 할 것이다.

⑤ 輸出支援의 擴大

우선 新市場 및 新規바이어 確保, 連繫貿易推進등 海外需要의 擴大를 위해서는 輸出組合과 農水產流通公社가 合同으로 輸出支援體制를 구축하여 수출알선사업을 확대함이 요구된다. 또한, 輸出業者の 채산성제고를 위해서는 공관등 原副資材를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供給하고 流通構造를改善하여 機械設備의 部品은 共同購買하여 供給함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는 農林水產物 輸出支援資金制度를 品目別 支援에서 業體別 支援으로 後支援에서 先支援으로 개선하고 대출기관의 일원화와 適期支援 함께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輸出農林水產物의 新鮮度 維持와 신속한 輸出을 위해서는 輸出檢查를 면제하거나 自體檢查化가 推進되어야 하며 檢查手數料引下 또는 廢止를 관계자들은 건의하고 있다.

2. 輸入

가. 效率的인 輸入管理制度의 提示

세계 대부분의 國家들은 農業이 가지는 特殊性 때문에 農業保護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貿易去來에 있어서도 현재 많은 國家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輸出보다는 輸入에 대한 規制가 많으며 특히 自國內 農業保護를 위한 輸入規制障壁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輸出入管理制度는 貿易去來法을 根幹으로 하여 外換管理法, 關稅法으로 輸出入을 管理하고 있다. 貿易去來法은 商工部長官으로 하여

금 매년 輸出入 期別公告를 통하여 品目別 輸入數量 또는 金額의 制限 規格 또는 地域의 制限 등에 관한 事項을 綜合的으로 規制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各種法律規定에 의한 輸出入要領의 統合告示」(명칭 변경 전 약칭 「特別法」)을 지칭하며 以下 “각종 法律의 規定”이라 한다. 여기에는 糧穀管理法, 飼料管理法등 農產物은 17 개)의 적용규정을 두어 輸出入 期別公告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나라 輸出入管理制度를 살펴 보았으나 거세어지는 農產物 輸入開放壓力에 따른 國內農業保護問題, 협소한 耕地面積, 과밀한 人口등 現與件과 지금까지의 農產物 輸入趨勢로 보아 많은 農產物이 輸入되어 왔으며 앞으로 農產物 輸入量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 輸出入管理制度가 제모양을 갖추고 제기능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增大되는 農產物輸入과 관련하여 效率的인 農產物 輸入管理制度가 필요한 실정이다.

農產物 輸入管理制度의 改善方案은 크게 2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輸入을 規制하고 있는 關稅制度, 輸入추천제도등 現制度를 補完하여 再定立하는 것이고 둘째는 輸入制度下에서 될 수 있는 한 값싸고 費用이 적게 들며 적기에 적정량을 輸入할 수 있도록 安定的이고 效率的인 輸入方法을 강구하는 것으로 區分해 볼 수 있다.

먼저 현 輸入制度를 補完할 것으로

첫째, 日本의 關稅制度처럼 정교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第4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日本은 農產物 輸入開放化와 관련하여 關稅賦課方法을 해당품목의 특성에 따라 從價稅, 從量稅, 從價從量選擇稅, 從價從量並用稅, 슬라이드關稅, 季節關稅, 差額關稅, 關稅割當制度등 특수한 관세를 포함하여 적절히 운용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從價稅만 적용되고 있어 단순할 뿐만 아니라 保護機能을 발휘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특히 國會가 關稅率變更權을 일정한 條件과 범위내에서 行政府에 위임하여 經濟與件의 變動에 따라 신축적으로 對應할 수 있도록 彈力關稅를 규정하고 있으나 農產物에 실제 적용한 사례는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앞으로 彈力關稅의 活用을 提高하고 關稅制度의 정교화, 다양화의 노력이 요

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國內生產과 連繫된 輸入管理政策을 施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거세어지는 農產物 輸入開放壓力을 이겨내고 國內農業 및 農民을 保護하기 위해서 農畜產物의 輸入을 재벌가공업자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政府投資農民團體 또는 公共기관이 일괄 취급하여 그 이익을 國內農業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즉 輸入을 自由化하되 輸入賦課金을 부과하여 生產者를 保護하고 輸入物量을 增大시켜 輸入開放壓力에 대처하고 현재의 輸入割當制度로 인한 制度的, 經濟的 非效率性을 제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摻油用大豆 및 製粉의 경우 輸入加工에 따른 利益을 國內 콩, 밀 生產의 競爭力強化에 쓰이도록 直·間接措置가 취해져야 하고 養豚, 養鷄 등은 比較優位가 있어 輸出產業으로 育成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飼料產業의 合理化가 必要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國際穀物價格이 약 40% 下落했으나 國內飼料價格은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製粉, 飼料, 摻油用大豆의 경우 穀物 Quota에 의한 수입추천제가 一部 大企業에게 輸入利益이 귀속돼 온 것을 農業部門으로 환원하고 그 非效率性으로 인해 나타난 產業發展에 대한 逆機能을 제거할 수 있도록 國內生產과 連繫된 輸入管理制度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째, 國民健康과 衛生을 위해 檢疫 등과 같은 非關稅障壁을 정교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루파이라운드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農產物輸出國은 關稅引下 및 非關稅障壁의 철회 또는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非關稅障壁을 强化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서 第4章에서 본 日本의 特유한 非關稅障壁처럼 우리나라도 衛生 및 檢疫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國內消費者 및 生產者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네째, 國內農業政策과 輸入政策이 補完的인 關係로 완벽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制度樹立過程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日本의 경우 하나의 制度나 政策을樹立하기 위해서는 問題의 性格 현상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한 對策과 政策手段 등에 대한 의견일치를 위해 政府內外의 수많은 이해관계집단이 長時間의 協議調整을 거친 후 비로소立法化 내지 制度化됨으로써 그 機能과 運用이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農產物 輸入開放에 앞서 農民대변기관을 強化하여 우리 與件에 맞는 合理的인 價格 및 輸入制度의 補完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정적이고 效率的인 輸入을 위해 購買方式의 改善과 安定的 輸入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農產物을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方法에는 公開競爭入札, 隨意契約, 海外開發輸入, 長期契約 그리고 先物市場에의 參與 등이 있는데 公開競爭入札은 農產物 需給事情이 안정되어 있고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할 때 유리한 購買方式인 반면에 隨意契約은 交涉力(bargaining power)이 있을 때 유리한 구매방식이다. 그리고 長期 購買方式, 海外開發輸入, 先物市場 등의 購買方式은 農產物을 安定的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큰 長點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주로 택하고 있는 方式은 公開競爭入札方式이며 米穀과 油用大豆만이 隨意契約方式이 행해지고 있다.

公開競爭入札方式은 國際市場에 대한 對應에 있어 硬直性이 있고 外貨節約을 위해 炫 가격에 購買를 하다 보니 製品의 收率과 品質面이 소홀히 되고 價格競爭이 유리한 地域에 편중됨으로써 輸入先이 偏重되어 온 短點이 있다.

따라서 公開競爭入札方式의 短點을 補完하고 輸出入外交의 強化에 힘쓰는 동시에 先物市場 등의 參與를 위해 專門家의 育成, 所要資金의 政策支援, 先物去來代行機關의 利用促求, 去來結果의 長期評價 등이 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나. 輸入開放壓力에 대한 對處方案

우리나라는 日本과 台灣의 경우에서와 같이 人口가 많고 土地가 적게 賦存되어 있으므로 國際分業과 比較優位에 입각한 貿易原理에 의하면 勞動과 資本集約의 工產品을 輸出하고 農產物을 輸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經濟發展段階上 1次產業 為主에서 製造貿易業으로의 急速한 전환과정에 있으며 그에 대한 資源의 產業間調整이 채完了되지 못한 상태하에 있다. 工業為主의 經濟成長으로 勞動力이 不足하고 賃金이 상

승함으로써 많은 農村勞動力이 都市로 移住하였지만 대개의 農漁民은 職業訓練과 技術不足으로 工業部門에 就業이 용이치 못한 과도기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더우기 많은 品目의 경우 工產品에서와 같이 輸入開放되어 農民이 選擇할 作目이 극도로 制限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일관성있고 뛰어난 農業 내지 農業構造調整에 관한 計劃의樹立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우리나라의 對美, 對EC 등의 貿易收支黑字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과 더불어 세계각국의 國內農業保護政策과 低經濟成長에 의한 農產物 需要不振으로 세계 農業不況이 겹쳐 거센 農產物 輸出國家의 市場開放要求를 外面할 수 없는 立場이나, 만약 開放을 加速化했을 경우에는 위에서와 같은 內部的 어려움 즉 產業再編成 및 農業構造調整問題와 農漁民所得保障問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人口增加와 食糧需要增大, 食品消費패턴의 變化, 國內生產與件의 變化로 인한 農產物輸入과 점차적인 開放화에는 앞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關稅, 非關稅政策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國內 農漁業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해야 할 것이며, 農업구조 조정과 產業再編成으로 開放에 의한 負의 效果를 극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各國이 比較優位의 原理에 의하여 各國이 特殊商品의 生產에 特化하고 貿易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農產物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계각국이 예외없이 國內 農業保護政策으로 인한 과잉생산문제를 貿易相對國에 轉稼함으로써 國際貿易秩序는 왜곡되고 貿易分爭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農產物市場 開放壓力을 받음에 있어 우리는 開放壓力의原因是 무엇이며 農產物輸出國의 立場과 論理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세밀히 파악하여 效率的으로 對處해야 될 줄로 믿는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와서 農林水產物 輸入開放壓力을 받게 되는 要因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農林水產物國家 특히 美國과의 貿易黑字增大로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農產物市場開放壓力이다. 둘째로는 위에서와 같이 세계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예외없이 國內 農業保護政策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農業貿易障壁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市場開放에 힘

써야 한다는 인식이다.

우리나라는 主要通商國인 미국과 1985년에는 43억불, 1986년에는 76억불에 달하는 貿易黑字를 기록하였으며 1987년에는 對美貿易黑字가 더욱 增大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끊임없는 農產物輸入開放壓力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總 農林水產物輸入은 20억불 내외이고 1983 ~ 1985년의 경우 대략 총 農林水產物輸入의 50%인 10억불정도를 미국에서 輸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美國으로부터 農產物輸入을 倍增시킨다 해도 對美貿易黑字改善에 큰 도움을 못 줄 것은 자명하다. 어떤 品目에 있어서는(예: 쇠고기) 輸入開放이 된다 해도 美國의 市場占有率이 늘고 輸出이 증가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제3의 輸出競爭國에만 유리하고 國內 農民所得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對美貿易協商에 임함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상대국을 설득해야 하며 對美貿易黑字의 根本原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받는 農產物輸入開放壓力의 근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國內農業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근래에 와서 世界各國은 세계의 農業不況과 農產物貿易의 不振을 지나친 農業保護主義 結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계각국이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農業政策介入 척도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目的으로 美農務省에서는 조슬링(Josling)의 모델을 수정하여 生產者補助相當額(Producer Subsidy Equivalent : PSE)와 消費者補助相當額(Consumer Subsidy Equivalent : CSE) 개념을 도입하고 計量化하여 國家間 또는 品目別로 상이하고 복잡한 農業 및 農產物貿易에의 개입척도를 상호비교하였다.

여기에서 生產者(消費者) 補助相當額은 政府가 農業 및 農產物貿易과 市場에介入하지 않았을 경우, 介入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生產者(消費者)가 손실을 입게 되는 액수를 뜻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生產者(消費者)의 總所得(總支出) 중에서 政府介入(價格支持, 輸入制限, 輸入賦課金, 生產投入材補助 등)에 의한 추가적인 所得(支出)의 비율을 뜻한다. 여기에서

生產者(消費者) 補助相當額에 대한 系數說明을 하는 이유는 이 指數가 그 算出過程이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는 最善의 國家間 農業政策 比較手段이 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입장을 分析하여 農產物貿易의 多者間協商이나 對美貿易協商과 輸入開放壓力에 效率的으로 대처하고자 함이다.

위에서와 같이 계산된 生產者(消費者) 補助額의 國家別, 商品別, 比較結果는 <表 4 - 3>에 要約되어 있는데 比較結果는

(1) 農產物 輸出國家는 輸入國家에 비하여一般的으로 生產者補助가 낮은 편이다.

(2) 대부분의 國家에 있어서 食用穀物, 酪農製品, 설탕은 돼지고기, 가금 산업보다 높은 보조를 받고 있다.

(3) 開發途上國(LDC'S)에서는 生產者補助가 아닌 生產者에게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는 政策介入이 많다.

(4)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日本은 가장 國內農業을 保護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보다 保護率이 낮은 편이나 台灣보다는 높은 편이다.

위의 分析結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의견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는 貿易協商과 輸入開放壓力에 대응한 說得力 있는 論理가 될 것이다.

(1) 현재 世界 農產物市場에서 만연되고 있는 過剩生產, 在庫累積, 保護貿易問題의 근원은 위의 <表 4 - 3>에서와 같이 거의 예외가 없는 世界各國의 農業保護 및 높은 生產者價格支持政策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輸入國에 있어서의 輸入障壁緩和措置와 더불어 농산물 수출국가에서도 政府의介入이 점차 철회되어 市場機能에 의하여 조정되는 農業으로의 전환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2) 美國 農務省에서 계산된 生產者補助相當額係數는 政府의 市場介入에 의한 순수효과로만 볼 수 없는 맹점이 있다. 政府介入이 전혀 없을 경우 國內生產費用이 높으나, 國内外商品이 동질적인 것이 아닌 관계로 높은價格에서도 國내에서 생산된 商品에 대한 需要가 존재한다면 名目保護率 또는 生產者補助相當額係數가 正의 値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表 4-3 品目別 生産者 準助金 相當額 國別 順位, 1982~84

비율 ¹⁾	소액	미국	옥수수	수수및보리	대두	기타유지류	설탕	면화	낙농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생산자 조세 -0.5 이상	아르헨티나 인도	*					나이제리아	인도(LS)*				
-0.25 ~ -0.49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수수)*		아르헨티나			인도(MS)* 뉴질랜드(ELS)* (MS)*				
-0.10 ~ -0.09	나이제리아	브라질			브라질*	인도		나이제리아		브라질*		
생산자 보조금 0 ~ 0.09	호주* 뉴질랜드	태국*	캐나다* EC 나이제리아	호주(보리)* 뉴질랜드(보리)*	캐나다* 미국			호주*	브라질	호주* 캐나다* 미국	호주* 캐나다* 대만* 미국	호주* 브라질 미국
0.10 ~ 0.24	캐나다* EC(공동) 남아공	호주*		캐나다 (보리)* EC(보리)* 미국(보리)	대만	캐나다 (이마)* (유채)* 인도(당콩)* (유채)	호주* 대만*	멕시코*	뉴질랜드	뉴질랜드*	EC*	캐나다 한국
0.25 ~ 0.49	EC(드럼종)* 멕시코 나이제리아 미국	브라질 EC* 대만* 미국*	남아공 대만* 미국*	멕시코 (수수)* 미국(수수)*		EC(유채)	캐나다 EC*	브라질* 미국*		호주* EC* 대만* 미국*	태국 한국	EC* 한국 대만
0.50 ~ 0.74	브라질 한국 대만	한국	멕시코 한국	대만(수수) 한국(보리)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캐나다* 한국	EC* 일본 한국	일본	
0.75 ~ 0.99	일본	일본		일본 (보리)								

*: 純輸出國 (1982~84 기간중).

1) 직접지불된 것을 포함하여 국내 총생산액에 이전된 비율.

(3) 한국의 小麥과 옥수수 등은 生產者補助相當額이 0.50 이상으로 分類되고 있으나 農產物 輸出國家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生產者補助相當額의 高低가 문제가 아니라 自給率의 정도도 더욱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소 맥의 경우 生產者補助相當額이 높다고는 하나 自給率은 0.5 %미만이기 때문에 설령 輸入自由化가 더 促進된다고 하더라도 輸入量의 증가는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4) 國家別, 品目別 生產者補助相當額의 相互比較結果를 보면 한국의 경우 生產者補助相當額이 절대적으로 높을지라도 日本보다는 낮은 편이며, 더우기 自由經濟가 經濟運用의 기본목표인 미국의 生產者補助相當額보다 결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

(5) 미국의 일관된 주장인 價格支持政策의 철회와 所得補助政策의 도입은 상당한 國內賦存資源의 유휴를 가져와 한국의 農業補助政策費用을 결과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第 5 章

要約 및 結論

- ①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增大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第 1 의 輸出市場인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 및 그 趨勢, 輸出競爭國狀況, 輸入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 輸入制度 및 輸入政策 등에 대한 철저한 分析과 아울러 우리나라와 유사한 賦存與件과 經濟與件下에서 많은 農林水產物을 輸出하는 臺灣의 輸出과 그 趨勢, 輸出與件, 輸出支援政策을 分析함으로써 教訓과 示唆點을 찾음이 매우 중요하다.
- ② 農產物의 效率的인 輸入管理와 輸入開放壓力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世界 農產物市場의 與件變動과 함께 우리나라 第 1 의 輸入先인 美國農業의 問題點과 政策變化를 검토하여 輸入開放壓力의 배경을 파악함과 아울러 類似한 條件下에서開放壓力을 받고 있는 인접 農산물수입국인 日本의 農產物輸入과 그 추세, 輸入政策, 開放壓力에 대한 對處方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③ 1985년 日本의 總 農林水產物 輸入額은 262 억불로서 이중 農產物林產物, 水產物이 각각 64%, 17%, 19% 이었으며 農產物의 절반이상은 小麥과 飼料穀物을 주로 하는 穀物類와 大豆, 油菜 등의 植物性油脂原料이었다. 우리나라가 많이 輸出하는 水產物의 경우 新鮮冷凍水產物, erta 수산물이 각각 總 水產物輸入의 82%, 11% (1985)인데 輸入增加率은

염장수산물보다 新鮮冷凍水產物이 높다.

④ 우리나라에서 日本으로 輸出되는 農林水產物中 ① 日本의 絶對輸入額이 크고 ② 우리나라의 輸出比重이 크며 ③ 中共, 臺灣, 北韓과 輸出競爭關係下에 있는 品目中 대구의 란, 삼치, 계, 오징어, 문어, 표고버섯, 밤, 生糸, 녹차, 백삼, 미역, 참치, 연어·송어, 豚肉, 뱃장어등 15個品目에 대한 日本의 輸入趨勢를 分析하였다. 輸入增加率이 높은 것은 연어·송어·백삼, 계, 참치의 순이며 표고버섯, 生糸, 녹차의 輸入增加率은 오히려 減少하였다.

⑤ 日本의 總 農林水產物 輸入先別 輸入을 보면 1985년의 경우 美國 32.5%, 카나다 7.5%, 호주 7.5%, 中共 6.4%, 말레이지아 5.7%, 臺灣 5.1%, 韓國 3.4% 등이다. 中共의 對日輸出은 급속히 增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輸出競爭이 치열한데 특히 삼치, 계, 표고버섯, 밤, 生糸, 녹차, 백삼, 미역이 代表的인 例이다.

⑥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需要에 대한 價格變數의 說明力 檢證과 非價格變數의 확인을 위하여 貿易理論에 기초한 統計的 技法을 使用하였다. 아밍톤模型을 利用한 日本의 總 輸入需要式에서 價格變數의 有意性은 매우 낮았으며 日本의 한국으로부터의 輸入需要式에서는 韓國의 輸出價格과 日本의 平均輸入價格의 相對價格差가一般的으로 統計的 有意性을 가진 반면 相對價格變數의 豫測係數가 ∞ 에 가깝지 않으므로 商品은 原產地에 따라 異質的임을 알 수 있었다.

⑦ 레스너과 트루만의 模型을 利用하여 日本의 農林水產物輸入을 段階的으로 說明하고 각 段階에 있어서 輸入需要式을 推定하였다. 日本의 特定國으로부터의 農林水產物 輸入需要式의 自體價格과 代替價格變數에 대한 예측부호는 理論과 反對인 경우가 많았으며 有意性도 缺如하였다. 많은 品目の 경우 GLS R^2 가 낮음으로 미루어 보아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非價格要因 즉 品質의 差異, 貿易障壁 등이라 고 할 수 있다.

⑧ 코넌드레스와 허타도모형을 이용하여 品目別로 우리나라의 輸出競爭國들과 우리나라의 主要 輸出市場國들 상호간의 貿易選好度를 測定하였다. 예측된 貿易選好度는 기대하였던 바와 같이 1이 아니었으며 品目別로 相對國마다 相異하였으므로 貿易選好 내지 貿易障壁이 다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統計資料의 入手가 가능한 계, 참치, 生糸, 밤, 차, 조제버섯 등 6個品目的 國別 對日輸出增加要因을 ① 貿易量增大效果 ② 競爭力改善效果 ③ 輸入市場效果 ④ 貿易選好度의 變化效果로 區分하여 說明하였다.

⑨ 日本의 具體的인 輸入制度를 說明하고 위에서와 같은 15個 農林水產物의 關稅率 및 輸入制度를 例示하고 分析하였다.

⑩ 臺灣의 1986년 農林水產物 總輸出은 28億弗로서 이중 1次農產物과 加工農產物의 比重이 각각 60%, 40%이며 主要 輸出品은 1960~75년까지는 설탕, 바나나, 양송이 및 아스파라가스통조림 등이었으나 1980년이후로는 水產物, 菜蔬加工品, 돼지고기 등으로 그 輸出品目 구성상 변화를 가져왔다. 臺灣의 農林水產物 輸出市場構成은 日本이 50% 内外, 美國 10~20%, 유럽 5~15% 그리고 韓國은 2~10% 정도이며 우리나라보다 輸出市場의 偏重化現狀은 심하지 않은 편이다.

⑪ 臺灣의 國別 品目別 農林水產物 輸出을 살펴 보면 日本에는 水產物, 돼지고기, 水產加工品, 조제채소, 羽毛 등의 순서로 輸出을 많이 하고 있으며 美國으로는 水產物, 양송이통조림, 水產加工品, 조제채소, 竹製品 등의 順이고 유럽으로는 아스파라가스통조림, 조제채소, 水產加工品 등의 順이다.

⑫ 臺灣은 國土가 좁고 人口가 많아 經濟開發初期에는 勞動集約의이고 天然의으로 比較優位가 있는 설탕, 米穀의 輸出이 많았으나 人件費가 비싸짐에 따라 加工技術의 開發, 研究 및 產業組織의 強化를 통하여 과일, 채소통조림의 輸出에 注力하였으며 後發開途國의 격심한 輸出競爭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⑬ 臺灣政府는 農林水產物 輸出增大上의 問題點들인 高資金, 品質管理에 대한 인식부족, 輸出業體의 零細性으로 인한 非效率性, 輸出市場의 偏重化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勞動節約的인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適地栽培, 輸出商社의 大規模화와 經營合理化, 品質改善과 研究開發, 新市場의 開拓, 計劃生產 등에 힘쓰고 있다.

⑭ 美國의 農業政策은 건국이래 팔목할 만한 变천을 해 왔지만 強力한 農民의 政治力으로 인하여 農產物의 支持價格은 大部分의 경우 市場均衡價格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기 때문에 過剩生產의 問題가 발생하였으며 過剩生產으로 인한 在庫累增現狀이 가져 오는 여러가지 鐐 단을 解消하기 위하여 多樣하고 복합적인 生產調整, 消費促進, 輸出增大, 市販調整政策 등을 취해 온 歪曲된 성질의 것이었다.

⑮ 美國의 農產物輸出은 1980年을 전후하여 對蘇 穀物禁輸措置, 輸出競爭國의 등장, 開途國에 있어서의 食糧自給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農產物의 國內價格에 대한 農業投入財價格이 相對的으로 빠른 속도로 인상되어 미국의 農家經濟는 不振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政府支出이 급격히 팽창하고 農家の 經營惡化로 負債比率이 높아졌다.

⑯ 美國政府는 이와 같이 不振한 農家經濟와 輸出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食糧安全保障法(The Food Security Act of 1985)을 制定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過剩生產 輸出不振을 타개하기 위하여 目標價格과 商品信用公社의 貸付率을 점차 인하할 計劃이다. 또한 輸出을 적극적으로 增大하기 위해서 市場貸付率制度(Marketing Loan Rate System), 穀物輸入國에 대한 財政支援, 輸出振興에 대한 金融支援, 外國援助의 擴大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외에 미국은 多者間貿易協商(Uruguay Round)에 참여하여 農產物 貿易障壁解消에 힘씀으로서 農產物輸出의 促進을 도모하고 있다.

⑰ 美國의 對韓國 輸入開放壓力은 우리나라의 對美貿易黑字幅이 커짐에 따라 점차 그 強度가 높아지고 있으나 輸入開放壓力의 주요 이유는 美

國의 農業不況과 輸出不振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의 한국으로의 輸出不振도 예외가 아니어서 主要穀物을 포함한 農產物의 對韓輸出은 市場占有率에서 뿐만 아니라 物量面에서도 減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美國은 기존 輸入農產物의 輸入增大는 물론 여타品目의 추가개방도 요구하고 있다.

⑧ 日本은 1960 年以後 高度成長期를 통해 所得增加, 食品消費의 고급화 다양화로 農產物 輸入이 급증했으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國內生產이 수요를 뒤쫓아 가지 못해 食糧自給率은 크게 낮아졌다. 특히 畜產物需要增大에 따라 飼料穀物의 수입이 급증했으며 水產物, 畜產物, 果菜類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들 품목의 自給率은 크게 낮아졌다. 日本의 食糧自給率 및 輸入推移를 볼 때 앞으로도 日本은 상당량의 農畜產物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日本은 安定的, 效率的인 수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정수준의 自給率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⑨ 日本의 農林水產物 輸入制度는 國내농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統合되어 있으며 정교하고 다양한 것이 그 특징이다. 예컨대 關稅制度를 보면 특수한 관세형태로 從價稅, 從量稅, 從價從量選擇稅, 從價從量併用稅, 스텐드關稅, 差額關稅, 季節關稅, 關稅割當制度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從價稅만 적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다양하고 정교하다. 또한 穀物輸入制度는 自由競爭原理를 최대로 活用하면서 國內食糧政策과 食糧의 安定的 확보에 중점을 두어 運用되고 있다. 日本의 輸入制度가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그 制度나 政策의 樹立過程이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⑩ 日本의 貿易自由化는 1960 年 「日本의 貿易換自由化大綱」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推進方法은 4 가지로 구분하여 ① 早期에 자유화하는 것 ② 가까운 장래에 자유화하는 것 ③ 가능한 한 빨리 自由化하도록 노력할 品目 ④ 자유화가 상당기간 곤란한 品目 등으로 나누어 자유화계획을 樹立했으며 農林漁業部門은 自由化가 상당기간 곤란한 부

문으로 간주되었다. 農產物自由化는 政府의 조심스러운 접근과 배려에 의해 영향이 작은 品目부터 점진적으로 實施하고 영향이 큰 品目은 예고기 간을 설정하여 자유화에 대한 適應力を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또한 補完對策을 수립하면서 행해졌기 때문에 예상되었던 副作用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

㉑ 日本은 農產物輸入自由化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構造改善政策, 價格政策을 재정립 보완하는 한편 케네디라운드로 인해 유력한 保護手段이었던 關稅가 각국 공히 인하됨으로써 關稅를 대신할 輸入制限方法으로써 경역의 강화등 非關稅障壁을 강화하고 關稅를 多樣化, 정교하게 만들었다.

㉒ 최근 日本의 막대한 經濟收支의 擴大에 따른 통상무역마찰과 세계 農產物市場의 과잉이라는 外部的要因과 國際農產物價格下落과 엔고로 인한 內外價格差의 擴大, 食糧危機에 대한 불안이 완화됨으로써 財界를 중심으로 농업비판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國際化時代를 맞이하여 經濟構造調整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농정비판과 제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日本의 農業構造改革은 國際化時代를 맞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農業의 擔當者인 農民이 소외된 상태에서는 수행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㉓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총수출은 1979 ~ 1980년을 전후한 最高水準 19억불에서 1985년의 14억불까지 감소하였으나 1986년 적극적인 輸出增大努力으로 다시 20억불에 육박하였는데 이는 주로 水產物輸出增大에서 기인하였다. 具體的인 品目으로서는 1980 ~ 81년以來 돼지고기, 사과, 조개, 굴, 연어통조림, 밤, 切花 등은 그 輸出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뱃장어, 삼치, 게, 고등어통조림, 김치, 生糸, 송이버섯, 떡갈잎 등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㉔ 우리나라는 점차 勞動力은 不足하고 資本과 技術은 상대적으로 풍부해 지는 經濟與件을 감안하여 勞動節約的이고 資本集約的인 高品質加

工品의 生產과 輸出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輸出競爭國이 經濟開發初期段階에 있으며 輸出對象國은 所得水準이 높은 先進國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㉔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出增大를 위하여 短期的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는 ① 國內生產의 變動에 관계없이 輸出이 일괄성 있게 되어 輸入先으로부터의 신뢰성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② 新鮮度維持, 包裝開發 등으로品質을 提高하고 ③ 輸出市場을 多邊化하고 ④ 과당경쟁 덤핑으로 인한 이미지손상이나 손해를 방지해야 하며 ⑤ 經營效率의 極大化, 市場多邊化 등에 대한 政府의 적극적인役割과 支援이 必要하다.

㉕ 거세어지는 農產物 輸入開放에 대한 國內農業保護問題와 增大되는 農產物輸入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농산물 輸入管理制度가 필요하다. 먼저 關稅制度등 현행제도를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정교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國內生產과 連繫된 수입관리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위생과 건강을 위해 검역등과 같은 非關稅障壁을 강화하고 우리 與件에 맞는合理的인價格 및 輸入制度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安定의이고 效率의인 수입을 위해 구매방식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㉖ 對外的으로 우리나라는 對美, 對EC 등의 貿易收支黑字의 擴大와 世界穀物의 과잉생산에 의한 세계농업 불황에 따라 國內農產物市場開放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그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開放壓力의原因是 무엇이며 農產物 輸出國의 입장과 논리에 근거가 무엇인지를 세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貿易協商에 있어 相對國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確保와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성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통상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農協中央會, “美國의 農產物貿易政策動向,” 「農協調查月報」, 1986. 12.
- _____, “21世紀를 향한 日本農政의 基本方向,” 「農協調查月報」, 1987. 2.
- _____, “最近 日本各界의 農業과 農政에 대한 비판,” 「農協調查月報」, 1987. 3.
- 李敬遠, 「國際穀物市場과 食糧經濟」, 韓國新書 6, 韓國經濟新聞社, 1986.
- 李載玉·外, 「農林水產物 輸出增大 方案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 12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12.
- _____, 「農水產物 輸入賦課金利度 導入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 12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12.
- 朴珍道, “日本의 農業改革,” 「世界農業의 動向과 韓國農業의 政策方向」, 韓國農業政策學會, 심포지움主題論文, 1987. 8.
- 朱宗桓, “海外 農產物輸入과 國內農業의 連繫方案,” 「高度產業社會와 農業發展」, 韓國農業經濟學會, 創立 30 周年 記念 論文集 1987. 9.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6.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1980 ~ 86
- 農林水產部, 「農林水產統計年報」, 1975 ~ 86.
- _____, 「農林水產主要統計」, 1987.
- 山林廳, 「林業統計要覽」, 1987.
- 高橋銑十郎, “21世紀へ向けての 農政の 基本方向,” 「農業經濟研究」, 第 59 卷, 第 2 號, 岩波書店, 1987. 9.
- 梶井功, “國際化の進展と 農業再編の 方向”, 「農業經濟研究」, 第 59 卷, 第 2 號, 岩波書店, 1987. 9.
- 山地進, “農產物の 自由化と 總合農政,” 「國際市場論」, 農產漁村文化協會, 1982.
- 失口芳生, “農業の 國際化は どこまで 可能か,” 「農林統計調查」, 第 37

- 卷, 第 2 號, 農林統計協會, 1987. 2.
- 戶田博愛, 「現代日本の 農業政策」, 農業統計協會, 1986.
- 通商產業調查會, 「現行輸入制度一覽」 1987.
- 日本貿易振興會, 「農林水產物の 貿易」, 1979 ~ 86
 _____, 「日本貿易月表」, 1976 ~ 86
- 農林水產大臣官房調查課, 「食料需給表」, 1987.
- 許文富, “臺灣之農產貿易結構與其發展趨勢之分析,” 「臺灣經濟」, 第 98 期, 1985. 2.
- 李坤木, “臺灣農產品進出口貿易之回顧與展望,” 「臺灣土地金融季刊」, 第 18 卷 1 期, 1981. 3.
- 黃欽榮, “加強我國農產品外銷歐洲市場之研究,” 「臺灣土地金融季刊」, 第 18 卷 4 期, 1981. 12.
- 柯勝輝, “我國農產品輸日現況之探討,” 「臺灣經濟研究月刊」, 第 2 卷 6 期, 1979. 6.
- 郭溪東, “臺灣農產貿易之研究,” 「臺灣銀行季刊」, 第 29 卷 4 期, 1978. 12.
- 中國農村經濟學會, 「臺灣農產貿易問題研討會」, 1985. 11.
- Armington, P. S.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MF staff Papers* 16, pp. 159 ~ 178. 1969.
- Artus, J. R., and R. R. Rhomberg. “Multilateral Exchange Rate Model.” *IMF staff Papers* 20 pp. 591 ~ 611. 1973.
- Dent, W. T. “Application of Markov Analysis to International Wool Flows,” *Rev. Econ. and statist.* 49, pp. 613 ~ 616. 1967.
- Gardner, B. “The Economics of U.S. Agricultural Policy,” *U.S. Japanese Agricultural Trade Relations*, Johns Hopkins Univ. press, pp. 182 ~ 215, 1982.
- Grennes, T., P. R. Johnson and M. Thursby. “The Economics of World Grain Trade,” Praeger Publishers, New York, 1977.
- Ippolito, R. A., and R. T. Masson, “The Social Cost of Government

- Regulation of Milk,"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1, pp. 33 ~ 66 . 1978.
- Johnson, D.G. "World Commodity Market Situation and Outlook," *U.S. Agricultural Policy*, pp. 19 ~ 48. 1985.
- Konandreas, p., and H. Hurtado. "Analysis of Trade Flows in the International wheat Market" *Can. J. Agri. Econ.* 26, pp. 11 ~ 23. 1978.
- Resnick, S.A., and E.M. Truman. "An Empirical Examination of Bilateral Trade in Western Europe", *J. Int. Econ.* 3, pp. 305 ~ 335 . 1973.
- Rausser, G.C. *New Directions in Econometric Modeling and Forecasting in U.S. Agriculture*, North-Holland, 1982.
- U.S.D.A. *Economic Indicators of the Farm Sector*, Farm sector Review, 1985.
- _____, *Economic Indicators of the Farm Sector* Natinal Fin -acial Summary, 1985.
- _____, FATUS,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S., 1986.
- _____, *History of Agricultural Price - Support and Adjustment Programs*, 1933 ~ 84. Background for 1985. Farm Legisla-tion, Agriculture Information No 485 .
- _____,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Major Provisions Affecting Commodities Agriculture Information No 497.

빈

면

研究報告 153

主要國의 農林水產物 輸出入制度 및 戰略에 관한 研究

1987년 12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